#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주민등록법」은 1962.5.10.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되었으며,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간 주민등록제도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여 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는 일선 주민등록 담당자 및 민원인의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주민등록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충실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민등록 질의 · 회신 사례집」을 개정 ·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이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담당자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는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사례집 발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분들과 정부통합콜센터 행정안전부 상담센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 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주민과장 **이지성**

# 목차

## 제1장 주민등록

**제1절 주민등록 대상** ····· 3

질의 1. 병원 입원 환자, 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주민등록 ····· 5
질의 2. 외국국적 보유자의 주민등록 ····· 5
질의 3. 출생신고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불가 시 처리 요령 ····· 5
질의 4.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의 동일 가능 여부 ····· 6
질의 5. 등록기준지에서 출생신고서 미수리 시 처리 방법 ····· 6
질의 6.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에 대한 구제 방안 ····· 6
질의 7.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입국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신분과 입국 시 사용한 여행증명서상의 신분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 가능 여부 ····· 7
질의 8. 해외출생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 ····· 7
질의 9. 전산 미입력자, 구 주민등록표가 확인되지 않는 자 ····· 8
질의 10.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 8
질의 11. 부여이력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 여부 ····· 8
질의 12.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에 사망한자의 주민등록표 정정 문의 ····· 9
질의 13.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가능 여부 ····· 9
질의 14.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규 등록 ····· 9
질의 15. 재혼자녀의 주민등록표 동거인표시 ····· 10
질의 16.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자의 주민등록 말소 가능 여부 ····· 10
질의 17.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 시 일자기준 ····· 11
질의 18.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정리 방법 ····· 11
질의 19. 거동불가자 주민등록 신고 방법 ····· 12
질의 20.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 란에 기재되는 경우 ····· 12
질의 21. 재혼가정의 자(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 포함)의 주민등록표 정리방법 ····· 12
질의 22.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이한 자의 주민등록사항 정리 ····· 13
질의 23.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 13

제2절 거주불명 등록 ····· 15

1. 거주불명 등록 신청 ····· 17

질의 24.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자격 및 처리방법 ····· 17
질의 25. 공시송달결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신청 ····· 18
질의 26. 사망한 집주인의 배우자를 재산권자로 보아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18
질의 27. 우편 송달 등의 방법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 18
질의 28. 재산권자,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시 위임 가능 여부 ····· 19
질의 29. 토지소유자(재산권자)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 19
질의 30. 지자체가 공문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및 사실조사 시기는? ····· 19
질의 31. 건물의 건축주가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19
질의 32.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 20
질의 33.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거주불명 등록요청 가능 여부 ····· 20
질의 34. 본인 스스로 거주불명 등록 신고가 가능한지 ····· 20
질의 35. 미성년자가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신고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 20
질의 36. 소송중인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 21

2. 직권조치에 관한 문의 ····· 21

질의 37. 사인간 소송 등 분쟁 상황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 21
질의 38. 최고 또는 공고기간에 대상자가 거주한다고 서면으로 소명하였을 때 처리방법은? 22
질의 39. 거주불명 등록 절차 종료 가능 여부 ····· 22
질의 40. 거주불명 등록 시 신고의무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 ····· 22
질의 41.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대한 회신 방법(전화상으로 구술 전달하였는데 문서로 또 회신해야 하는지?) ····· 23
질의 4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23
질의 43. 거짓으로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절차 ····· 23

# 목차

질의 44. 위장전입자의 경우 고발조치도 반드시 해야 하는지 ····· 24
질의 45. 주민등록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 24
질의 46. 단독세대 구성으로 연락만 가능할때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 24
질의 47. 공고만료일에 직권조치 유보 가능 여부 ····· 25
질의 48.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 25

**3.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 ····· 26**

질의 49.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를 거주불명 등록한 경우 처리방법 ····· 26
질의 50. 해외체류자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 26
질의 51. 장기요양자는 거주불명 등록 하지 않는다는 의미 ····· 27

**4. 기타사항 ····· 27**

질의 52. 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27
질의 53. 거주불명 등록이력 삭제 가능여부 ····· 28
질의 54. 거주불명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접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 28
질의 55.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의 차이점 ····· 29
질의 56.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 방법 ····· 29
질의 57. 수감자의 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및 직권재등록 가능 여부 ····· 30
질의 58. 보정명령으로 거주불명 등록 신청 및 직권조치 가능 여부 ····· 30

**제3절 재외국민 주민등록 ····· 31**

질의 59.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의 재등록 방법은? ····· 33
질의 60.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은? ····· 33
질의 61.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처리 방법 ····· 33
질의 62. 국적상실 말소된 자의 주민등록 처리 방법 ····· 34
질의 63.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방법 및 주민등록 완료 후 출국할 경우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 34

질의 64. 일제경신(1975년 8월) 이전 해외출국자의 주민등록 ····· 34
질의 65. 국적 취득자의 주민등록 방법 ····· 35
질의 66.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출국신고 위임 ····· 35
질의 67.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와 위임할 수 있는 자 ····· 35
질의 68. 재일동포의 재외국민 주민등록 방법 ····· 36
질의 69.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전입신고시 출입국사실증명 확인 필요 여부 ····· 36
질의 70. 재외국민 영주귀국 재등록 ····· 36
질의 71. 등록기준지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등재 미수리 시 처리방법 ····· 37
질의 72.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 37
질의 73.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를 거주자로 직권 정정 ····· 38

**제4절 재 등 록 ····· 39**

**1. 재등록 신고자 처리방법 ····· 41**

질의 74. 전산화 이전 말소된 자의 재등록 방법 ····· 41
질의 75. 거동불편자의 재등록 ····· 41
질의 76. 현지이주말소자의 재등록 방법 ····· 41
질의 77. 의식불명자나 심신박약자의 재등록 ····· 42
질의 78. 재등록 신고 제3자 위임 가능 여부 ····· 42
질의 79. 말소·거주불명 등록자가 수감중 대리인을 지정 재등록신고 가능 여부 ····· 42
질의 80. 거주불명 등록된 해외 취업자 등(해외파견근무, 유학)의 재등록 절차 ····· 43
질의 81. 국외이주자가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주민등록 신고 방법 ····· 43
질의 82. 신고 재등록 후, 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가능 여부 ····· 44
질의 83. 주민등록표 정리 방법 ····· 44
질의 84. 거주불명 등록 후 수감된 자가 재등록 시 과태료 적용 방법 ····· 44
질의 85. 일시 출국 당시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시 과태료 산정 ····· 45
질의 86. 거주불명 등록자의 직권 재등록 가능 여부 ····· 45
질의 87. 이중등록자의 재등록 ····· 46

# 목차

**제5절 주민등록표 정정·삭제** ····· 47

**1. 주민등록표 정정 처리방법** ····· 49

질의 88.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 49
질의 89. 거주지 이동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 방법 ····· 49
질의 90. 다가구 주택 내에서 다른 호수로 이사를 했을 경우 처리 방법 ····· 49
질의 91. 건축물대장상의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 50
질의 92.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 50
질의 93. 과거지번 정정 ····· 50
질의 94.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주소 소급정정 가능 여부 ····· 51
질의 95. 초본 실제지번정정 이력의 의미와 소급적용 범위 ····· 51
질의 96. 주민등록표 정정일자 표시 ····· 52
질의 97.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관련 공부 등 정리 방법 ····· 52
질의 98. 이혼한 자가 세대주와의 관계를 처로 하여 전입신고 시 직권정정 가능 여부 ····· 52
질의 99. 부여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가능 여부 ····· 53
질의 100. 주민등록번호 다시 사용 가능 여부 ····· 53
질의 101.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요령 ····· 54
질의 102.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부여근거가 없는 경우 ····· 54
질의 103.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전 거주지의 주소정정 가능 여부 ····· 55
질의 104.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력삭제 가능 여부 ····· 55
질의 105. 오랫동안 사용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번호인 경우 처리 방법 ····· 55
질의 106. 지번정정 시 정리 요령 ····· 56
질의 107. 주민등록표의 변동일자 및 세대구성사유 정정가능 여부 ····· 57
질의 108.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주소 정정 또는 추가기재 관련 ····· 57
질의 109. 주민등록 공부상 오류, 착오 기재 등에 대한 정정 방법 ····· 57
질의 110. 이명동인(異名同人)의 주민등록 처리 절차 ····· 58
질의 111. 사실혼 관계의 양모를 '모'로 정정 가능여부 ····· 58
질의 11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의한 말소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관련 질의 ····· 59

질의 113. 가족관계등록이 이중으로 되어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 59
질의 114. 가족관계등록사항 변경 시 주민등록 정정 방법 ····· 60
질의 115.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 60
질의 116.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 60
질의 117. 사망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새로 부여 가능 여부 ····· 61
질의 118. 세대주를 변경 정정신고를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지 여부 ····· 61
질의 119. 새터민 주민등록번호 정정 ····· 61
질의 120. 쌍둥이 형제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상에서 뒤바뀌어 사용된 경우 ····· 62
질의 121. 주민등록표에 누락된 출생등록 일자 및 사유 기재 가능 여부 ····· 62
질의 122. 주민등록표상(구원장, 세대별, 개인별) 주소가 각각 다를 경우, 주소정정 관련 ··· 62
질의 123. 주민등록표 구원장을 근거로 개인별주민등록카드 정정 가능 여부 ····· 63
질의 124.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은 있으나 날짜가 확인 안 될 경우 ····· 63
질의 125. 사망자의 현 주민등록표 전산상의 실제 지번 정정 가능 여부 ····· 64
질의 126. 사망자의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사망말소 내용을 직권으로 추가기재 할 수 있는지 여부 ····· 64
질의 127.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날짜로의 전입일자 정정 가능 여부 ····· 64
질의 128. 과거 다수의 새터민이 부여받았던 지역번호 보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 65
질의 129. 건축물대장 상 호수로의 주소 정정 ····· 65
질의 130. 다가구주택의 층 및 호수 기재 ····· 65
질의 131.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구원장에서 현주민등록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오기하였을 때 처리방법 ····· 66
질의 132. 직계비속이 당사자의 위임없이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 66
질의 133. 가족관계등록부와 성명 불일치자 정정 방법 ····· 67
질의 134.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정정 요구 ····· 67

**2. 주민등록표 삭제 ····· 68**

질의 135. 무단전출 직권말소 기록 삭제 가능 여부 ····· 68
질의 136.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 기재하려면? ····· 68

# 목차

질의 137. 전입한 기록 삭제 가능 여부 ····· 68
질의 138. 인적사항 변경내역 삭제 가능 여부 ····· 69
질의 139. 타인의 호적을 도용한 주민등록자의 주민등록신고 처리 요령 ····· 69
질의 140. 타인 명의 도용시 주민등록 정리 방법 ····· 70
질의 141.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력삭제 가능 여부 ····· 70
질의 142. 무단전출 직권말소 사항 삭제 ····· 71
질의 143.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요청 ····· 71

**제6절 사실조사 등 주민등록 일반 ····· 73**

**1.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일반사항 ····· 75**

**2. 사실조사 등 절차상 문의 ····· 76**

질의 144. 최고·공고 기간 ····· 76
질의 145.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시 최고와 공고의 차이 ····· 76
질의 146. 최고장을 해당자가 신고기간 이후에 수령하였다면 조치 방법 ····· 76
질의 147. 사실조사 수시 가능 여부 ····· 77
질의 148. 최고장을 반송불요로 보낸 경우 처리 방법 ····· 77
질의 149. 세대주가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 77
질의 150.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를 했는데 대상자 외의 자가 받은 경우(세대원이지만 가족은 아닌 동거인이 받은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78
질의 151. 거주불명 등록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 한 바, 이미 건물을 철거하여 공사 진행 중인 곳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럴 때에도 최고를 해야 하는지? ····· 78
질의 152. 다른 세대의 부모가 사실조사서에 확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78
질의 153. 주민등록 사실조사 ····· 78
질의 154. 사실조사 의뢰 가능 여부 ····· 79
질의 155. 거주불명 등록 신고 대상자 ····· 79
질의 156. 비거주 인정자에 대한 최고장 발송 생략 가능 여부 ····· 80
질의 157. 반장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편성 시 위법 여부 ····· 80

질의 158.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의뢰 시 입증서류 ····· 81

3.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 81

질의 159.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 불일치 사유 ····· 81

질의 160.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 ····· 82

4. 구 주민등록표 ····· 82

질의 161. 62~68년 주민등록표 확인 ····· 82

질의 162. 62~68년 주민등록표 증명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83

질의 163. 68~79년 주민등록표를 보관하고 있는 곳 ····· 83

질의 164. 62~68년 작성한 구 주민등록표 관련 ····· 83

5. 세대구성 ····· 84

질의 165. 동일 번지 내 별도 세대구성 및 세대분가 가능 여부 ····· 84

질의 166. 동일 세대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 별도 세대구성 ····· 84

질의 167. 동일 세대원 중 해외출국자와의 세대분리 가능 여부 ····· 85

질의 168. 합숙사 거주자의 단독세대 구성 여부 ····· 85

질의 169. 동일 번지 내 세대분가 ····· 85

질의 170. 동일 아파트 호수 내에 두세대 구성 가능 여부 ····· 86

질의 171. 세대주의 전출 또는 사망의 경우 세대주가 말소·거주불명 등록 되었을 때와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세대주 선정방법은? ····· 86

6. 기타사항 ····· 87

질의 172. 주민등록 대상자 ····· 87

질의 173. 성씨의 한글표기 ····· 87

질의 174. 각종 신고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열람 또는 복사 가능 여부 ····· 88

질의 175. 가족관계등록이 없는 자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 88

# 목차

질의 176. 주민등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열람 가능 여부 ····· 89
질의 177.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한 기준은? ····· 89
질의 178.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 89
질의 179.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민원 신고의무기간 만료일인 경우 기간계산 방법 ····· 90
질의 180.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 90
질의 181. 전산 미입력자 주민등록표 정리 방법 ····· 90
질의 182.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가능 여부 ····· 91
질의 183. 무호적자 사망말소 방법 ····· 91
질의 184. 주민등록 업무용 책자 공개 가능 여부 ····· 91
질의 185. 주민등록 신고(신청) 서식에 자필 서명 근거 ····· 92
질의 186. 최고기간도 공고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 92
질의 187. 실거주 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 93
질의 188.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실제 거주사실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 93
질의 189. 부재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93
질의 190. 세대 수를 전화로 안내가능 여부 ····· 94
질의 191.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 94
질의 192. 화상자료 제공 방법 ····· 94
질의 193. 해외에서 출생하고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아동의 착오부여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법 ····· 94
질의 19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중 공법상의 행위의 범위 ····· 95
질의 195.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 등 불일치자 정리 방법 ····· 95
질의 196. 타인의 신분증으로 살아온 자의 주민등록 정리 방법 ····· 96
질의 197. 타인 명의 호적으로 주민등록한 자의 주민등록 말소처리 가능 여부 ····· 96
질의 198. 주민등록 전산 미입력자의 전산화 방법 ····· 96
질의 199. 주민등록신고서에 '서명 또는 인' 부분에 날인 시 성과 이름 중 이름만 새겨진 도장 가능 여부 ····· 97
질의 200. 주민등록시스템 상 사망의심자 처리 절차 ····· 97
질의 201.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 ····· 98

질의 202. 입양아동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처리 방법 ····· 98
질의 203. 제적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 98
질의 204.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로 가족부가 없는 자의 주민등록 방법 ····· 99
질의 205. 이중 주민등록자 정리 방법 ····· 99
질의 206. 생년월일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가능 여부 ····· 100
질의 207. 전산 미입력자 주민등록표 정리 방법 ····· 100
질의 208. 구 원장을 근거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직권 입력 가능 여부 ····· 101
질의 209. 과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 처리 방법 ····· 101
질의 210.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 102
질의 211.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 당시 군복무중인 주민의 번호변경 관련 ····· 102
질의 212. 친생부인판결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방법 ····· 103

**7.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 방법 ····· 104**

## 제2장 전입신고

**제1절 미성년자 전입신고 ····· 107**

질의 1.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 방법 ····· 109
질의 2. 외국인 모가 미성년 자녀를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109
질의 3.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109
질의 4.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 110
질의 5. 세대주가 조모,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부모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 110
질의 6. 미성년자 단독 세대주 가능 여부 ····· 110
질의 7. 미성년자 단독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 ····· 111
질의 8. 만 4세 아동의 단독 세대주로 전입 ····· 111
질의 9. 세대주인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전 세대주의 확인 ····· 112

# 목차

질의 10. 친권자 확인 없이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 ····· 112
질의 11. 전 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증 발급받은 미성년자가 서명 ····· 112
질의 12. 미성년자 전입 시 전 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113

**제2절 전입신고 처리 ····· 115**

질의 13. 철거지역 전입신고 가능 여부 ····· 117
질의 14.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117
질의 15. 노인시설, 아동보호시설, 요양원 등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117
질의 16.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118
질의 17. 병원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118
질의 18. 재개발 지역 또는 철거단계에 들어간 건물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119
질의 19. 전입신고 금지요청 가능 여부 ····· 119
질의 20. 수용자의 전입신고 ····· 119
질의 21. 재혼한 부인의'자'를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 120
질의 22. 남편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처조모가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 120
질의 23. 전입신고 취소 가능 여부 ····· 120
질의 24. 전입신고 소급 가능 여부 ····· 121
질의 25. 전입과 동시에 세대합가 후 세대주 변경 ····· 121
질의 26. 동일번지 내 타 세대 세대원으로의 전입 ····· 121
질의 27. 실수로 잘못 전입신고 처리한 경우 직권 정정 ····· 122
질의 28.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층·호수 기재 ····· 122
질의 29.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주소 기재 ····· 123
질의 30.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 123
질의 31. 아파트 명칭 없이 전입신고 ····· 124
질의 32. 전입신고 금지요청 가능 여부 ····· 124
질의 33. 아동복지 시설에 각 아동들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 125
질의 34. 해외체류자가 포함된 세대가 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 절차 ····· 125

**제3절 전입신고 위임 ····· 127**

질의 35. 직계혈족의 범위 ····· 129
질의 36. 전입신고 의무자 중 “세대를 관리하는 자” ····· 129
질의 37. 전입신고서의 위임범위, 위임신고 요령 ····· 129
질의 38. 동거인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 130
질의 39. 주민등록 대리 전입신고 ····· 130
질의 40.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동거인을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 131
질의 41. 본인의 배우자 전입신고 위임 ····· 131
질의 42. 형제·자매의 전입신고 위임 ····· 131
질의 43. 위임받은 말소자가 전입신고 가능 여부 ····· 132

**제4절 전입신고 일반 ····· 133**

질의 44. 본인이 전입신고 시 세대주 신분증 제시 필요 여부 ····· 135
질의 45. 전입자의 의사확인 ····· 135
질의 46. ‘30일 이상’ 거주요건에 관한 문의 ····· 135
질의 47. 전입신고 사후확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 136
질의 48.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전입신고의 자격이 있나요? ····· 136
질의 49.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자의 처리 ····· 136
질의 50.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증 내용란 정리요령 ····· 137
질의 51. 전입자의 세대구성일자 기준 ····· 137
질의 52. 영내군인의 주민등록 직권이송 ····· 137
질의 53.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신고일자 기준 확인 ····· 138
질의 54. 동일일자 이중전입 신고자 처리 ····· 138
질의 55. 1주소에 2세대 또는 수개의 지번에 1세대 거주지 수리 가능여부 ····· 139
질의 56.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 139
질의 57. 나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곳의 전입신고 시 수리 여부 ····· 139
질의 58.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140

# 목차

질의 59. 전입신고 시 신분증 지참 여부 ····· 140
질의 60. 숙박업소에 주민등록 가능 여부 ····· 141
질의 61. 세대 일부가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전입신고 ····· 141
질의 62.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141
질의 63. 주거형 오피스텔 등 주민등록 가능 여부 ····· 142
질의 64.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신축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 ····· 142
질의 65.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처리방법 ····· 142
질의 66. 다가구주택 내에서 거주지 이동 시(호수 변경) 처리 방법 ····· 143
질의 67.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14일에 공휴일 포함 유무 ····· 143
질의 68. 수용증명서로 '서명/인'대체 가능 여부 ····· 143
질의 69.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방법 ····· 144
질의 70.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 방법 ····· 144
질의 71. 종교단체시설에 다수의 단독세대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144
질의 72. 전입신고 수리 기준인 거주 여부의 판단 ····· 144
질의 73. 의사 무능력자(치매) 본인 방문 전입신고 ····· 145
질의 74. 주소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변경('17.7.1. 시행) ····· 145
질의 75.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 방법(1) ····· 146
질의 76.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 방법(2) ····· 146
질의 77. 주소, 거소와 주민등록지 주소의 차이점 ····· 146

## 제3장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제1절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 151**

질의 1. 거동불가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 151
질의 2. 수감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 151

질의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수감된 자의 주민등록증 처리방법 ····· 151
질의 4. 2006.11.1. 이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152
질의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 152
질의 6.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 관련 ····· 153
질의 7.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교부 ····· 153
질의 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 154
질의 9.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증 교부가 가능한 대상 ····· 154
질의 10. 해외체류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 154
질의 11. 국외이주신고 후 증발급 대상자가 될 경우 처리방법 ····· 155
질의 12. 중국교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55
질의 1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 155
질의 14. 십지지문 채취과정에서 지문채취가 어려운 경우 해결방법 ····· 156
질의 15. 습득증 회수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 156
질의 16.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분실 후 재발급신청 ····· 156
질의 17. 유학생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157
질의 18. 의식불명자, 거동불가자 등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 157
질의 19.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가능여부 ····· 157
질의 20. 이중등록자의 십지지문 재작성 ····· 158
질의 21. 개인별 주민등록표상 증 발급일자 미기재 시 분실신고서 접수여부 ····· 158
질의 22. 주민등록증 2매 지참자 처리 요령 ····· 159
질의 23. 사망신고 시 주민등록증 분실자의 증 회수 ····· 159
질의 24.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상의 지문자료를 요구할 때 처리방법 ····· 159
질의 25. 주민등록증 미경신자가 경신발급 신청할 경우 처리방법 ····· 160
질의 26. 신분증 복사 및 팩스송부에 관하여 ····· 160
질의 27.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1년간 찾아가지 아니할 때 주민등록증 회수요령 ····· 160
질의 28.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전화접수 가능 여부 ····· 161
질의 29.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도 송부가 가능한지 ····· 161
질의 30.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가 시 공고의 이유 ····· 161

# 목차

질의 31.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 교부 가능 여부 ····· 162
질의 3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공고)에 관하여 ····· 162
질의 33.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자 ····· 162
질의 34. 신분 소명하는 신분증 ····· 163
질의 35.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과태료 부과 ····· 163
질의 36. 우무인이 변경되어 재발급 시, 새로 받은 우무인을 경찰에도 보내야 되는지? ··· 163
질의 37. 재발급 주민등록증 교부 방법 ····· 164
질의 38.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십지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164
질의 39. 현지이주말소자의 주민등록 분신실고 ····· 164
질의 40.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관련 ····· 165
질의 4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통리장이 본인 확인을 한 경우 ····· 165
질의 42.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 166
질의 43.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166
질의 44. 의사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여부 ····· 166
질의 45.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재발급시 대리인 신청 여부 ····· 167
질의 46.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167
질의 47.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 167
질의 48. 생년월일만 있는 학생증이 소명 자료로 사용 가능한 지? ····· 168
질의 49. 제출한 사진이 6개월 이상 지난 사진인지 판단 기준 ····· 168
질의 50. 통합복지카드가 주민등록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지? ····· 168

## 제4장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1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173**

질의 1. 예비군 중대에서 공무상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 175

질의 2. 공무상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방법 ····· 175
질의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세대명부 열람 ····· 175
질의 4. 생활체육회 등 유관단체에서 시를 대표하여 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 176
질의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 ····· 176
질의 6. 국가기관 등이 공무상 열람 요청 시 그 범위 ····· 176
질의 7. 공무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 177
질의 8. 관계기관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177
질의 9.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가능 여부 ····· 178
질의 10. 국·공립학교에서 감사(가족수당) 관련 교직원 등·초본 발급요청 ····· 178
질의 11. 집행관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용발급 가능 여부 ····· 178
질의 12.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제출서류 · 178
질의 13. 지방의회에서 위원회의 주민등록표 열람 요청 ····· 179
질의 14. 수사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 요청할 경우 교부 방법 ····· 179

**제2절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181**

**1. 증명자료 및 교부신청이 가능한 경우 ····· 183**
**2. 소송, 비송사건 관련 초본 교부신청 ····· 184**
질의 15. 소송접수증명원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184
질의 16. 소송, 비송 사건의 원고가 외국인일 때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184
질의 17. 지급명령결정 정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 ····· 184
질의 18. 채무자의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 ····· 185
질의 19. 법원판결문이 복사본일 경우 ····· 185
질의 20.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186
질의 21. 형사사건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186

# 목차

질의 22.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186
질의 23.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한 출석요구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187
질의 24. 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187
질의 25.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서류 ····· 187
질의 26. 원폭피해소송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가능 여부 ····· 188
질의 27. 소송관련 판결문만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한지? ····· 188

**3. 강제집행 관련 초본 교부신청 ····· 189**

질의 28. 집행불능조서를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189
질의 29. 강제집행신청서의 요건 ····· 189
질의 30.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판결문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는 이유 ····· 189
질의 31. 소멸시효가 지난 판결문과 강제집행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190
질의 32. 경락대금완납증명서와 부동산 인도청구신청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190
질의 33. 부동산(채권,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가능 여부 ····· 190
질의 34.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191
질의 35. 공정증서에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191
질의 36. 예전(2009년) 강제집행접수증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192
질의 37. 임의경매신청서, 근저당설정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 소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192
질의 38. 정정판결문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 192

**4. 승계집행 관련 초본 교부신청 ····· 193**

질의 39. 채권 승계집행신청에 따른 채무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193
질의 40. 승계집행문 부여를 위한 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193
질의 41. 승계집행신청 관련 미성년자의 친권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193

질의 42.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위해 피고에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인 경우 초본 교부 신청 · 194
질의 43.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입증 자료 ····· 194
질의 44. 승계집행 확정 전에 승계신청인이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194

**5. 공탁 관련 초본 교부신청 ····· 195**

질의 45. 소송 승소금 지급을 위한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195
질의 46.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195
질의 47. 주식대금 지불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196
질의 48. 피공탁자 사망에 따라 해당 상속인 간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196
질의 49.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 196
질의 50. 공탁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 197
질의 51.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197
질의 52. 공탁관의 보정권고를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197

**6. 위임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 198**

질의 53.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소속사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198
질의 54. 법원제출용 소송위임장을 등·초본 발급 위임장으로 인정 가능 여부 ····· 198
질의 55. 주민등록표 등·초본 위임장 유효기간 ····· 198
질의 56. 소송대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199
질의 57.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의 위임장 접수시 담당자 유의사항 ····· 199
질의 58. 위임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분증 사본 ····· 200
질의 59. 소송관계인 등·초본 발급 시 서면위임장 양식에 대하여 ····· 200
질의 60. 위임자의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 앞면만 확대 복사해온 경우 ····· 201

**7. 기타 초본 교부신청 ····· 201**

질의 61. 입증자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 보완 가능 여부 ····· 201

# 목차

질의 62.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201
질의 63. 가등기권자가 소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202
질의 64. 보전처분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1 ····· 202
질의 65. 보전처분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2 ····· 202
질의 66. 개명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203
질의 67. 채권자가 채무자의 성명과 사업장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방법 ····· 203
질의 68.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204
질의 69. 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204
질의 70. 유체동산 압류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204

**8.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 205**

질의 71. 보정명령에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205
질의 72. 보정기간 지난 보정명령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 205
질의 73. 보정명령에 성명의 한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 205
질의 74. 이름만 있는 주소보정명령서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206
질의 75. 보정명령서의 대상자가 동명이인인 경우 처리 방법 ····· 206
질의 76. 보정명령서를 증명자료로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206
질의 77. 법인 대표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1) ····· 207
질의 78. 법인 대표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2) ····· 207
질의 79. 보정명령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 207
질의 80.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 208
질의 81. 주소보정명령서를 대리인이 가져왔을 때 초본발급 여부 ····· 208
질의 82. 개인사업자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 방법 ····· 209
질의 83. 수용자가 원고로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209
질의 84.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불가한 근거 ····· 209
질의 85. 보정명령서와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문서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210
질의 86. 보정명령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이해관계인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210

질의 87. 보정명령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초본 교부 ····· 211
질의 88. 보정명령서 상 신청인이 대한민국일 경우 ····· 211

**9. 서면위임장에 대한 이해 ····· 212**

**제3절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213**

**1. 증명자료 및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215**
**2.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217**
질의 89.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217
질의 90. 보상관련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및 공용발급 여부 ····· 217
질의 91. 공사, 공단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 218
질의 92. 공단(공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요청 시 신청절차 및 공용발급 여부 ····· 218
질의 93. 토지수용재결서만으로 토지소유자의 초본발급 가능여부 ····· 218
질의 94.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보존등기를 위해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 219
질의 95.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추진 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한지 여부 ····· 219

**제4절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221**

**1. 증명자료 ····· 223**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224**
질의 96. 소유권이전 판결문으로 초본 교부 신청 ····· 224
질의 97.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다른 공유자 초본 교부 신청 ····· 224
질의 98. 대위상속등기를 위한 초본 교부 신청 ····· 224
질의 99.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 225
질의 100.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 225
질의 101. 사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225

# 목차

질의 102. 공동소유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226
질의 103. 임대아파트 계약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 226
질의 104. 부모님 사망에 따른 은행예금을 찾기위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은? ····· 226
질의 105. 토지공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 227
질의 106. 토지공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 227
질의 107. 차량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 228
질의 108. 차량 폐차를 위한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 228
질의 109. 채권자가 대위등기 신청을 위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 228
질의 110. 대위등기의 비송사건 여부 ····· 229
질의 111. 근저당설정(임대차) 계약서로 경매신청 시 소유자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229
질의 112. 전세권설정권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 229
질의 113.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 230
질의 114. 물건 소유자가 근저당권자 등의 초본 교부 신청 ····· 230
질의 115. 본인 소유의 땅을 침범한 건물주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230

**3.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231**

질의 116.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1) ····· 231
질의 117.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2) ····· 231
질의 118. 당사자 표시변경 신청으로 채무자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 232
질의 119. 보험금 수령자가 사망자의 말소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232
질의 120.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체납자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 ····· 232
질의 121.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 초본 발급 ····· 233
질의 122. 주주총회 관련 초본 신청 가능 여부 ····· 233
질의 123.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체납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 234
질의 124. 개인의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초본 교부 신청 ····· 234
질의 125. 제3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234

질의 126. 채권자 사망시, 1순위 상속자가 채권승계 결정없이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 235
질의 127. 신용회복기금이 제도권 금융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235
질의 128. 대부업체의 초본 교부 신청 ····· 235
질의 129.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여 반송된 내용증명서가 없는 경우 초본 교부 신청 ····· 236
질의 13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 236
질의 131. 우편물 발송확인서를 통한 초본 교부 신청 ····· 237
질의 132. 우편물발송확인서 발송기관 문의 ····· 237
질의 133. 개인회생 실효에 따른 채무자의 초본 교부 신청 ····· 237
질의 134.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이사간 주소지로 발송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38
질의 135. 내용증명의 보완 역할 ····· 238
질의 136.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가능 여부 ····· 238
질의 137.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초본 교부 신청 ····· 239
질의 138.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의 친권자 초본 교부 신청 ····· 239
질의 139. 주주총회 개최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한 주주의 초본 교부 신청 ····· 240
질의 140. 인접 토지소유자의 초본 교부 신청 ····· 240
질의 141. 거래장의 인정 여부 ····· 241
질의 142. 매매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241
질의 143. 10년이 지난 차용증으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241
질의 144. 채권양도와 관련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시 입증 자료 ····· 242
질의 145. 차용증, 각서 등에 변제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 ····· 243
질의 146. 채무자의 근저당설정권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3
질의 147. 공정증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가능여부 ·· 243
질의 148.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자가 소유자의 초본발급 가능 여부 ····· 244
질의 149. 채무자가 채권자의 등·초본을 발급 ····· 244

# 목차

질의 150. 채권·채무관계에서 변제기일 경과전 초본발급(영 별표2의 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 244
질의 151. 물품구입 할부계약 및 카드결제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여부 ····· 245
질의 152. 할부금 등 변제기일 이전에 초본발급 가능 여부 ····· 245
질의 15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할 내용 ·· 246
질의 154.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상에서의 변제기일 문제 ····· 247
질의 15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은 어떤 경우에 작성되는지 ····· 247
질의 156. 연대보증인끼리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247
질의 157. 채무자 부인의 초본발급 여부 ····· 248
질의 158.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 권한 제3자 위임 여부 ····· 248
질의 159. 파산재단(영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용 248
질의 160. 내용증명서(또는 최고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의 초본발급 ····· 249
질의 161. 이해관계사실확인서(규칙 제10호서식)에 날인하는 인감은? ····· 249
질의 162. 유동화전문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주민등록표 초본교부 관련 ····· 250
질의 163. 신용정보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개인에게 위수탁받은 경우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용 가능 여부 ····· 250
질의 164. 신용정보업자의 채권 양도, 매입 가능 여부 ····· 250
질의 165. 반송된 우편물 확인 여부 ····· 251
질의 166. 변제기일 이전에 초본 교부 신청 ····· 251
질의 167. 채권자 2인끼리 초본 교부 신청 ····· 251
질의 168.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여부 1 ····· 252
질의 169.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여부 2 ····· 252
질의 170.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1 ····· 252
질의 171.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2 ····· 253
질의 172. 반송된 우편물에 채무 독촉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53
질의 173. 등·초본 교부신청 시 통수 제한 가능 여부 ····· 254
질의 174.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 254
질의 175.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발급 ····· 254

질의 176. 등·초본의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제출 ····· 255
질의 177. 채권 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 255
질의 178. 대금지불한 공사 미이행으로 초본 발급 ····· 255
질의 179. 세금계산서를 채권채무 입증자료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 256
질의 180. 주소와 주민번호로 특정되면 초본발급 가능한지 여부 ····· 256
질의 181.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초본 교부 신청 ····· 256
질의 18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257
질의 183.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257
질의 18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변제기 도래의 기준 ····· 258
질의 185. 채권양도와 관련한 초본교부 신청 ····· 258
질의 186. 채권·채무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259
질의 187. 신용정보업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과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의뢰서 등을 첨부하여 초본발급 가능 여부 ····· 259
질의 18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상의 변제기일을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수정할 시 업무처리방법 ····· 259
질의 189. 가맹점계약서로 가맹본부(갑)에서 가맹점사업자(을)의 초본 발급 여부 ····· 260
질의 190. 상인회가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 한지 여부 ····· 260
질의 191. 병원의 미납 진료비 회수를 위한 초본 발급 ····· 261
질의 192. 이해관계사실서의 위임일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상의 계약일자와의 일치 여부 ·· 261
질의 193. 제3채무자의 초본 발급 ····· 262
질의 194. 부동산 가계약에 따른 은행 입금거래 내역 및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 262
질의 195. 원계약서(온라인대출서)에 대출자 성명만 기재, 채권양도통지서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262
질의 196. 변제기일이 없는 건축대금 지급확인서로 초본 발급 가능한지? ····· 263
질의 197. 신용카드 회사에서 채무자의 초본 발급 신청시 해당 회사 외 파견직 근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 263

# 목차

질의 198. 양육비 부담조서로 초본 교부신청 ····· 264
질의 199. 유언공정증서에 있는 집행인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 264

**4. 임대인, 임차인간의 초본 교부신청 ····· 264**
질의 200. 임대인이 월세 미납자 초본 교부신청 ····· 264
질의 201.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1) ····· 264
질의 202.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2) ····· 265
질의 203.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발급 가능여부 ····· 265
질의 204.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 266
질의 205. 전세금 반환 후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발급 가능 여부 ····· 266
질의 206. 집수리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 266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대한 이해 ····· 267**
**6. 채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 268**
**7. 반송된 내용증명에 대한 이해 ····· 270**

**제5절 가족간 발급 ····· 271**

질의 207. 계모와 재혼자녀 간의 등·초본 발급 ····· 273
질의 208. 이혼한 부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274
질의 209. 형제자매간의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 가능 여부 ····· 274
질의 210.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부대상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 274
질의 211. 상속 포기를 위한 조카의 삼촌 등본 신청 ····· 274
질의 212. 시아버지와 이혼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 275
질의 213.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친권자 모가 부의 초본 교부 신청 ····· 275
질의 214. 친권자인 모가 자녀를 계부에게 입양하기 위해 이혼한 부의 초본 교부 신청 ·· 276
질의 215. 외국인 모가 아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276

**제6절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 277**

질의 216. 현지이주 말소자 초본 교부 신청 ····· 279
질의 217. 수감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279
질의 218. 수감자의 등·초본발급 신청 ····· 279
질의 219. 등·초본 발급 위임가능 여부 ····· 280
질의 220. 현지이주말소자가 본인의 말소자초본 교부신청 방법 ····· 280
질의 221.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 시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 280
질의 222.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 날인 가능 여부 ·· 281
질의 223. 지배인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초본 교부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지 여부 ····· 281
질의 224.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281
질의 225. 외국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 282
질의 226.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한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 ····· 282
질의 227. 사망자의 등·초본 발급 가능 범위 ····· 282
질의 228.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발급 여부(1) ····· 283
질의 229.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발급 여부(2) ····· 283
질의 230. 주소확인을 위한 말소·거주불명 등록자 초본의 발급 유무 ····· 283
질의 231.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가능 여부 ····· 284
질의 232.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 시 처리 요령 ····· 284
질의 233.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의 위임 받은 자의 주소 ····· 285
질의 234. 무단전출로 최고·공고 중인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여부 ····· 285
질의 235. 법무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대행 가능 여부 ····· 285
질의 236. 대법원 사이트 출력물의 입증자료 인정 여부 ····· 286
질의 237.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의 팩스 자료 요구 ····· 286
질의 238. 주민등록표 전화열람 가능 여부 ····· 286
질의 239. 주민등록 인적사항(주소 등) 자료 협조 요청시 처리 ····· 287
질의 240. 모사전송으로 접수된 공문에 대한 회신을 모사전송 가능 여부 ····· 287

# 목차

질의 241. 과거의 주소,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성명)로 초본발급 가능한지 ····· 287
질의 242.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의뢰 시 처리 요령 ····· 288
질의 243. 확정된 판결문과 판결문경정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288
질의 244. 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 관련 ····· 288
질의 245.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불명 등록자인 남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289
질의 246.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관련 ····· 289
질의 247.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과 제적등본만 존재 시 사망자의 말소자 초본 발급가능 방법 · 289
질의 248. 아동복지 시설에 단독세대주로 있는 미성년자의 초본 발급 ····· 290
질의 249. 신청인의 교부제한 대상자 신청 범위 ····· 290
질의 250. 세대주가 세대원의 초본 발급 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가능 여부 · 291
질의 251. 독립운동가 포상 심사 자료제출에 후손의 증언이 필요하여 주소 열람 요청 ···· 291
질의 252.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위해 동일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신청가능 여부 ····· 291
질의 253. 타인이 본인의 등·초본을 발급한 내역 확인 방법 ····· 292
질의 254.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에 의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가능 여부 ····· 292
질의 255.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업무 관련 초본 교부 신청 ····· 292
질의 256.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한 말소된 자의 초본 교부 신청(1) ····· 293
질의 257.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한 말소된 자의 초본 교부 신청(2) ····· 293
질의 258. 국적상실 후 사망한 자의 초본 교부 신청 ····· 294

**제7절 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 295**

질의 259. 구 세대별카드의 이해관계인 발급가능 여부 ····· 297
질의 260. 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포함]의 열람범위 ····· 297
질의 261.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분실 재작성 교부 ····· 297
질의 262. 1960년대 기류부 보관 유무 관련 질의 및 주거표 ····· 298
질의 263. 구 주민등록표를 찾을 수 없고 색인부만 있는 경우 ····· 298

질의 264. 구 주민등록표(62.6.25.~68.10.19., 68.10.20.~79.6.30.) 발급 ····· 299
질의 265.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주소정리 교부 ····· 299
질의 266. 구 주민등록표(1962.6.25.~1968.10.19)의 정보공개결정 절차 및 방법 ····· 299
질의 267.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등본 발급시 위임 여부 ····· 300
질의 268. 이해관계인이 구 주민등록표 교부신청을 한 경우 교부 방법 ····· 300
질의 269. 동적부 발급 ····· 300
질의 270. 구 주민등록표(1962~1968년) 발급에 대한 문의 ····· 301
질의 271. 구 주민등록표(1968~1979년) 증명·발급 방법 ····· 301
질의 272. 과거주소 확인을 위해 구 주민등록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 ····· 301
질의 273. 구 주민등록표의 수정·추가 가능 여부 ····· 302

**제8절 기타사항 ····· 303**

질의 274. 전화번호 제공 가능 여부 ····· 305
질의 275. 영정사진 또는 기타 용도로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사진자료 요구 시 제공 가능 여부 ····· 305
질의 27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초본 교부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위임자 신분증의 진위확인을 해야 하는지? ····· 305
질의 277. 주민등록제도상 인정되는 신분증 ····· 306
질의 278. 분실신고된 주민등록증으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 306
질의 279.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증빙자료 ····· 306
질의 280. 가정폭력행위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307
질의 281. 가정폭력행위자 등·초본 교부 제한 이후 이혼한 경우 ····· 307
질의 28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요건의 미비 ·· 307
질의 283. 가정폭력피해자 교부 제한 신청인 범위 ····· 308
질의 284. 가정폭력피해자 교부 제한 대상자 범위 ····· 308
질의 285.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 309

# 목차

질의 286. 입증자료의 미비사항 내용증명으로 보완 가능 여부 ····· 309
질의 287.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토대로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가능 여부 ··· 310
질의 28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310
질의 289. 주소보정명령서를 분실한 경우 ····· 310
질의 290. 요양원에서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311
질의 291. 열람용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311
질의 292. 신분증(사본 또는 촬영한 사진) 인정 가능 여부 ····· 311
질의 293.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312
질의 294. 주민등록법상 새아버지와 새조부모의 직계존속 해당 여부 ····· 312
질의 295.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312
질의 296.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을 하였는데 주민등록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313
질의 297.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지문자료 요청하는 경우 ····· 313
질의 298. 외국인 장인이나 장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가능 여부 ····· 313
질의 299. 공시송달신청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 314
질의 300.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없는 경우 ····· 314
질의 301.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 315
질의 302.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 315
질의 303. 구 주민등록표의 원본대조필 가능 여부 ····· 315
질의 304.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지? ····· 316
질의 305. 임의로 변경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 인정 여부 ····· 316
질의 306. 개인과외 교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316
질의 307. 개인사업자의 원본대조필 ····· 317
질의 308. 주민등록 업무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 317
질의 309. 신용정보회사의 위수탁계약서 원본대조필 ····· 317
질의 310. 시행규칙 [별표] 비고 3번 증명자료(사본) 관련 ····· 318
질의 311.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상 전화번호 이용 가능 여부 ····· 318
질의 312. 법인의 위임장 날인 ····· 318

질의 313.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 319
질의 314.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신청 대상자 확대 ····· 319
질의 315. 과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319
질의 316. 친양자 입양·파양 관련 변경내역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가능한지? ·· 320

**제9절 전입세대 열람 ····· 321**

**1. 전입세대 열람 신청 ····· 323**

질의 317. 조사의뢰서가 전산출력물인 경우 ····· 323
질의 318. 위임받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여부 ····· 323
질의 319. '계약사실확인원'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 323
질의 320. 분양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 324
질의 321. 경매참가자의 전입세대 열람 ····· 324
질의 322. 신용조사회사의 전입세대 열람 ····· 324
질의 323. 토지소유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 325
질의 324.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 325
질의 325. 채권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 325
질의 326. 계약경제일보에서 우편으로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 여부 ····· 326
질의 327. 카드회사에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으로 전입세대 열람 ····· 326
질의 328. 전입세대 열람 동거인 가능 여부 ····· 326
질의 329. 팩스로 수신된 감정평가의뢰서 인정 여부 ····· 326
질의 330. 동일 법인번호 금융회사의 다른 지점에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가능 여부 ····· 327
질의 33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여부 ····· 327
질의 332. 전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 327
질의 333. 전입세대 열람 신청사실 확인 요청 ····· 328
질의 334. 전입세대 열람 교부기간 연장 가능 여부 ····· 328
질의 335. 경매낙찰자의 전입세대 열람 ····· 328
질의 336.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매매계약서로 전입세대 열람 ····· 329

# 목차

질의 337.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 329
질의 338.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전 소유주 전입세대 열람 ····· 329
질의 339. 동일물건에 대한 연속 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자가 다른 경우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 330
질의 340.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활용 ····· 330

**2.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 330**

질의 341.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 시 수수료 ····· 330
질의 342. 여러필지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 331
질의 343. 다세대주택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 331

**3. 전입세대 열람 일반 ····· 332**

질의 344.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과거 거주자 확인 가능 여부 ····· 332
질의 345. 과거 시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 332
질의 346. 전입세대 열람 시 증명자료 보관 여부 ····· 332
질의 347.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전입세대 열람 ····· 333
질의 348. 전국 어디서나 전입세대 열람 ····· 333
질의 349. 전입세대 열람시 사망말소자 ····· 333
질의 350. 전입세대 열람의 입증자료 ····· 334
질의 351. 다가구 주택 전입세대 열람 시 세입자의 동의 여부 ····· 334

## 제5장 수수료, 과태료

**제1절 수수료 ····· 337**

질의 1. 국가유공자가 가족의 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 339

질의 2.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 339
질의 3.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 339
질의 4. 수급자의 등본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 339
질의 5. 지문 변경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 340
질의 6. 등·초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 340
질의 7. 아파트가 여러필지에 걸쳐 건축된 경우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 341
질의 8.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등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요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 341
질의 9. 주소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산열람 시 수수료 ····· 341
질의 10.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수수료 면제 ····· 342
질의 11. 주민등록증 사진변색 등 재발급 시 수수료 부과 여부 ····· 342
질의 12. 개명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 ····· 342
질의 13.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시 수수료 ····· 343
질의 14. 관내 장애인(1~3급)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343

**제2절 과태료 ····· 345**

질의 15. 외국 유학생의 주민등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면제 여부 ····· 347
질의 16. 최고 또는 공고기간 중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 347
질의 17. 과태료 미납부 시 제(諸)신고 가능 여부 ····· 347
질의 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주민등록업무 처리 요령 ····· 348
질의 19.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348
질의 20. 세대 전부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어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 ····· 349
질의 2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해외체류, 수감, 유학 등의 경우 과태료 ····· 349
질의 22. 재등록 과태료 부과기준일 ····· 349
질의 2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350
질의 24.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 350
질의 25.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의 사망신고 시 과태료부과 및 처리 요령 ····· 350

# 목차

질의 26. 거주불명 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간에 과태료 이중부과 여부 ····· 351
질의 27.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시 신고지연사유서 ····· 351
질의 28. 과태료 감면 가능 여부 ····· 351
질의 29. 주소변동 사항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352
질의 30.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경감부과 방법 ····· 352
질의 31. 위장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 353
질의 32.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거주불명 등록 시 과태료 부과 ····· 353
질의 33. 전입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 및 과태료 부과 여부 ····· 354
질의 3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 354

# 제1장
# 주민등록

제1절 주민등록 대상
제2절 거주불명 등록
제3절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4절 재등록
제5절 주민등록표 정정, 삭제
제6절 사실조사 등 주민등록 일반

# 제 1 절

# 주민등록 대상

## 01 병원 입원 환자, 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주민등록

일정한 주소가 없는 자가 병원, 보호시설 등에 장기입원 치료 중(약 6개월)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경우 사실상 거주의 목적이 아닌 일시체류의 목적으로 판단되는데 병원을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소 또는 주소로 간주할 수 있는지?

**회신**

- 병원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고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의 거소 또는 주소로 인정할 수 없음
- 다만, 아래 예시와 같이 예외적인 입원자 등에 한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병원을 법 제12조의 합숙사로 간주 가능할 것으로 판단
  ①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가 따로 없고
  ② 치료의 목적보다 실질적으로 보호수용을 받고 있는 자
  ③ 달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입원자

## 02 외국국적 보유자의 주민등록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거주하려고 할 경우 주민등록신고 방법은?

**회신**

-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규등록을 하여야 함
  - 국적취득(귀화, 국적회복, 재취득 등) 사유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사진을 통해 본인확인 가능)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를 한 자는 이미 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선택신고를 한 자이므로 '국적선택신고 수리 통지서'로 갈음
    ☞ 국적법 제11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적재취득자는 무국적상태(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경우 '국적취득 수리통지서'(붙임 고시문에서 취득사유가 재취득자임을 확인)로도 주민등록이 가능

## 03 출생신고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불가 시 처리 요령

출생신고 착오로 '2월 30일' 등 없는 날짜를 생년월일로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 주민등록번호 부여는 양력을 취하고 있어 음력으로(2월 29일) 출생신고를 하였거나 2월 30일, 6월 31일 등으로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불가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정정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 04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의 동일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13자리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별로 각각 번호가 부여되므로 13자리 수가 동일한 번호는 있을 수가 없으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 수는 동일한 숫자가 있을 수 있음

## 05 등록기준지에서 출생신고서 미수리 시 처리 방법

주소지에서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여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번호부여 등을 처리한 후 등록기준지에 통보하였으나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기 처리된 주민등록사항을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지에서 접수한 출생신고는 등록기준지로 통보하고 등록기준지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내용이 다르거나 처리가 곤란할 경우 지체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당초 접수한 출생신고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동 신고서에 의거 작성된 주민등록도 삭제 처리

## 06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에 대한 구제 방안

**회신**

-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하여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제1호(신고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음
- 아울러, 과거의 호적 등재사항 등을 확인하여 무호적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창설을 하고 그에 따른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을 것임

## 07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입국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신분과 입국 시 사용한 여행증명서상의 신분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 가능 여부

- 북한이탈주민 A는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 B를 2016.7월 출생신고(인우보증과 북한이탈주민 신원사실관계 확인서로 출생신고)
- 이후 B는 2017.1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C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최초 입국 함
- A는 C의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이 본인의 자녀 B이므로 주민등록 해줄 것을 요청(여행증명서상의 C의 주민등록번호는 오류번호이며, 존재하지 않는 인물)
- C의 신분으로 입국한 B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해줄 수 있는지?

**회신**

- 해외출생자녀를 주민등록 할 때에 출생자녀의 입국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함
- B와 C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B와 C가 동일인이라는 내용의 공증, 유전자 검사, 판결문 등으로 확인 후 주민등록 하여야 함

## 08 해외출생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

**회신**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에서 출생한 한국국적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때에 그 거주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됨
- 참고적으로 신고 시 자녀가 함께 동반하지 않아도 됨
(출생자의 외국여권으로 입국사실 확인 가능)

## 09 전산 미입력자, 구 주민등록표가 확인되지 않는 자

**회신**

- 우선, 구 주민등록표를 말소자, 그 당시 세대주 중심으로 찾아야 하고 최소한의 자료가 나온다면 전산상 등록을 하여야 함
- 여기서 '최소한의 자료'란 본인의 구 원장은 못 찾았더라도 세대주(부모 등) 및 가족의 원장에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 가능한 것을 말함

## 10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회신**

- 사실조사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직권사망말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사망신고를 통하여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있음
- 이는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따른 것이며, 사망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정정신고를 받고 사망말소 정정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처리

## 11 부여이력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상이(생년월일 일치, 뒷자리만 상이)
- 번호부여지에 확인하여 보니,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부여된 번호이며, 주민등록상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대장에 부여이력이 없음(주민등록상 번호도 조립부에 있는 유효한 번호는 맞음)
- 민원인께서는 주민등록상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길 원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상 부여이력이 없는 주민등록상 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비록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부여한 흔적이 없는 번호라 하더라도 해당자가 장기간 사용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 또는 타인이 사용한 번호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용

하게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에 가족관계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음

## 12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에 사망한자의 주민등록표 정정 문의

- 주민등록표 구원장상의 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제적부의 사망일자가 아닌 사망 신고일자로 사망일자를 기재) 정정해달라는 민원

**회신**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부여 전에 사망한 자는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입력할 수 없고 수기 주민등록표는 그 자체로 수정이나 추가입력을 할 수 없음
- 두 공부(제적부와 구 주민등록표)간 사망일자가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인임은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문 회신

## 13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가능 여부

-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가 상이함
- 가족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족관계상의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가능한가요?

**회신**

-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주민등록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신고의무자가 할 수 있으며, 사망 말소자의 경우 세대를 별도로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 다만, 사망자의 상속인 중 배우자와 1순위자(직계비속) 및 2순위자(직계존속)가 없고 선순위로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할 것

## 14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규 등록

-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규등록인데,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에 입국하지 않고, 재외공관 확인받아 주민등록신고를 위임하면 가능한지?

**회신**

- 원칙적으로 신규등록은 국내에 입국한 상태가 아니면 불가하며, 이러한 이유로 재외공관 확인받은 위임장으로도 불가

## 15 재혼자녀의 주민등록표 동거인표시

**회신**

-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주와 세대원과의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확인한 후 표기
- 현 주민등록제도에서 재혼자녀는 세대주(재혼한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속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란에 기재되나 세대주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참고**

▸ **민법상 가족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종류**

① 배우자 : 배우자
② 직계혈족 : 부, 모, 자녀, 양부, 양모, 손, 손부, 손서, 증손, 고손,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손, 외조부, 외조모, 외증손
③ 형제자매 : 형, 제, 누이, 매, 오빠, 언니, 누나
④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증손부, 고손부, 외손부, 외증손부, 계부, 계모
⑤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시조부, 시조모, 장조부, 장조모, 시외조부, 시외조모
⑥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누이, 처형, 처제, 처남

## 16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자의 주민등록 말소 가능 여부

- 제3자의 사망사실 확인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의 매화장처리 조회 회신자료를 근거로 사망자 직권 말소 가능한지 여부와 처리방법은?

**회신**

-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특정인이 매화장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회신 문서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사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명백하게 해당자가 사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고(사망자이므로 최고 생략) 후 사망 직권말소가 가능할 것임
- 다만,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의 변동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가 우선되어야 하고 주민등록관서에서는 사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능하다면 민원인에게 먼저 사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적으로, 해당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망진단서, 매화장 처리 조회 회신 자료 등)로 사망 직권말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이행한 후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처리하여야 할 것임

## 17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 시 일자기준

•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일자는 사망일자 기준인지 사망신고일자 기준인지?

**회신**

-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말소) 시에는 민원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상의 실제 사망일시를 '사망일자' 입력란에 기재
- 등록기준지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폐쇄 통보를 받아 직권말소 시에는 사망신고일자(통보받은 일자 또는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말소일자' 입력란에 사망일자를 기재하여 정리
- 다만, 사실조사에 의한 직권말소 시는 직권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함

## 18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정리 방법

**회신**

-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으로 인한 변동일자는 등록기준지로부터 사망사실을 통보받거나 사망사실을 확인한 날이므로 사망일자와는 다를 수 있음
- 다만, 주민등록표의 사망일자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4조에 의거 사망일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라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정리하여야 함

## 19 거동불가자 주민등록 신고 방법

- 세대주가 신고의무자인데,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 위임하여 가능한데,
-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아무도 없고, 신고의무자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이나 이동이 불가한 상황일 경우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 회신

- 신고 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등 주민등록법 제11조의 신고 위임 가능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담당공무원의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예외적으로 신고 · 접수가 가능할 것이며, 병원 입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장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음

## 20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 란에 기재되는 경우

###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 란에 기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세대주 기준)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와의 관계에 가족관계가 기재되고 그 외의 경우라면 '동거인'으로 표기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 21 재혼가정의 자(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 포함)의 주민등록표 정리방법

- 남성이 자녀가 있는 여성과 혼인하였을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정리는?

### 회신

- 남성이 세대주인 경우에 혼인한 여성의 자는「민법」 제779조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란에 기재

- 다만, 남성과 혼인한 여성의 자는 법률상으로 친자관계가 아니므로 세대주와의 관계에서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어야 하며,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에도 법률상 혈연관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마찬가지임

## 22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이한 자의 주민등록사항 정리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에 기재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정리 불가 시 정리 방법은?

**회신**

-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및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의 규정은 동일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을 일치시키고 가족관계등록신고로서 주민등록신고를 갈음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규정임
-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등록기준지 확인,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기관과 주민등록기관과의 신고사항 통보누락 또는 등록기준지 조회여부 등에 대한 경위조사 절차를 거쳐 동일사항으로 판명되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것임(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 법원의 허가 필요)

## 23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회신**

-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한자 포함) 표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등록기준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결과 이기착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지 읍·면·동에서 정정신고를 받아 주민등록표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민원인이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을 정정하여야 함

# 제 2 절

# 거주불명 등록

# 1 거주불명 등록 신청

## 24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자격 및 처리방법

### 회신

- (거주불명 등록 신고) 주민등록 제도 상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법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세대주 등)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 신고의무자가 아닌 제3자(건물소유주, 채권 · 채무관계자 등)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가 아닌 민원서류**에 따른 신고를 통해 행정청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조치를 요청해야 함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 또는 제9호의2 서식에 따른 신고
    ** 행정기관에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거주불명 대상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본인의 의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로써 표시하여야 함
  -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서류(반송우편물 등)와 이해관계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이해관계서류 등)를 함께 제출(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인근 주민은 제3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요청이 불가하며, 사실조사 기간에 참고자료로는 활용 가능)
- (거주불명 등록의 종류) ①신고의무자의 거주불명 신고에 의한 등록과 ②직권 거주불명 등록으로 구분되고,
  - 제3자의 민원서류에 따른 신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주민등록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실조사 및 직권 거주불명 등록의 근거에 해당하는 것임
- (거주불명 등록 절차)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이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모두 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최고 · 공고 후 등록 처리 및 조치 사실 최고 · 공고 필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20.10.13.)
  * 악의적·우발적으로 세대주(원)를 거주불명 등록신고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거주불명 등록 신고 시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
- (거주불명 사실조사 실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 신고 시 이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시기는 주민등록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 개별 신고 내용의 타당성, 성질(악의적 · 반복적 여부 등), 행정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시기를 조정하나, 민원서류에 따라 접수 받는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신고의 처리기한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통보) 거주불명 등록처리에 대해 신고의무자 또는 신청인인 제3자에게 회신하여야 할 주민등록법상의 근거는 없으나, 제3자에 의한 민원서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실시한 경우 조사 일시 등 기재)에 대해 회신 가능
  - 실제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를 하였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확인토록 안내

## 25 공시송달결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신청

**회신**

- 제3자가 법원의 공시송달결정을 근거로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한다면 사실조사를 생략하고 최고·공고 등 거주불명 등록 절차 진행가능
- 다만, 공시송달결정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사실조사 등을 통한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이 별도로 필요할 것

## 26 사망한 집주인의 배우자를 재산권자로 보아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건물·토지 소유자나 임대인 등의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할 수 있겠으나, 이해관계인인 집주인이 사망한 상태이며 비록 상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1순위 상속자인 배우자도 재산권자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어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 또한,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하는 '기타민원'으로 볼 수 있음

## 27 우편 송달 등의 방법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회신**

-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제3자가 타인을 거주불명 등록이라는 처분과 집행을 행정청에 요구하는 특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직접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
- 따라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서로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접수하고, 전화·구술·fax·우편 등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며, 사실조사 기간에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임

## 28 재산권자,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시 위임 가능 여부

**회신**

- 서면위임장과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서류 등) 첨부하여 대리인이 요청 가능(우편불가)

## 29 토지소유자(재산권자)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회신**

- 토지소유자도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물소유자와 동일하게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 30 지자체가 공문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및 사실조사 시기는?

**회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실조사 기간에 함이 원칙이지만, 내부결재 받아서 수시처리도 가능(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도 동일)

## 31 건물의 건축주가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건물이 완공된 상태가 아니어서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더라도, 행정 관청에 건축주변경신고를 하여 신고필증 공문을 받았다면 잠정적으로 동 건물에 대해 소유자에 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동 건물에 전입되어 있는 자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 32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회신**

-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재개발구역 주민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의뢰가 가능

## 33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거주불명 등록요청 가능 여부

- 현재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처)이 남편의 가출(가출신고 된 상태)을 이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신고가 가능한지?

**회신**

-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만 가능하므로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은 신고를 할 수 없음

## 34 본인 스스로 거주불명 등록 신고가 가능한지

- 단독 구성세대일 경우 본인이 본인을 거주불명 등록 할 수 있는지?

**회신**

- 본인이 본인을 신고 거주불명 등록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사실조사 등을 거쳐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음

## 35 미성년자가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신고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 세대주, 미성년자녀의 2인 세대 → 세대주가 무단전출
- 미성년 자녀가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로 신고 거주불명 등록 가능한지?

**회신**

- 미성년자의 요청이 있다면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사실조사 통해서 처리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신고인〉 란에 아이의 인적사항까지만 기재하고 서명날인은 하지 않음
-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로 갈음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 후 사실조사서 첨부

### 36 소송중인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1항제3호에는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민등록제도에서 사실조사는 대상자가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비록 소송 진행 중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당 읍·면·동장이 판단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함

## 2 직권조치에 관한 문의

### 37 사인간 소송 등 분쟁 상황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회신**

- 법령의 규정상 '객관적 거주사실'을 직권조치의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직권조치를 할 경우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서*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직권조치를 유보할 수는 없을 것임
  * 별도의 서식은 존재하지 않고, 판단의 권한을 가진 법원 등 해당기관에서 직권조치의 유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 또는 공문이 제출된다면 거주불명 등록의 유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소 제기 여부, 건물주의 단수 · 단전조치 등은 거주불명 등록의 예외 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며, 기타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권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38 최고 또는 공고기간에 대상자가 거주한다고 서면으로 소명하였을 때 처리방법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하여 사실조사 후 최고, 공고기간에 대상자가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소명자료 등을 통해 만약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직권조치를 위한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 재조사 시 객관적인 거주상태 및 주변 이웃과 이·통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명확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한 후 내부결재를 통해 공문 보관

## 39 거주불명 등록 절차 종료 가능 여부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 중 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지로 돌아왔다고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은?

**회신**

- 최고(공고)를 진행하는 중에 대상자가 실제 살고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거주자임이 확인된다면 직권조치 절차를 종료

## 40 거주불명 등록 시 신고의무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하고 최고할 수 없으면 공고하고 직권조치를 하게 됨
- 직권조치 절차 중에 행정기관에서 신고의무자에게 유선통화로 알려주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41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대한 회신 방법 (전화상으로 구술 전달하였는데 문서로 또 회신해야 하는지?)

**회신**

- 전화상으로 민원인에게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었더라도, 거주불명 등록 요청 민원을 문서로 접수하였다면 이에 대한 회신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

## 4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과정에서 사실조사 후 최고장을 발송(7일 이상)하고 반송된 경우에는 공고(7일 이상)를 하여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조치 후,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한 사실을 반드시 통지(영 제23호서식, 14일 이상) 해야 하며,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드시 14일 이상(「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공고하여야 함

## 43 거짓으로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절차

- 해당 지번의 건물에 없는 동·호수로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은?

**회신**

- 민원인이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였는지 여부를 우선 사실조사 한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최고, 공고 후 직권조치 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전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직권조치와 별개로 고발조치 가능
- 그러나, 민원인의 착오로 잘못 전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신고당시 전입신고서 확인) 민원인에게 정정할 것을 최고 또는 공고한 후 직권정정 해야 할 것임

## 44 위장전입자의 경우 고발조치도 반드시 해야 하는지

• 사실조사 결과 위장전입(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직권 거주불명 등록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 회신

- 거짓신고자에 대하여는 통리장 사후확인 결과와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거짓신고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고발조치(사무편람 별지 제15호 서식) 가능

  ※ 주민등록법 상 '고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누구든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34조)

## 45 주민등록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 회신

- 주민등록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처리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현지 거주상황과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직권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거주에 대한 판단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숙박이 필수이고 이를 위한 도구비치, 취사, 우편·택배 수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46 단독세대 구성으로 연락만 가능할때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 당사자와 연락이 되고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가끔 주소지에 들른다고 할 경우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한지?

### 회신

- 직권조치 시에는 우선 사실조사를 나가서 집주인의 증언, 다른 사람의 거주여부, 주위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사진 확보 등을 통한 사실조사서 작성으로 읍·면·동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후 직권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47 공고만료일에 직권조치 유보 가능 여부

- 집주인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따라 최고 이후, 공고 만료일에 대상자와 집주인이 같이와서 다음 주에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함
- 공고일 익일에 바로 처리해야 하는지, 재량을 발휘해도 되는지?

**회신**

- 절차에 따라 공고일 익일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최고·공고 기간에 민원인이 어떤 의사표시를 하거나, 거주하고 있다는 이의제기 등 다른 사실을 밝히면 다시 조사해야 함
- 일주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밝히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소명자료로써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받아두고, 직권조치 유보에 대한 내부결재를 통해 정리(민원인의 소명사항으로 직권조치를 언제까지 유보한다 등)

## 48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 일반여권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한지?

**회신**

- 해외체류자의 경우에도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및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음
- 현재 주소지에 거주흔적이 없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하고 추후 민원인 신청이 있을 경우 직권 재등록 처리(과태료 미부과)
- 또한 해외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 된 경우에도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직권 재등록

## 3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

### 49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를 거주불명 등록한 경우 처리방법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제2항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및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거주상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되는 경우가 존재
- 이 경우 추후에 당사자 소명 등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재등록(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하고, 과태료 미부과

### 50 해외체류자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및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체류자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사무 처리를 하고 있음
- 따라서, 법 제20조에 의해 사실조사를 거쳐 해외 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거주불명 등록 하지 않으나, 현재 주소지에 거주흔적이 없고 주소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 하고, 추후 민원인 신청이 있을 경우 해외출입국 관련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직권 재등록(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과태료는 미부과

## 51 장기요양자는 거주불명 등록 하지 않는다는 의미

**회신**

- 행정기관이 장기요양자를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장기적 치료 등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고려한 것이므로,
- 비록 병원이나 요양원 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입원이나 치료를 위하여 일정기간 머물러 있었음을 소명한다면 장기요양자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자녀의 주소지에서 가족요양을 받으며 장기간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동거 가족 요양급여 관련서류 등)를 제출한다면 장기요양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4 기타사항

## 52 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왔는데, 전 주인의 우편물이 계속 도착되고 있으며, 문제는 우편물이 체납장, 고소장, 압류장 등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음
- 다만, 위 사례처럼 집주인 등이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불명 등록 주소이전을 요구 할 경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2회) 절차를 진행 후 대상자(전 주인)의 주소를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가능
- 이 때, 이전 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사항에 대한 공고절차는 필수적임(건물 소유주 등의 재산권 행사 및 보장을 위해 허용–'20 주민등록 사무편람 p.77 참고)

## 53 거주불명 등록이력 삭제 가능여부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A씨가 전입신고 하던 중에 거주불명 등록을 확인하고 직권조치 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당시에 해당 주소지에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직권 재등록을 요청
- 집주인 및 세입자의 대질심문을 위해 주소지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지만 이웃집 주민을 만나 확인하니 거주불명 등록된 당시에 해당자는 살았었다는 진술을 받음

질문1) 주민등록법상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지?

질문2)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이웃주민의 진술을 근거로 살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 직권재등록(과태료 미부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 회신

-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따라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동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거주불명 등록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하는 것으로서, 불법으로 인한 당연무효나 행정상 명백한 착오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삭제'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등록법상 직권조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명백히 행정상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불명 등록 사항을 삭제할 수 없음

## 54 거주불명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접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 회신

- 거주불명 등록 신청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접수증 발급 가능

## 55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의 차이점

**회신**

- 과거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09.10월 무단전출자 말소제도를 개선하여 '거주불명 등록제도' 도입
- 현행 주민등록제도에서 '말소'의 종류는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이중등록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음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지만, 거주불명 등록자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보험료를 고지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거주불명 등록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지, 주소지를 정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신분증 지참),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하면 됨

## 56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 방법

**회신**

- 민원인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한 주민등록번호(A)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A와 B가 동일인이라는 확인은 ① 법원 판결문 ② 유전자 검사 ③ 변호사의 공증 등으로 한 후, 재등록하여 사용 가능
-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B)은 말소하고 A와 B의 개인메모사항에 각각 동일인임을 기록하여 관리
- 추후 민원인이 동일인임을 증명 요청시 발급기관에서 주민등록초본(A)와 말소자초본(B)과 함께 A와 B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교부(C)
- 민원인은 위의 3가지(A,B,C)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본인임을 증명

## 57 수감자의 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및 직권재등록 가능 여부

- 무단전출신고말소('92.5.29.), 직권거주불명 등록('10.10.4.)된 A씨가 2016.6.20. 재등록 및 전입한 이후 말소 당시 수감되었음을 주장하며 말소기록 삭제 요청
  - A씨의 수용증명서 확인 결과 1992.11월부터 수감되어 말소 당시에는 수감되지 않아 말소기록의 삭제 불가를 A씨에게 알림
- 반면, A씨는 수감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바, 이에 반하여 직권조치 및 이전조치를 하였기에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 수감기간동안에는 직권재등록 하는 등 무단전출신고말소 기록에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회신

- '92.5.29. 무단전출신고 말소 당시 해당 민원인은 수감되지 않아 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행정청에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행정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하는 것으로서, 불법으로 인한 당연무효나 행정상 명백한 착오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 주민등록법상 직권조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명백히 행정상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권조치사항을 삭제할 수 없음

## 58 보정명령으로 거주불명 등록 신청 및 직권조치 가능 여부

- 가정법원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와 관련하여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라."라는 보정명령이 직권조치 근거 공부에 해당하는지

### 회신

- 보정명령서는 소송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원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보충하거나 고치는 행위) 할 것을 명하는 것임
- 위 사례의 보정명령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제7호의 직권조치 근거 공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기 어려우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제3호(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후 거주불명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 보정명령과 이해관계 서류는 별개의 개념임

# 제 3 절

# 재외국민 주민등록

## 59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의 재등록 방법은?

**회신**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에는 거주할 주민센터 방문 후 재등록 신고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해외이주신고의 확인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해당 서류 제출이 필요(시행 '20.10.6.)
-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었던 번호 재등록

## 60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은?

**회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므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는 대상이 아님
- 다만, 우리나라 국적도 상실하지 않고 외국국적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재외국민이 아닌 거주자로 등록해야 함

## 61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처리 방법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외국인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 등록 등 주민등록표를 정리

## 62 국적상실 말소된 자의 주민등록 처리 방법

- 주민등록에 국적상실말소 된 자가 있는데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상 전혀 국적상실말소 된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음.
- 해당자는 89년 10월 20일생이고 미국에서 출생 했는데 조부가 국내에 출생으로 출생신고한 상태이며, 92년 1월 4일에 국적상실말소로 정리되어 있음
-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바 국적상실말소기록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주민등록 처리방법은?

### 회신

- 법무부에서 국적상실 기록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 말소상태가 아니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일 것이므로 관련공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하여 주민등록상 국적상실 말소기록을 삭제하여 주민등록자로 직권정정하여야 할 것임

## 63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방법 및 주민등록 완료 후 출국할 경우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 회신

- 복수국적자는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있음
- 이때 거주할 곳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할 수 있음
- 주민등록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생성, 해당 시·군·구청에서 한국여권을 발급신청할 수 있음
- 만약 주민등록 후 출국하여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으나 해외에 체류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직권으로 재등록 가능

## 64 일제경신(1975년 8월) 이전 해외출국자의 주민등록

### 회신

- 일제경신 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번호부여를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증 또한 발급이 안된 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신고한 때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65 국적 취득자의 주민등록 방법

- 1988년생으로 미국에서 출생,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성인이 되어 2010년에 한국국적 상실 (동시에 기본증명서 폐쇄 : 국적상실)
- 이번에 한국에 머물게 되어 출입국사무소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다시 한국국적 취득 (동시에 기본증명서 등록 : 국적취득).
- 생년월일은 변동이 없는 바,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재등록하여 사용 가능여부?

**회신**

- 현 주민등록제도상 국적(재)취득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하고 생년월일에 변동이 없다면 예전 사용하였던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등록할 수 있음

## 66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출국신고 위임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또는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의 출국신고 위임 가능 여부

**회신**

- 본인 의사는 확인되어야 하므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자가 재외국민 출국신고(가족이 아니어도 가능) 가능
- 위임받은 자가 신고한 날부터 재외국민 출국자로 관리됨

## 67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와 위임할 수 있는 자

**회신**

- 신고의무자는 재외국민 본인임
-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신고하거나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할 수 있음(법 제11조제2항)
-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출입국 사실증명 자료 확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

## 68 재일동포의 재외국민 주민등록 방법

**회신**

- 한국 국적자인 재일동포는 '특별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입국하여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등록 가능
- 절차는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일본 정부에 제출하여 한국 국민임을 증명 → 이를 근거로 일본 외국인등록부의 '국적'란을 '조선적(무국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한 후 여권 신청 → 가족관계 등록 이후에 복수여권 발급 → 입국하여 해외이주확인서 사본('17.12.21.)을 제출하여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 69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전입신고시 출입국사실증명 확인 필요 여부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A)의 어머니 B가 A의 전입신고를 위임받아 신고시에도 출입국사실증명 확인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0조의2는 신고사항(성명, 주소 등)을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경우 재외국민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외국민 '신고'는 전입신고·재등록신고를 포함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재외국민을 전입신고하는 자는 재외국민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의 입국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70 재외국민 영주귀국 재등록

- 2008년 5월9일 국외이주신고자 출국자 명단 통보에 의해 현지이주 말소된 민원인이 거주여권 없이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반납하고 외교통상부에 영주귀국확인서 요청하였으나 거주여권이 없어 영주귀국확인서 발급 불가
- 영주귀국확인서 없이 내국인으로 재등록하는 방법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는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거주자 주민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주여권이 없어 영주귀국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영주권 반납했다는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공증받아 제출시 이를 근거로 재등록 가능

## 71 등록기준지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등재 미수리 시 처리방법

-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한 A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과 거주여권을 확인 후 신원조회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시스템에 신규등록 후 등록기준지에 통보하였으나,
-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는 A의 父가 '75년 국적상실(2015년 신고)된 이후 '86년에 A가 출생하였으니, 당시 국적법에 따라 A도 외국인이었으므로 '87년 출생신고 수리와 현재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로 폐쇄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A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없다고 회신

**회신**

- 현 가족관계등록부와 거주여권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삭제는 불필요
- 추후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 72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 국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에 일반여권으로 출국(여행)했다가 재외국민 출국자로 처리된 경우

**회신**

- 출입국 기록 확인 또는 거주여권* 발급일자 등을 확인 후,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을 근거로 하여 거주자로 직권정정처리

  * 이후 거주여권으로 출국이 확인되면 재외국민 출국자로 처리함(단, 거주여권제도는 '17.12.17. 폐지)

## 73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를 거주자로 직권 정정

- 일반여권(PM)를 발급받은 자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증빙자료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함
- 이후 거주여권이 없음을 이유로 거주자로 변경을 원함

### 회신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거주자로 변경시 영주귀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일반여권 발급자는 외교부에서 영주귀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 또한, 일반여권(PM) 발급받은 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여권 등을 근거자료로 내부결재를 득한 후 거주자로 직권 정정

# 제 4 절

# 재 등 록

# 1 재등록 신고자 처리방법

## 74 전산화 이전 말소된 자의 재등록 방법

**회신**

- 전산화 이전에 말소되어 전산 상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등록으로 처리하여야 함
- 본인여부 확인은 등록기준지에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며,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청에 십지지문 조회를 의뢰할 수 있음
- 대상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수기작성 주민등록표를 찾아 과거주소이력 등을 입력하여 재등록 처리

## 75 거동불편자의 재등록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와 제23조(전입신고)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재등록 신고해야 함
- 다만,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재등록 신고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 76 현지이주말소자의 재등록 방법

**회신**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15.1.22. 시행됨에 따라 해외이주확인서 사본('17.12.21. 해외이주법 제4조 개정 이전에는 거주여권 사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가능하였으나, 민원인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재외국민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해짐(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신설, 시행일 '20.10.13.),
  ※기 발급된 거주여권(PR)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외이주사실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도 해외이주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확인되지 않는 거주여권 소지자의 경우 외교부 업무 협조 요청사항 공문*(영사서비스과-59756('20.10.16.)) 참고

  * 유효기간이 만료된 거주여권 소지자 또는 거주여권 만료 후 일반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현지이주자에 해당하므로, 외교부(영사서비스과)에 "거주여권발급 사실여부 조회"를 협조 공문으로 요청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 후 재외국민 또는 거주자로 주민등록 업무 처리

## 77 의식불명자나 심신박약자의 재등록

### 회신

- 주민등록이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말소된 자는 재등록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함
- 다만, 행정관청이 의식불명자나 심신박약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재등록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다면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등이 재등록 신고를 하도록 안내

## 78 재등록 신고 제3자 위임 가능 여부

### 회신

- 말소 또는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역시 주민등록의 하나로 본인이 하거나 본인의 위임을 통해 가능
- 다만, 주민의 등록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위임을 통한 재등록은 불가

  ※ 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p.61) 수정 예정

## 79 말소·거주불명 등록자가 수감중 대리인을 지정 재등록신고 가능 여부

### 회신

- 기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수감중 대리인을 지정(서면 위임)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감자 본인이 과태료 부과대상임

- 그러나 수감 중인 것을 모르고 착오로 말소·거주불명 등록 하였다면 그 말소·거주불명 등록 조치가 잘못된 행위이므로 서면위임 없이 수감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직권 재등록'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됨

## 80 거주불명 등록된 해외 취업자 등(해외파견근무, 유학)의 재등록 절차

- 사업상 또는 해외취업차(해외파견근무, 유학) 출국하였다가 귀국해보니 무단전출로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었음. 재등록 방법은?

**회신**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주소지에서 행방을 몰라 거주불명 등록된 것으로 보이며 해외취업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재등록(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하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 81 국외이주자가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주민등록 신고 방법

- 미국에 국외이주 하였다가 국내에 귀국하여 영주 귀국하고자 하나 이민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

**회신**

- 우선 인근 경찰관서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인근 경찰관서로부터 분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영주국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받은 다음, 외교부 여권과에 여권분실신고서와 영주권반납확인서를 제출하면 여권실효확인서(여권실효확인신청서에 확인)를 발급해 줌
- 해당 여권실효확인서를 첨부하여 국외이주 전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었던 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재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이 안 되었던 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영주귀국으로 인한 신규등록 신고

## 82 신고 재등록 후 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가능 여부

- 2010년 11월 – 세대전부 거주불명 등록 됨
- 2010년 12월 – 세대주가 신고하여 재등록, 과태료 납부
- 2012년 06월 – 이들에 대한 이민출국자명단 통보가 옴
- 세대원들이 2010년 11월 거주불명 등록 전에 이미 외국에 출국해 있었다면, 세대주가 재등록신고 시에 직권재등록 등을 잘 몰라서 그랬다며, 지금 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등 요구가 가능한지?

### 회신

- 현재까지는 편람이나 유권해석에서 단순 해외체류자의 처리를 수감자 등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체류 중 거주불명된 것이 확인되면 이미 신고 재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행정청의 착오로서 거주불명, 재등록 기록을 삭제할 수 있음

## 83 주민등록표 정리 방법

- 주민등록에는 '국외이주신고' 까지가 최종 이력
- 민원인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가지고 재등록 신고함
- 국외이주말소, 국적상실말소 등에 대한 기록이 모두 공부에 없는데 처리방법은? 2가지 말소기록을 다 남기고 재등록하는지?

### 회신

- 국적상실말소만 재등록과 동시에 이력 추가
- 말소원인일(=국적상실일)은 필요 시 법무부에 확인하여 처리

## 84 거주불명 등록 후, 수감된 자가 재등록 시 과태료 적용 방법

### 회신

- 과태료를 부과는 하되, 기간 산정을 할 때 수감기간은 제외하고 적용

## 85 일시 출국 당시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시 과태료 산정

- 말소 당시에 해외에 있었으나, 말소 전 최고·공고 기간에는 잠깐 입국한 기록이 있음
- 직권조치 이후에도 입국한 기록이 있었고 몇 년 지났음
- 이 경우 과태료 산정 방법? 직권 재등록대상인지 여부?

### 회신

- 직권조치일 기준이 아니고, 최고·공고기간이 기준일임
- 최고·공고 당시 해외체류중이었음을 입증하면 과태료 면제, 직권조치 이후에 입국했었다하더라도 과태료 면제, 직권 재등록 대상임
- 최고기간이 짧고, 공고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져 사실상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최고·공고 기간에 잠깐씩 입국했다하더라도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면제

## 86 거주불명 등록자의 직권 재등록 가능 여부

-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주가 해당 건물의 전입자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 요청하여 사실조사 후 거주불명 등록 조치함
- 거주불명 등록대상자는 전 건물주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으며, 전 건물주가 수도와 전기를 끊어버려 임시 거처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주장함
- 전 건물주와의 채권채무관계, 전세권 설정 및 대항력 등을 이유로 직권 재등록 가능한지?

### 회신

- 주민등록제도에서는 30일 이상 거주 목적만을 심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신고된 내용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권조치 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법 상 등록은 30일 이상 거주목적만을 심사하여 등록하고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법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음
- 그러므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건물주의 단수·단전 조치, 전세권 설정 및 대항력(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안내) 등은 거주불명 등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권재등록대상도 아님

## 87 거주불명 재등록 및 신규 주민증 발급

- A는 친생자부존재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및 주민등록 말소, B는 17세 이전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C가 모(母)로 기록
- 가족관계등록부상 B의 모(母)인 C가 A와 B가 동일인임을 주장하고, 신원조회 결과 B의 지문은 없는 상태이므로 직계혈족의 확인으로 신고에 의한 재등록이 가능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A와 B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인지?
- A와 B는 생년월일, 이름이 불일치하여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C의 주장만으로 A를 B로 재등록하는 것은 불가할 경우 기처리한 재등록은 직권말소처리 하여야 하는지?

### 회신

- A와 B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 법원 판결문 ② 유전자 검사 확인서 ③ 변호사의 공증 중 한가지로 확인할 수 있음
- 위의 절차를 통해 A와 B가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재등록이 가능할 것이나, 만약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 처리한 재등록은 무효 처리(질의56.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 방법' 참고)

# 제 5 절

# 주민등록표 정정·삭제

# 1 주민등록표 정정 처리방법

## 88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회신**

-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행정관청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이를 주민등록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지 행정관청은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함
  * 말소의 유예 근거는 없음
- 따라서, 법원의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 주민등록도 말소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신규로 창설한 이후 이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舊 가족관계등록부와 新 가족관계등록부의 대상자가 동일인임이 확인되고 새로운 가족부의 생년월일이 과거 기록과 동일하여 민원인이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말소된 주민등록 재사용 가능

## 89 거주지 이동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 방법

**회신**

- 주민등록제도 상 현거주지에서 거주지 이동 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인 정정신고서에 전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세대주 변경 처리
  ※ 정정 시 신고의무자인 세대주는 변경 전(前) 세대주를 의미하고, 세대원인 본인이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전(前) 세대주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정정신고서에 변경 전(前) 세대주와 변경 후(後) 세대주의 서명 또는 확인이 있으면 적법함

## 90 다가구 주택 내에서 다른 호수로 이사를 했을 경우 처리 방법

**회신**

- 다가구 단독주택 중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층과 호수 등은 기타주소로 기재할 수 있으나 공법상 주소는 아니므로,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동한 경우 전입신고가 아닌 정정신고로 정리
  ※ 다만,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법상 주소가 변경되므로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처리

## 91 건축물대장상의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회신**

- 우선 해당 세대별로 정정신고하도록 안내통지를 하고(별도 양식은 없고 공문으로 발송 가능)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 공고(이 경우 특정 주소에 대한 정정이므로 대상자를 '홍길동 외 000세대'라고 표기하여도 가능)한 후 직권으로 정정 및 통보
- 각각 정정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량이 많은 특별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가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일괄 정정신고 할 수 있음
- 다만, 동의서에는 입주민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92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회신**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7조의4)

## 93 과거지번 정정

- 민원인은 1년전에 OO리 20번지 A타운 101동 101호 전입신고를 하였음
- A타운은 OO리 20번지, 18-2번지 등 여러 개의 지번으로 되어 있으나 A타운은 모두 ##2길 16-8로 매칭이 되어있음
- 민원인은 임대차계약서에는 OO리 18-2번지 A타운 101동 101호로 되어 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지(주소)가 일치하여야 한다며 실제지번정정 OO리 18-2번지로 정정해 줄 것으로 요구함

**회신**

- 주민이 과거지번의 정정을 요구하더라도 주민등록 신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소급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법원판결이나 행정상 착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에 맞는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었다면 과거지번의 소급정정은 불가하고, 과거지번과 도로명주소와의 연계는 도로명주소대장으로 확인하도록 안내

## 94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주소 소급정정 가능 여부

**회신**

- 현 주민등록제도에서 주민이 과거지번의 정정을 요구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소급정정은 불가
- 다만, 법원판결에 의한 경우 또는 행정기관 착오에 의해 전입신고서와 다르게 전산입력 하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정정 가능
- 전입신고서에 잘못된 지번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전입신고서의 내용대로 전입처리를 하게 되므로, 과거의 주소를 소급 정정할 수 없음

## 95 초본 실제지번정정 이력의 의미와 소급적용 범위

- 초본상 2006.00.00. -- 실제지번정정으로 이력이 나오는데, 이 의미와 적용범위가 지번정정한 2006년이 아닌 당초 전입일(1968년)부터 실제지번(B번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봐도 되는지?

**회신**

- 주민등록표 초본상에 2006.00.00. -- 실제지번정정의 의미는 2006.00.00.에 민원인이 법 제13조에 의한 정정신고를 통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주소에 맞게 정정하였음을 의미함
- '실제 지번 정정'의 효력은 정정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

## 96 주민등록표 정정일자 표시

- 개인별 주민등록표, 구원장,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만 나와 있을 뿐, 변경일자가 나와있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변경일자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역만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 이력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우선 여러 주민등록 관련 입증자료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을 전산에 입력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정정일자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임의로 정정일자를 입력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공적장부(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를 추가로 확인 후 확인 불가라고 판단된다면 그 내용을 내부결재로 득한 후 정정일자 기재없이 전산입력
- 민원인이 정정일자에 대한 소명을 원한다면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처리과정을 설명하면서 일자 입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를 공문서로 답변

## 97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관련 공부 등 정리 방법

### 회신

-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관련공부는 주민등록 행정관서에서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변경토록 하고, 민간부분(금융권, 보험사 등)은 민원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직접 변경하여야 함

## 98 이혼한 자가 세대주와의 관계를 처로 하여 전입신고 시 직권정정 가능 여부

- 주민등록 정정신고 접수 처리 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래전 이혼(1995년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처로 전입신고(2000년~2010년)하여 처로 등재된 경우,
- 과거 여러차례 전입과정에서 이미 이혼을 했음에도 처로 신고하여 개인별주민등록표 열람을 하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처로 나오는 기간이 있는데, 과거 세대주와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직권정정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해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으로 이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정정신고를 하도록 최고(공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직권정리(소급정정)할 수 있음
- 참고로 직권정리할 때에는 자세한 사항을 내부결재로 득하고 대상자의 직권정리사항(개인메모사항)에 문서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정정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

## 99 부여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가능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번호는 부여대장에 근거가 있으나,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는 조립부나 부여대장에 근거는 없음
-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는 아닌 경우, 조립부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가능 여부

**회신**

-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6자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최초 부여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조립부나 부여대장에 이력·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민원인의 편익과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본인이 사용을 계속 희망하는 경우, 사용은 가능하며 내부결재를 맡은 후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본 사항에 대하여 통보해야 함(단, 오류 또는 중복된 번호가 아니어야 함)
- 통보를 받은 읍·면·동장은 주민등록표를 정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주민에게도 통보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안내

## 100 주민등록번호 다시 사용 가능 여부

-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함(주민등록상에는 1월 5일로 되어있고,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2월 5일로 되어있음)
-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새로 번호를 받고 주민등록증도 만들었으나, 사실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맞는 거라서 이번에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가족관계증명서의 생년월일을 1월 5일로 정정하였음
- 이럴 경우 예전의 1월 5일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회신**

- 주민등록제도상 생년월일이 변경되면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앞자리 변경)
- 다만, 법원의 허가로 변경된 생년월일이 처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고, 타인이 그 번호를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오류번호가 아니라고 관할 행정기관이 판단하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가능할 것임

## 101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요령

• 부산시 범일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현재 서울시 서초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어느 기관에서 정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에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를 하여야 하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호서식), 번호부여지 읍·면·동장은 이를 정정한 후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통보를 받은 읍·면·동장은 주민등록표를 정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주민에게도 통보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여야 함

## 102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부여근거가 없는 경우

•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위해 부여지에 조회하니 부여사실이 없다고 회신된 경우 처리 방법

**회신**

-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재된 번호부여 상황과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번호부여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이때 세대원의 번호부여 사실과도 비교하여야 함) 번호부여지에 번호부여사실을 규명토록 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부여근거가 없을 경우 현재 주민등록지에서 정정 조치해야 함

## 103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전 거주지의 주소정정 가능 여부

**회신**

- 현재 거주지 읍·면·동장이 전 거주지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착오기재나 무효인 행정행위임이 확인된 경우 정정가능하며, 거주사실 자체가 없고 신고자격도 없는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주소이력 삭제도 가능

## 104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력삭제 가능 여부

- 본인 동의없이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혼인무효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표 초본에 그 남자의 처로 되어 있던 주소이력의 삭제가 가능한지?

**회신**

- 혼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는 정리될 수 있겠지만, 주소이력사항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없고 전입신고자의 자격이나 신고절차의 적법성, 거주사실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입신고자격도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후에 관련 주소이력사항도 삭제처리 가능

## 105 오랫동안 사용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번호인 경우 처리 방법

**회신**

- 착오부여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먼저 본인에게 정정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부여지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을 현 주소지와 등록기준지에 통보하고, 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이 경우 수수료는 무료)하여야 함
- 또한 현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정정이전에 사용해 각종 등록관계(학적부, 건축물대장 등) 목록을 제출받아 해당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을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 그러나 등록관계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문서 통보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정내역이 표시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공용으로 발급하여 직접 관계기관에 정정신청 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변경된 주민등록사항은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주민등록 변경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나,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의 실명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신용정보회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유료로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그 동안 사용해 온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사실을 민간신용정보회사(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에 직접 제공해야 함을 안내

※ 주민등록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과 생년월일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성명의 정정(개명)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절차를 준용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함【착오가 아닌 의사에 따른 개명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처리(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 다만, 주민등록표 발급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부과

## 106 지번정정 시 정리 요령

- "지번에 관한 정정신고에 있어서는 지적관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등록기준지 지번착오에 대한 정정 시에도 지적관계 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 토지구획정리 종료확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번정정요령은?

### 회신

- 지번정정 시 현재 거주지의 지번을 정정할 시는 지번관계 증명을 첨부하나 등록기준지 지번정정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현재 거주지 지번정정 시 1번지로 있는 곳이 지적분필로 인하여 1번지의 2로 분필되었을 때에는 지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1번지가 10번지로 오기등록 되었다면 관할 통·리장 또는 인근 주민의 연대 확인 등 사실 확인을 하여 정정하되 지적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음
- 특히 첨부하였다 하여도 즉시 정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관내부 확인에 의하여서만 정정되는 것이며 첨부 서류는 참고자료에 불과 한 것임
- 기존지번을 확정된 신번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정리방법은 주민신고에 의한 정리방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을 위한 법적 근거규정 및 신번지 확정조서 등을 근거로 한 직권정정 방법이 가능하며, 다만 직권정정 시는 사전 및 사후에 주민에게 직권정정 사실을 통지하여 직권정정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함

※ 지번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이나 동·호수 등의 주소정정 시(현재 거주지)

(1) 민원인이 정정 신청한 경우 : 관계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지번정정 가능(소급정정 불가)

(2) 행정기관이 직권정정 시 : 당해 주민으로 하여금 지번정정하도록 최고·공고한 후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통보

## 107 주민등록표의 변동일자 및 세대구성사유 정정가능 여부

• 주민등록표상 변동일자가 혼인신고일보다 늦게 등재된 경우 정정이 가능?

**회신**

- 주민등록표상 변동일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날 또는 확인한 날로 등재되는 것으로 반드시 혼인일(사망일)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변동일자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정정 불가
- 다만, 행정기관의 착오 또는 불법으로 세대구성사유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할 것임

## 108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주소 정정 또는 추가기재 관련

•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소실 등으로 인하여 기간 중 주소가 누락 또는 착오 기재되었으므로 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주소정정을 요구할 경우 주소정정 또는 추가 기재해 줄 수 있는지

**회신**

- 주민이 과거지번의 정정을 요구하더라도 주민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의거 소급정정은 불가. 다만, 법원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근거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서나 색인부 등 관련공부를 근거로 소급정정이 가능
- 그러나, 민원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기록한 공부로서 이를 근거로 거주관계를 기록한 주민등록표의 주소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
- 다만, 민원인의 과거 거주여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당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을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 등에게 받아 동 자료의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

## 109 주민등록 공부상 오류, 착오 기재 등에 대한 정정 방법

•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 공부상 잘못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정정 방법은?

**회신**

- 주민등록법 제13조와 관련된 정정사항은 제10조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등의 신고사항을 신고의무자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 후 그 신고사항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신고의무자가 영 제20조에 따라 정정신고(영 제9호서식) 할 경우 읍·면·동장은 전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 등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신속히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관련 공부를 정정
- 다만,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작성하지 않은 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직권으로 즉시 정정 필요

## 110 이명동인(異名同人)의 주민등록 처리 절차

- A가 B와 동거를 하면서 행방불명된 B의 처 C씨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등록기준지를 달리하는 이명동인(異名同人)으로 살아왔음. A가 C의 주민등록을 A로 정정하여 달라고 하는데 처리방법은?

**회신**

- A와 C의 십지문 조회를 경찰청에 의뢰하여 A와 C이 동일인이 아님을 확인하거나(사망 등으로 확인 곤란할 경우), A가 C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 또한 A에 대하여는, C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고발조치

## 111 사실혼 관계의 양모를 '모'로 정정 가능여부

- 부친과 사실혼 관계인 양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대주의 관계를 '모'로 정정해 줄 수 있는지?

**회신**

- 가족의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기재됨
- 따라서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모'로 정정 불가

## 11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의한 말소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관련 질의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의해 말소된 최초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의 재사용 가능 여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1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된 가족관계등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부여절차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 주민등록번호는 1인당 1번호를 부여하므로 똑같은 번호가 있을 수 없고, 한 번 사용한 번호는 다른 사람이 다시 사용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만약 동일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수회 정정하여 최초의 주민등록번호부여 시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면 동일인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여 최초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13 가족관계등록이 이중으로 되어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 회신

- 동일인이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나로 정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도 정리하여야 함
- 다만, 고의나 거짓으로 주민등록증을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대상이 됨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도 정리하여야 하므로, 우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이 이중으로 발급되었다면 이를 모두 회수하여 조속히 정리
-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 주민등록(B)도 말소하고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 A와 B의 개인메모사항에 각각 동일인임을 기록하여 관리
- 추후 민원인이 동일인임을 증명 요청시 발급기관에서 주민등록초본(A)와 말소자초본(B)과 함께 A와 B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기안하여 민원인에게 교부(C)
- 민원인은 위의 3가지(A, B, C)를 제출하여 본인임을 증명

## 114 가족관계등록사항 변경 시 주민등록 정정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명(한자), 생년월일 등이 변경되었을 때 주민등록 정정 방법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성명,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갈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사항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함
- 가족관계등록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로부터 통보를 받아 정정하거나 정정신고서(영 제9호서식)를 접수받아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해야 함
- 정정되는 사항이 성별이나 생년월일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요구를 하여 그 통보에 의거 주민등록표를 정리한 후 17세 이상인 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을 등록기준지에 통보

## 115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에 의거 가족관계등록이 폐쇄된 경우 주민등록 사항의 처리

### 회신

- 가족관계등록이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에 의거 폐쇄된 자의 경우 당초 등록기준지 확인이 되어 주민등록이 되었던 자로 별도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창설이 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가족관계등록이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까지 주민등록을 말소

## 116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 도로명주소가 이미 고시된 곳인데, 공적장부상 지번과 도로명이 바뀌었을 경우 정정 방법

### 회신

- 공부상 주소가 바뀜을 안 것이 사실조사와 같음
- 원칙은 민원인이 신고하도록 최고(공고) 실시하고, 그래도 민원인이 정정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 직권조치사항 최고(공고)

## 117 사망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새로 부여 가능 여부

• 사망자의 가족부와 주민등록표에는 36년생인데, 실제로는 35년생이라고 정정을 원하는데, 법원을 통해서 가족부를 정정한다면 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새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 허가를 통해 가족부의 생년월일을 변경한다면 판결에 따라 정정된 가족부의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 새로 부여 가능

## 118 세대주를 변경 정정신고를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전입신고와는 달리, 세대주 변경은 하루에 여러번도 가능

## 119 새터민 주민등록번호 정정

• 2009년 1월 〈새터민 주민등록번호 정정 특례 업무처리 지침〉 관련 문의
① 새터민 아닌 해당 지역번호 보유자도 같은 차원에서 정정 가능한지?
② 새터민이면 '09년 당시에 하지 않았어도 지금도 정정 가능한지?

**회신**

● 해당 지침에 대상자가 7,749 명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 명단이 있을 것이고, 그 명단에 있는 자만 정정 가능

● 새터민은 1회 정정신고 가능하므로, 당시에 정정신고 하지 않았으면 1회는 언제든 가능
※ 대상자에 대한 문의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5~7

## 120 쌍둥이 형제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상에서 뒤바뀌어 사용된 경우

### 회신

- 2명 모두 새로운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B의 주민등록을 삭제해도 이미 타인에게 부여되었던 번호라 A에게 다시 줄 수 없으며, 본인확인 등 끝났다는 전제 하에, 정정이 꼭 필요하다면 2명 모두 새로운 번호 부여
- 다만, 현재까지 장기간 사용한 번호가 오류 또는 타인이 사용한 번호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에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음

## 121 주민등록표에 누락된 출생등록 일자 및 사유 기재 가능 여부

- 1988년 작성된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 란에 최초등록 일자와 사유가 누락되어 있으며,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에도 기록이 누락됨
- 제적등본 확인 결과 생년월일은 88.2.12.이고 출생신고일은 88.3.11.임.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번호부여일은 88.3.12.
- 주민등록표의 누락된 최초등록일자(변동일자)를 제적등본상의 출생신고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일자로 기재하고, 변동사유를 출생등록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 회신

- 주민등록표의 변동일(최초 작성일)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번호 부여일인 1988.3.12.로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
- 주민등록표 종이원장의 작성은 2005.8.1.부터 중단되었으므로 대상자의 전산 주민등록표에 변동일은 1988.3.12. 변동사유는 출생으로 입력 가능함

## 122 주민등록표상(구원장, 세대별, 개인별) 주소가 각각 다를 경우, 주소정정 관련

- 구 주민등록표(447-7번지)에 의거하여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주소(447번지)를 447-7번지로 직권 정정하여 등초본 전산자료에 기입할 수 있는지?

**회신**

-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기재 등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결문, 행정기관의 착오 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없음
- 다만, 민원인의 과거 여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당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 등에게 받아 동 자료의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

## 123 주민등록표 구원장을 근거로 개인별주민등록카드 정정 가능 여부

- A의 개인별주민등록표에 1968년 전입기록이 존재하나, A는 1968년에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본인의 구 원장 내용에 기재된 주소가 맞다고 주장
- A의 주민등록표 구원장 카드는 총 3개로 1975년 기록부터 존재

**회신**

-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기재 등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A의 구 원장에는 1975년 이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A의 진술만으로 주민등록 공부 정정은 불가
- 본인의 거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구 원장, 색인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과거 세대주를 중심으로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이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음

## 124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은 있으나 날짜가 확인 안 될 경우

- 김00은 생년월일 정정(69.2.19. → 69.2.15.)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재부여 받음
-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는 정정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정정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회신**

-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정정사항을 근거로 정정 이력을 직권으로 등록 가능
  - 현재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정정 날짜를 0000.00.00.로 입력시 출력된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정정일은 표기되지 않고 정정내역만 표기됨

## 125 사망자의 현 주민등록표 전산상의 실제 지번 정정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제8조(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주소와 다르게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더라도 소급정정은 불가
- 다만, ① 법원에서 소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경우 또는 ② 행정기관의 명백한 착오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소급정정 가능

## 126 사망자의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사망말소 내용을 직권으로 추가 기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제8조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항까지만 전산에 등록가능하며, 사망말소 내용을 직권으로 추가할 수 없음

## 127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날짜로의 전입일자 정정 가능 여부

- 도로명 주소 전환사업 시행 당시 정확하지 않는 지번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여러 세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였음
-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민원인이 전입세대 열람 결과 해당 도로명주소로 전입되어 있는 세대의 최초 전입일자를 기 지번에 전입한 날짜가 아닌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날짜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

**회신**

-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 변경 추진지침(행안부 주민과 -5400, 2011.7.26)에 따라 도로명 주소 매칭 전에 지번이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대상자가 지번정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고시자료와 새주소안내시스템 등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여 수작업 입력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음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한 거주지의 이동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므로 최초 전입일을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날짜로 정정할 수 없음

## 128 과거 다수의 새터민이 부여받았던 지역번호 보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 인천, 안성, 용인 등에서 출생한 내국인이 과거 다수의 새터민이 부여받았던 지역번호와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 중국 단체비자 거부 등 불편사항을 겪음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요구하고 있음

### 회신

- 불가
- 주민등록법 제7조의3에 따라 생년월일의 변경, 성별의 변경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으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법 제7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129 건축물대장 상 호수로의 주소 정정

- 임차인 A는 실제 문패 표시대로 계약서를 302호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302호로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건축물대장의 호 명칭대로 전입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함을 알고 건축물대장상 301호 면적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301호로 정정 요구

###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로 정하고 있음
- 도로명주소의 표기에 대해서는 각종 공부(건축물대장 등)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전입신고서 상의 302호가 실제로는 301호라면 정정 신고를 받아 처리해야하나(정정신고서 제출한 날부터 전입), 전입신고일은 소급하여 인정될 수 없음

## 130 다가구주택의 층 및 호수 기재

- 다가구주택의 동·층·호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시되도록하는 방법은?

**회신**

- '13.1.1.부터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건물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동·층·호수를 기재할 수 있음

## 131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구원장에서 현주민등록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오기하였을 때 처리방법

- A의 주민등록표(구원장)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과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
- 구 원장에서 현 주민등록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를 오기한 것으로 확인함
-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근거하여 직권정정할 수 있는지?

**회신**

- 구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구 주민등록표에서 현 주민등록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오기하여 전산상에만 잘못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면,
-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3호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로 정정사유에 해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최고·공고를 한 후, 직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전·후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확인되도록 하여 당사자가 정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함

## 132 직계비속이 당사자의 위임없이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 A는 단독 세대주로 '94년 무단전출직권말소 후, 가족과 연락두절된 상황에서 직계비속이 A의 주민등록번호를 당사자 위임없이 정정할 수 있는지?

**회신**

- A는 현재 무단전출직권 거주불명 등록자로 본인의 의사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실종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정리한 후 상속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

## 133 가족관계등록부와 성명 불일치자 정정 방법

- 공무원의 전산이기 착오로 주민등록상 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와 불일치하는 경우, 최종주소지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직권정정이 가능한지

### 회신

- 명백한 행정상 착오인 경우, 내부결재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성명으로 직권정정 가능
- 다만, 성명 정정에 대한 본인의사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나로 정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관서에서는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

## 134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정정 요구

- 망자 "갑"의 불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조카인 "을"이 상속을 위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가 있는지?
- 정정신고가 불가능하여 망자의 주민등록표상 주민번호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추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면 등록기준지 관서에서 통보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
-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추어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주민번호는 근거가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새로 부여해야 하는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함
- 부여대장에 이력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가능하며, 내부결재를 맡은 후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본 사항에 대하여 통보해야 함
  ※ 다만, 오류 또는 중복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야 함
- 비록 사망자일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르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를 재부여할 수 있을 것임

## 2 주민등록표 삭제

### 135 무단전출 직권말소 기록 삭제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법 상의 기록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신규 기록, 정정, 변경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토대로 각종 행정·법률관계에 활용되므로 최대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기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불법으로 인한 당연무효나 행정상 명백한 착오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삭제' 할 수 있으므로,
  -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최고·공고 절차 생략 등 직권조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명백히 행정상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법원의 판결 등)에 한하여 소급하여 삭제가 가능할 것임

### 136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 기재하려면?

**회신**

-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기재 등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행정기관의 착오로 주소기록사항이 누락되었음이 소명되는 자료(구 원장, 색인부 등)가 있다면 주민등록 전산에 추가로 입력할 수 있음

### 137 전입한 기록 삭제 가능 여부

- A가 B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밝혀졌다면 B의 주민등록 주소이력을 삭제해 줄 수 있는지?

**회신**

- 경찰에서 해당 사건내용이 명백히 확인되면 주소이력 삭제가 가능할 것임(사건처분 결과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민원인이 요청하면 가능)
- 아직 경찰수사는 하지 않았고 민원인이 전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단계라면 읍면동에서 경찰에 고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

## 138 인적사항 변경내역 삭제 가능 여부

- 민원인의 초본 인적사항 변경내역에 성별정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출생신고할 때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성별이 잘못 기재가 되었음
- 이러한 초본의 내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주소지 행정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계공부의 확인을 요청하여 직원의 명백한 착오 기재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역란의 내용 삭제 가능

## 139 타인의 호적을 도용한 주민등록자의 주민등록신고 처리 요령

- 민원인은 이00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서 사망신고 되지 아니한 이00의 사망한 전처 '김0민'의 호적으로 생활하여 왔음
- 자신의 호적 '김0막'은 신원불상 제3자 B에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B의 사망 후 '김0막'은 주민등록 사망말소 처리됨
- 민원인은 자신의 신분 '김0막'을 되찾고자 소송 중 '김0막'의 호적상 자녀와 친자관계 99.99%를 확인하는 유전자검사확인서와 '김0민'의 호적상 자녀가 민원인이 친모가 아님을 공증한 진술서로 '김0막'임을 확인받음

**회신**

- '김0민'은 사망신고를 받아 주민등록 사망말소 처리하고 민원인은 법원판결내용, 유전자 검사 확인서를 근거로 '김0막'으로 등록하여야 함
- 신원불상 B가 '김0막'으로 사칭하여 등록하였던 기록은 삭제하고, 민원인이 '김0민'으로 등록하였던 기록도 삭제하여야 함(내부결재시 삭제내용 출력하여 첨부)

- 민원인을 '김0막'으로 등록 처리하고 민원인이 '김0민' 사망 후 '김0민'으로 등록하였던 주소 이력 등은 '김0막'의 주민등록표 기록에 입력

## 140 타인 명의 도용시 주민등록 정리 방법

- 이00은 어렸을 적 부모를 잃어버리고 살아오다가 남편(김00)과 혼인과정에서 실종된 타인 정00의 명의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옴
- 이후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가족을 찾았고 정00에서 이00로 주민등록 정정을 요청함(남편 김00는 정00와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음)

### 회신

-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이00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00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근거로 신규로 주민등록함
- 정00 신분으로 신고하였던 주소이력 등 혼인신고 이후 내역은 이00의 주민등록표에 직권으로 이기하고, 정00의 이력은 직권으로 삭제함
- 정00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실종선고 여부 등을 확인 후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함

## 141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력삭제 가능 여부

- 본인의 동의없이 혼인신고 및 거짓으로 전입신고되었다며 전입이력 삭제 요청

### 회신

-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의 기록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면 세대주와의 관계는 정리될 수 있지만
- 주소이력사항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없으며, 전입신고자의 자격이나 신고절차의 적법성, 거주사실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입신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후에 관련 주소이력사항도 삭제 처리 가능함

## 142 무단전출 직권말소 사항 삭제

- 과거 무단전출 직권말소(2006년) 후 같은 주소지에 직권 재등록 처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민원인이 행정기관 착오라는 것을 주장
-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하여 무단전출직권말소 처분을 잘못된 처분으로 보아 삭제할 수 있는지?

### 회신

- 2006년 당시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 직권말소 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최고·공고를 한 후 무단전출 직권말소를 하였으며, 무단전출 직권말소 후에 통지·공고하였다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무단전출직권말소 기록을 삭제할 수 없음

## 143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요청

- A는 1969년에 일본에서 출생하였고, 한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그 당시 출생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다른 교포분들이 많으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됨에 따라 일본에서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데 가능한지?

### 회신

- 1969년 당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르면 시장 또는 읍·면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여야 함
  - 해외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 A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여 입국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출입국 사실조회 결과, 주민등록 기록 등을 근거로 내부결재를 받은 후,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수 있을 것임

# 제 6 절

# 사실조사 등 주민등록 일반

## ①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일반사항

###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일반사항

**□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 방법**

-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규정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구체적 사실의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위임 가능

**□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따른 회신 방법**

-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서류로 볼 수 있으며, 언제 누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었다는 내용의 문서로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

  * 제2조제1호가목 중 4) 기타민원

**□ 사실조사 시 검토해야 할 사항**

- 사실조사 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거주에 필요한 취사도구, 가재도구, 침구류 등의 존재여부와 전기나 수도의 사용여부, 우편물 수령여부, 이통장의 확인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

**□ 직권조치 보류가 가능한 경우**

- 거주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객관적 거주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소송 등의 분쟁 상황은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거주여부만으로 거주불명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함. 다만,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당사자를 거주불명 등록 할 경우 소송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판결문 포함)가 제출된다면 직권조치를 유보할 수도 있을 것

**□ 거주불명 등록자가 최고(공고) 기간 중에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 최고(공고)를 진행하는 중에 대상자가 실제 살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거주자임이 확인된다면 직권조치를 종료할 수 있음

## 2 사실조사 등 절차상 문의

### 144 최고·공고 기간

**회신**

- 최고·공고기간을 7일 이상 두되, 우편물 송달과 신고기간을 감안하여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최고장이 반송되었다면 신고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공고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음

### 145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시 최고와 공고의 차이

- 신고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나 최고할 수 없을 때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가 매일 문이 잠겨 있어 무단전출자로 간주하여 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 등록 조치를 하였으나, 당해 아파트의 세대주가 매일 08시에 출근하여 20시에 귀가하며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 절차가 정당하게 처리 되었는지?

**회신**

-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 읍·면·동장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호서식)을 우송 또는 전달
-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거절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최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공고만으로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임

  ※ 사실조사결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최고는 하여야 함

### 146 최고장을 해당자가 신고기간 이후에 수령하였다면 조치 방법

**회신**

- 최고장은 해당자에게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고장이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자에게 도달되었다면 신고기간을 다시 정하여 최고장을 송달하는 것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주민등록법 취지에 부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5항 :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1항 :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147 사실조사 수시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제도상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대하여 행정관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실조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도 있음

## 148 최고장을 반송불요로 보낸 경우 처리 방법

**회신**

- 최고장을 반송불요 등기우편으로 보내 반송이 확인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내부 결재를 득한 후 공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

## 149 세대주가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신**

- 사실조사 거부, 비협조 등으로 거주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를 실시
- 또한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

## 150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를 했는데 대상자 외의 자가 받은 경우(세대원이지만 가족은 아닌 동거인이 받은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최고장의 도달여부는 동거하는 친족,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도 동일 주소 세대원이 받았다면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151 거주불명 등록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 한 바, 이미 건물을 철거하여 공사 진행 중인 곳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럴 때에도 최고를 해야 하는지?

**회신**

- 최고절차 생략 가능. 사람이 살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최고를 생략하고 공고를 실시
- 현장 사진 촬영 및 지적도 첨부 등 해당 관련사항에 대한 내부결재 공문을 통해 근거를 남겨두고 공고 실시

## 152 다른 세대의 부모가 사실조사서에 확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불가. 사실조사에는 위임이 없음. 이 경우는 주변이웃과 마찬가지로 사실조사의 참고인만 될 수 있음
- 사실조사서에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받으면 되고, 참고인에게는 도장도 받지 않음. 진술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 처리

## 153 주민등록 사실조사

- 현재 주소지는 다가구주택으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 사실조사 시 본인 확인은 불가하였으나, 거주자(세대주②)가 세대주①의 거주사실을 진술한다면 거주불명 등록이 불가한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주소지에 세대주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함에도 동일 주소지의 타 거주자의 거주 사실에 대한 진술이 있는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보여 진다면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생계와 숙식여부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으며,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후 거주불명 등록을 해야함

## 154 사실조사 의뢰 가능 여부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통·이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통·이장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사실조사 의뢰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 및 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사실조사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해서는 매년 지침 등을 시달하여 실시함
  ※ (1차 조사) 통·이장의 전수조사, (2차 조사) 관계 공무원의 확인
- 통·이장이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위반사항임

## 155 거주불명 등록 신고 대상자

- 주민등록표 등본 상 거주지에 모친이 거주하지 않음이 확실함을 주장하는 상태로 자녀가 모친의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 거주불명 등록은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법 제8조)과 직권거주불명 등록(법 제20조)이 있으며, 신고 거주불명 등록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자녀가 모친이 속해있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모친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음

## 156 비거주 인정자에 대한 최고장 발송 생략 가능 여부

- 건물 소유주가 거주불명 등록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재산권 행사 및 금전적 손해가 발생되므로 최고를 생략하고 바로 공고하여 거주불명 등록 처리해 줄 것을 요구
- 전화 통화나 SMS 문자 전송도 최고 절차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거주를 인정하였더라도 최고 절차는 생략하여서는 안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은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최고할 수 있다."가 아닌 "최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고장 발송 또는 전달은 필수절차이며 휴대전화 문자전송 만으로 최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157 반장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편성 시 위법 여부

### 회신

-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주민과–6720, 2015.12.30.)까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합동조사반 조사자로 반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에 포함되었으나,
  –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계획(주민과–3627, 2016.7.21.)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편성 시, 공무원 및 통·리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반장은 편성대상이 아님
- 다만,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으므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이·반장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

## 158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의뢰 시 입증서류

• 제3자(신용정보회사)의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의뢰시 입증서류로 제3자(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발급번호 없음)가 가능한지?

**회신**

-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이해관계서류(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와의 관계 입증)와 임의 작성된 요청서(법정서식 없음)를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접수되는 진정민원의 하나임
-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이해관계서류인 계약서 등과 요청서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은 초본 발급의 필요성을 밝히는 소명자료이자 교부신청서이므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시 제출하는 이해관계서류가 아님

# 3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 159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 불일치 사유

**회신**

-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75), 호적 횡서화('80년대)·한글화('90년대)과정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관서의 공부이기 과정에서 공무원의 이기착오 등으로 불일치가 발생하여 2008년에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불일치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현재 관련공부의 보관기간 경과로 대부분 소멸되어 특정 대상자의 불일치 원인규명이 불가
- 다만,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등의 확인을 통해 가족관계관서에 생년월일이 등록되었을 것이므로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라야 할 것임

## 160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

**회신**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과 조립부에 이상이 없는지, 착오기재는 아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주민등록법상 올바르게 부여된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
  - 단, 민원인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등록번호에 맞추어 주민등록표 상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지 읍 · 면 · 동에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조립부 · 부여대장 등을 정정받아 주민등록표를 정정하고 관계기관(등록기준지)에 통보 및 가족부에 기재 요청 후 각종 공부 등을 정정 가능
  - 민원인이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아서 정정 가능할 것임

# 4 구 주민등록표

## 161 62~68년 주민등록표 확인

- 돌아가신 아버님 소유의 부동산 상속에 따른 상속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 전 주민등록표 발급 확인 방법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돌아가신 아버님 소유)와 실제 상속인 확인을 위하여 법원에서 주민등록표를 요구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산화 이전 자료를 확인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함
-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를 확인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주민등록법 상 1962.6.25.~1968.9.15. 구(舊) 주민등록표는 이중등록이 가능했고 당시 법률에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일부자료만 보존되어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서신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답변으로 구(舊)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공문서를 회신받을 수 있을 것임

## 162 62~68년 주민등록표 증명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한 후 1968년 1차 개정하기 전까지 관리하던 주민등록표는 당시 법률에 보존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현재 일부만 보존되어 있음
- 따라서, 최초 주민등록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결정 시 이를 복사해 주는 것은 가능하나 증명·발급은 불가
- 만약, 최초 주민등록표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유 등을 기재한 서신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할 수는 있음

## 163 68~79년 주민등록표를 보관하고 있는 곳

**회신**

- 1979년 6월 30일 기준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관

## 164 62~68년 작성한 구 주민등록표 관련

- 부친의 500평되는 논을 본인 명의로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주민등록부에 1964년에 경기도 A군 B면 C리 123번지 거주하였던 기록이 있어야 함
- 초본을 확인해도 68년 서울 제기동에 사셨던 것까지는 확인이 되나 이전 기록이 없는 관계로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64년 주소이력 확인 방법은?

**회신**

- 주민등록법은 1962년 제정되어 1962.6.25~1968.9.15까지는 최초의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나, 보존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 폐기되고, 극히 일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보관중이므로 부친의 1968년 최종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확인 필요

# 5 세대구성

## 165 동일 번지 내 별도 세대구성 및 세대분가 가능 여부

- 하나의 세대 안에서, 세대원 일부가 동일 번지 내 별도로 세대구성 가능여부
-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이 동일 번지 내에서 별도 세대구성 가능 여부

### 회신

- 원칙적으로 동일 번지 내에서 동일 세대원 일부에 대한 세대구성 및 분가는 불가하나,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의 판단 하에 별도로 세대구성이 가능할 것임
  * 예) 다가구주택 등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
- '동거인'과 같이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와 동일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회사 기숙사, 방별임대 등의 형태)
  – 단,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 건물 소유주 및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가에 대한 소유주 및 임대인의 동의 ·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이 경우 정정신고서(영 별지 제9호서식)로 처리

## 166 동일 세대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 별도 세대구성

- 부모가 장남(자녀)의 주소지에 전입하면서 별도 세대유지가 가능한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여기서 주민등록법 상의 '세대'란 사회통념 상 동일 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음(「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
- 동일한 주소지의 동일주택에서 부모–장남 등 민법 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사회통념 상 하나의 세대를 이루어 함께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어 하나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될 수 밖에 없으므로, 별도의 세대가 아닌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함
  ※ 만 30세 이상, 혼인 및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여부 등에 따른 세대 요건은 주로 세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상의 기준이며, 주민등록법의 '세대'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167 동일 세대원 중 해외출국자와의 세대분리 가능 여부

**회신**

-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 또는 관할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10조의3, 2016.12.2. 개정, 2017.12.3. 시행)
- 이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경우 특정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세대분리가 아닌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는 신고가 필요
- 또한, 이주를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한 자는 국외이주 신고 및 재외국민 출국자로 처리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므로 세대분리 불필요(법 제19조)

## 168 합숙사 거주자의 단독세대 구성 여부

- 합숙사 거주자인 동거인이 본인이 희망하면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회신**

- 현행 주민등록법 상 세대를 단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세대주에게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합숙하는 곳의 주민등록신고의무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관리자가 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주민등록제도 상의 "세대주" 개념은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인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작성의 편익, 즉 주민등록신고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를 세대주로 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고 법률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합숙사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단독 세대주로 구성할 수 있음

## 169 동일 번지 내 세대분가

- 동일 번지에서 부모와 자녀가 세대분가를 하려고 하는데 정정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전입신고로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정정신고서)은 동 서식 유의사항 제4호에도 정정할 사항의 예로 '동일 거주지 내 세대 분가'를 밝히고 있으므로, 본 민원에서와 같이 거주지의 이동이 없이 동일 번지 내에서 세대를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신고서에 따른 세대분가로 처리

## 170 동일 아파트 호수 내에 두세대 구성 가능 여부

- 민원인 A의 동일 아파트 호수내에 민원인 B(가족관계 아님)가 별도 세대구성을 원함
- 부엌, 출입문 등을 같이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세대 구성이 가능한지?

**회신**

-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함에 있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가족'란에 기록하고, 그 외의 경우는 '동거인'란에 기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 가족의 범위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
-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특성상, 별도의 물리적인 거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어 세대 분가가 어려울 수 있으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동거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거주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도의 세대 구성이 가능할 것임
  ※ 동거인은 세대주와 주거가 동일할 뿐, 생계공동체로서의 유대가 약하다는 사회·문화적 인식 반영
  - 단,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자가 건물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정신고(세대분가)해야 함
    * 동의서에 대한 법정 서식은 없고 관계인(소유주,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날인(서명 또는 인), 동의 내용, 동의일 등이 기재된 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며, (무상)임대차 계약서 등의 형식으로도 대체 가능

## 171 세대주의 전출 또는 사망의 경우 세대주가 말소·거주불명 등록 되었을 때와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세대주 선정방법은?

**회신**

- 세대주는 그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서 세대주 선정에 대한 의사표시(세대주 변경에 따른 신고)에 따라 선정함이 타당함
- 그러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세대원 란의 기재순서에 따라 세대주를 선정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
  ※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사망, 실종,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유와 세대주를 제외한 일부전입으로 인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대주의 확인(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하며 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

**세대주 변경 신고서식 및 전세대주 확인사항**

① 거주지 이전 후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전입신고서의 전세대주 또는 본인 란에 전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

② 거주지 이전 없이 현재 거주지에서 변동사항 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정정(말소)신고서에 전세대주 성명 란에 전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

③ 전 거주지에서 세대주 전출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전입신고서의 전출지란의 남은 세대의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란 기재내용을 근거로 세대주변경 신고로 갈음

④ 세대주가 사망·실종·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유발생으로 변경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말소)신고서의 신고인 란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대주 선정 후 최고·공고

## 6 기타사항

### 172 주민등록 대상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거주의사는 없으나 학업·업무·출장·관광·교육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자의 주민등록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 거주의사 없이 학업·출장·관광·교육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거소를 정하고 있는 자는 생활의 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별도 주민등록 처리하지 않아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

### 173 성씨의 한글표기

- 사단법인 ○○이씨 대동 종약원에서 ○○이씨의 주민등록표상 한글표기를 "리"씨로 표기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리"씨로 표기해도 되는지?

**회신**

- 주민등록상의 성명 한글표기는 법 제14조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된 대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의 한글 표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되 한글표기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호(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2007.12.10.)에 의거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주민등록표나 주민등록증에도 "이"씨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판결을 통해 두음법칙을 적용받지 않는 원음표기를 인정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면 주민등록표의 이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정정하게 됨
-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표기와 관련된 사항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02-3480-1772)로 문의

## 174 각종 신고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열람 또는 복사 가능 여부

### 회신

- 신청서(신고서)는 열람 및 교부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고발 등 법적분쟁 등으로 민원인이 열람 또는 복사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읍·면·동장 또는 시·군·구청장 판단 하에 공개여부 결정 필요

## 175 가족관계등록이 없는 자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 58세의 여자로 지금까지 가족관계등록도 없고 주민등록도 한 사실이 없음. 어떻게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 주민등록은 가족관계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법 제6조에 의하여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지의 읍·면·동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절차는 신고의무자가 "주민등록신고서"(영 제10호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됨
- 그러나 주민등록신고를 하였어도 가족관계등록창설(이하 등록창설)이 되어야만 주민등록번호부여와 주민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하며, 등록창설절차는 주민등록신고를 한 후 읍·면·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2부(사무편람 별지 제4호서식)와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창설절차에 따라 법원에 허가 신청하여야 함
- 등록창설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창설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도 발급 가능

## 176 주민등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열람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법 상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주민등록 자료도 아니므로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해서는 제공할 수 없음
- 이는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유기관의 장이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177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한 기준은?

**회신**

- 주민등록법령상 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민법」 제4조에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보고 있음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봄(「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 178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회신**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가능
- 2인 이상이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등의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에 착오 부여된 자에게 착오 부여된 사실을 알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 행정기관의 착오로 동일인이 2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에 올바르게 부여된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오류번호 및 타인이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라면 민원인이 장기간 현재까지 사용해온 번호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서는 부여흔적이 있으나 번호부여대장상에 없더라도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타인이 사용한 흔적이 없다면 부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179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민원 신고의무기간 만료일인 경우 기간계산 방법

**회신**

- 「민법」 제161조에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고 의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신고를 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그 익일까지 신고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180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회신**

-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세대명부는 전입신고를 한 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 가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181 전산 미입력자 주민등록표 정리 방법

- 70년대 중반에 국외이주하여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없고, 형제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도 확인 안됨
- 호적에 13자리 주민등록번호는 있으며, 국적상실말소되었다가 최근 국적회복하여 재등록 원하는데, 전산에 등록 시 어디부터 입력할지?

**회신**

-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번호부여지를 확인하여 출생부터 신규등록
  ① 번호부여지에서 출생등록 이력 : 전입일-호적에 있는 출생일자/변동일-신고로 주민등록한 날 → 오늘
  ② 국적상실말소 이력 : 법무부에 확인하여, 전입일-국적상실일/변동일-말소한 날 → 오늘
  ③ 국적회복 재등록 이력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전입일-국적회복일/변동일-재등록일 → 오늘

## 182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가능 여부

• 출생신고가 반려되어 주민등록을 삭제할 경우, 조립부와 부여대장 처리방법은?
• 다시 출생신고 했을 때 생년월일과 주소가 같다면 삭제한 번호 재사용 가능한지?

**회신**

- 조립부와 부여대장에는 수기로 삭선
  – '출생신고 반려사유로 삭제하였다~' 등 기록 남기면 됨
- 다시 출생신고해서 생년월일이 같아도 새로운 번호로 재부여 하는 게 원칙임.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민원편의 차원에서 삭제된 번호를 사용토록 할 수 있을 것임

## 183 무호적자 사망말소 방법

• 주민등록은 되어있는데, 호적이 없음
• 과거 주민등록기록에도 무호적자로만 되어있음.
• 현재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하였는데, 말소 방법은?

**회신**

- 호적이 없는 자라면 원래 주민등록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호적처리나 상속 등에서 기록 삭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직권사망말소는 하되, 기록삭제는 하지 않음
- 나중에라도 어떻게 이 건이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읍·면·동장의 내부결재를 받아두고, 그 문서번호를 대상자 주민등록표 개인 메모사항 등에 기재해 둘 것
-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원인무효의 사항이긴 하나,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으므로 사망진단서라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받아 직권말소

## 184 주민등록 업무용 책자 공개 가능 여부

•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사무편람 및 질의회신 사례집의 공개가 가능한지?

**회신**

- 정보공개 청구 시 제공 가능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무편람' 및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령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못하는 사항과 각종 주민등록법령 해설 및 안내사항 등을 담고 있어 가급적 업무의 참고 용도로만 활용함이 바람직

## 185 주민등록 신고(신청) 서식에 자필 서명 근거

- 주민등록 신고, 신청 시에 받는 〈서명 또는 날인〉에서 서명을 자필성명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필적감정이라면 싸인도 안 될 이유가 없고, 본인확인도 이미 한 이후에 하는 것인데. 민원인이 늘 하던 싸인을 그대로 하고자 하여 민원이 종종 발생
  ※ 시행규칙 별표 비고 2호에 '자필 한글 성명' 으로 서명하라고 되어있음

### 회신

-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를 기반으로 해석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 같다.
- 신분확인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그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흘려쓰거나 하여 식별하기 어려운 통상의 싸인으로는 누구의 성명인지 알아볼 수 없음

## 186 최고기간도 공고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 회신

- 주민등록법령 상 법률행위인 최고·공고 기간에 대한 계산은 민법을 따름(「민법」 제155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상 처리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법 최고·공고 기간 산정과 입법 취지 및 적용대상이 상이하므로 이를 준용해야 하는 근거가 아님
-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 산정 시 초일은 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최고·공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만료
- 최고·공고 기간의 중간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건이 없으므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 이상의 기간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최고·공고의 경우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 적법한 처리에 해당

## 187 실거주 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 OO철도시설공단에서 주거이전 대상 주민에 대해 손실보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실거주 여부 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함
- 동 주민센터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 통보해야 하는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전입신고 사후확인과 사실조사 기간 등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철도시설공단의 주거이전 대상 주민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조회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반드시 이행할 법적근거는 없으며,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을 통해 해당 주민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188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실제 거주사실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회신**

-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때 법령상 거주증명서 등의 별도 서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여부에 대하여 확인 · 증명 및 통보할 근거도 없음
  - 다만,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작성 · 기록된 세대별 ·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거주 중임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임

## 189 부재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며 부재사실확인서를 요청해 온 경우 발급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상의 주소지로 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명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증명함. 따라서 부재사실확인서 등 주민등록 법령에 근거가 없는 증명서류는 발급 불가

## 190 세대 수를 전화로 안내가능 여부

•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통보 관련, 어떤 주소의 세대 수를 전화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회신**

● 불가. 담당자가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 하고,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담당자가 왜 열람을 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같은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 191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구청에서 발행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므로 신분 확인은 가능하겠으나, 담당자가 미비점 발견 시 가족 확인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음

## 192 화상자료 제공 방법

• 경찰서에서 화상자료 요청 시 암호화된 전자문서로 제공함이 원칙이나, 경찰관의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해가도 되는지?

**회신**

●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이 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암호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 경찰관이 요청하는 대로 촬영해간다면 정보 제공의 흔적이 남지 않음

## 193 해외에서 출생하고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아동의 착오부여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법

• 해외에서 출생하고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아동의 착오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직권 삭제 하여야 하는지?

**회신**

- 주민등록법 제6조는 주민등록 대상자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에서 출생한 한국국적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국내 입국사실이 없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것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되, 기록 자체는 유지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입국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할 때, 본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에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재등록하여 사용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있음

## 19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중 공법상의 행위의 범위

- 법원판결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중 공법상의 행위의 '주민등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회신**

- 법원은 「민법」 제12조에 따라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고 한정후견인을 지정함
- 이에 따라, 지정된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원판결에 의해 정해지고 주민등록에 대한 범위는 주민등록법에 기재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 195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 등 불일치자 정리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주민등록상 사망신고 말소처리 가능 여부?

**회신**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A와 주민등록상 B를 동일인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없음
- 다만, 법원판결을 통해 A와 B가 동일인임이 입증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신고 후 주민등록상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음

## 196 타인의 신분증으로 살아온 자의 주민등록 정리 방법

- 민원인 A는 형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살아왔지만, 현재 형 B도 사망처리가 되었고, 실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주민등록 공부 정리를 요청하고 있음
- 민원인 A의 실제 본인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민원인 A가 본인임이 확인된 후 주민등록 공부를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 회신

- A(동생)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A가 본인이라는 내용의 공증, 유전자 검사, 판결문 등으로 확인 후 A가 주민등록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지문 정정 등)
- 다만, B(형)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이 A의 실제기록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 판결, 수사자료 등 규명자료를 제출하면 A의 기록사항으로 정정할 수 있음

## 197 타인 명의 호적으로 주민등록한 자의 주민등록 말소처리 가능 여부

- 동생 B가 형 A의 명의로 등록한 주민등록을 말소처리 하고 귀화를 근거로 동생 B의 주민등록 신규등록이 가능한지?
- 말소가 불가하다면 형 A의 주민등록을 동생 B의 실제사항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 회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함
- 동생 B가 본인임이 확인이 되면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형 A 명의로 등록한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함(이중등록말소)

## 198 주민등록 전산 미입력자의 전산화 방법

- 민원인은 전산화 이전에 해외로 출국(1978.6.)한 상태이고,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존재하지 않음
- 본인의 방문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방계혈족의 구두요청에 의하여 구 원장 기록을 전산화할 수 있는지?

**회신**

- 주민등록 전산자료는 1978.9.기준(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최종주소)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전산화 대상이 아님
- 다만, 전산화 이전 해외출국자 등 전산화가 되지 않은 자의 경우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실 확인 후 재등록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재등록 및 전입신고는 본인이 하여야 함

## 199 주민등록신고서에 '서명 또는 인' 부분에 날인 시 성과 이름 중 이름만 새겨진 도장 가능 여부

- 주민등록신고서에 세대주나 신고인의 '서명 또는 인' 부분에 날인 시 성과 이름 중 이름만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서식의 인영은 '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 p.168의 "날인(서명 또는 인) 확인 시 주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확인 가능
- 즉, 성과 이름 중 이름만 새겨진 도장이 날인된 경우도 가능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7·9·10·11·15호서식뿐만 아니라 시행령 · 시행규칙 서식 등 모든 인영 란에 통용

## 200 주민등록시스템 상 사망의심자 처리 절차

**회신**

- 사망의심자 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를 통한 생체지문 및 사진확인으로 생존사실 확인을 인정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
- 타 지역에서 민원발급 시 사망의심자(팝업자)로 안내가 되면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생존사실 확인

## 201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그간 사용해왔던 주민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정정할 수 있는지?

### 회신

- 동일인이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나로 정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관서에서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

## 202 입양아동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처리 방법

- 「입양특례법」 개정(2012.8.5.) 이전 입양된 아동들은 고아호적을 취득하여 주민번호를 부여받았으나 국내 입양 시 양부모가 친자입적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중등록된 경우 많음
- 이중등록된 아동들은 입양기관의 신고로 거주불명 등록되어 있으나 최근 아동 폭력문제로 미취학, 무단결석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로 직권말소 가능한지?

### 회신

-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이중 등록사실을 통보하고 주민등록을 정리하도록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여야 함
-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및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등을 근거로 직권말소 가능

## 203 제적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불일치할 경우 제적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지?
- 소송관련 이해관계인(상대방)의 정정신고로도 주민등록표의 사망일자 정정이 가능한지?

**회신**

- 사실조사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직권사망말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사망신고를 통하여 제적부에 사망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제적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
- 정정신고는 사망자의 직계혈족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204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로 가족부가 없는 자의 주민등록 방법

-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며,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됨
-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주민등록 재등록 할 수 있는 방법?

**회신**

-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폐쇄되면 주민등록도 말소하여야 하며, 말소된 호적을 근거로 주민등록 재등록할 수 없음
-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된 사람이 신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확인서"(주민등록 사무편람 제4호서식) 2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후 주민등록 신고 수리를 완료하여야 함

## 205 이중 주민등록자 정리 방법

- 민원인의 부(父)가 장○○으로 출생등록 하였으나 이후 부가 사망하여 모(母)가 재혼하면서 장△△로 새로 출생신고하고 장○○은 사망신고함
- 이후 장△△은 친생자부존재판결에 따라 가족부가 폐쇄되고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이 말소됨
- 장○○은 법원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사망말소 처리되었던 장○○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함

**회신**

-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의 기록은 불법으로 인한 당연무효나 행정상 명백한 착오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삭제할 수 있음

- 장○○와 장△△의 과거의 주민등록표 기록은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의 주소 이력사항에 장△△의 주소 이력을 추가 기재하면 주민등록표 기록이 중복되거나 하나의 기록을 무단 삭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장○○과 장△△의 각각의 기록을 보존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장△△으로 사용해 온 각종 등록관계(학적부, 건축물대장 등) 목록을 제출받아 해당기관에 인적사항 변경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 장○○과 장△△의 주민전산 '개인메모사항'에 각각 동일인임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206 생년월일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가능 여부

- 출생신고 당시 국내 주소지를 출생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법원의 판결로 출생지를 해외로 정정하면서 생년월일도 변경한 경우, 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구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하는지?

### 회신

- 법원의 판결로 출생지가 해외로 정정된 경우 기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소급하여 말소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 제8조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신고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207 전산 미입력자 주민등록표 정리 방법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지 기록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자료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등록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는지, 최초 출생지만 직권 입력하여 현 주소지로 전입처리하여야 하는지?
- 직권입력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해야 할 경우, 경찰청에 보관중인 주민등록증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도 과거 주소이력에 포함 가능한지?
- 제적부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지만 부여대장에 이력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한지?

### 회신

- 구 주민등록표(1968~1979년)는 1979.6.30. 기준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서 영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주를 주축으로 조회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지는 거주지이므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당시 주소지 또한 조회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므로 번호부여지를 확인하여 출생지를 직권입력 하여야 함
  ※ 전입일(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변동일(신고로 주민등록한 날)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거 주소이력에 미포함하여야 함
- 부여대장에 이력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가능하며, 내부결재를 맡은 후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본 사항에 대하여 통보해야 함
  ※ 다만, 오류 또는 중복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야 함

## 208 구 원장을 근거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직권 입력 가능 여부

- 직계혈족의 요청이 아닌 보정명령 신청인(제3자)이 주민등록 전산자료 입력 요청
- 1976년 무렵 사망하였다고는 하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 없으면 거주불명 등록자로 관리 여부

### 회신

- 구 원장이 확인된다면 행정기관의 보관자료이므로 신청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전산화 할 수 있음
- 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에 있어 정당한 자에게 관련 자료를 발급하여야 함
- 전산 등록 이후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 후 거주불명 등록 처리해야 함

## 209 과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 처리 방법

-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이 미기재되어 있고 전산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은 없는 상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이력을 전산등재할 수 있는지?
- 변경일자가 미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경일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 회신

- 구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전산등재 가능
- 변경일자가 불분명하므로 전산 입력 시 변경일자는 "0000.00.00."로 입력하면 출력시 변경일은 표기되지 않고 변경내역만 표기됨

## 210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 '등록부 정정 판결'을 A와 B가 동일인이라는 판결로 볼 수 있는지?
  ※ 제적부상 자녀의 특별 신분 사항란의 모(母)란에 기재된 A를 B로 정정하고, A의 배우자·자녀를 B의 배우자·자녀로 연결하는 것을 허가함

### 회신

- 동일인이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나로 정리하여야 함
- 등록부정정 판결을 근거로 A와 B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음
- 유전자 검사의 경우 인증기관의 범위는 별도로 없으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법원제출용'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211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 당시 군복무중인 주민의 번호변경 관련

- 1975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일제 경신 당시, 영내 밖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군인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었는지?
- 신고주의 원칙에 반하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하였다면, 오류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일지라도 이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신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75.8.25.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75.10.31. 시행)에 의하여 당초 12자리에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바뀌었음
  - '20.10.5. 시행규칙 개정으로 뒷자리 중 성별표시 첫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단, 신규, 변경에 한함)
- 주민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신고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신고주의와는 별개로 신고된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이 부여함
  - 영내 군인의 경우,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되고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 행정기관에서 당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으로 구성된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였다면,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거나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212 친생부인판결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방법

• 친생부인판결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 창설 통보가 오는 경우 민원인이 별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규등록이나 재등록이 가능한지?

### 회신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은 출생, 사망 또는 실종, 등록기준지의 변경,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임
-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창설되었다면 주민등록신고서(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하여야 하며, 생년월일이 동일하여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재등록하여야함

# 7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 방법

##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방법

### □ 공통사항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 확인
- 주민등록 말소시 주민등록시스템 개인메모란에 말소사유, 정리일자 등을 기록
- 최고·공고는 각각 7일 이상, 직권조치결과 통지·공고는 각각 14일 이상 실시
- 거짓신고로 인한 이중등록자임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 근거법령(주민등록법 제20조, 제37조), 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p.73) 참고

### □ 기관별 업무처리 절차

| 등록상태 유형 | 처리기관 (읍면동) | 처리절차 |
|---|---|---|
| 거주 · 거주불명 (현지이주) | 거주(A) | **【신고에 의한 말소】**<br>•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여부 확인 후 거주자에게 이중등록사실을 통보 → 거주자로부터 말소신고서를 접수하여 B기관에 공문으로 통보(주민등록법 제13조)<br>**【직권에 의한 말소】**<br>• 거주지 읍면동에서 최고·공고(각각 7일 이상) → 최고·공고 결과를 B기관에 공문으로 통보(주민등록법 제20조) |
| | 거주불명 (현지이주) (B) | • A기관의 통보 공문을 근거로 이중등록자 주민등록 말소 |
| 사망(이민) · 거주불명 | 사망(이민) (A) | • 주민등록상 이민으로 처리한 결과를 B기관에 공문으로 통보<br>•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사망사실 확인 |
| | 거주불명 (B) |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결과 사망자인 경우 공고하고 직권으로 주민등록 말소<br>• 이민자인 경우 A기관의 통보 공문을 근거로 이중등록자 주민등록 말소 |
| 거주불명 · 거주불명 | 최근 거주불명(A) | • 최근 거주불명 등록한 읍면동에서 최고·공고 후 그 결과를 B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 | 거주불명 (B) | • A기관의 통보 공문을 근거로 이중등록자 주민등록 말소 |
| 현지이주 · 이민 | 최근 주민등록(A) | • 최근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한 읍면동에서 최고·공고 후 그 결과를 B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 | 이민(B) | • A기관의 통보 공문을 근거로 이중등록자 주민등록 말소 |
| 국적상실 · 이민 | 국적상실(A) | •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국적상실 확인 |
| | 이민(B) |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결과 국적상실인 경우 공고 후 직권으로 주민등록 말소 |

# 제2장
# 전입신고

제1절 미성년자 전입신고
제2절 전입신고 처리
제3절 전입신고 위임
제4절 전입신고 일반

# 제 1 절

# 미성년자 전입신고

## 01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 방법

**회신**

- 전입신고서의 '전 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미성년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본인의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미성년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사실 대로 전입신고 할 때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음

## 02 외국인 모가 미성년 자녀를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친권자인 엄마(외국인)가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 세대의 세대원으로 있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을 엄마가 사는 곳으로 전입시키려 함. 엄마가 외국인이라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세대구성 하여야 하는데, 전 세대주인 아빠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회신**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의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를 할 수 없음
- 단, 외국인 본인의 전입신고는 할 수 없더라도, 내국인인 미성년자녀가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 미성년자녀 본인이 신고하거나, 외국인 모가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대리신고 가능할 것임
- 이 경우,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기 어렵다면 관할 읍 · 면 · 동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전 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본인이나 전 세대주의 서명(날인) 대신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서 번호를 기재하여 직권으로 처리 가능(절차상 하자 없음)

## 03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동일 세대에 성년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
- 다만, 세대원의 사망·실종·가출·국외이주 등으로 세대원 중 미성년자만 있을 경우에는 세대주가 될 수 있음
-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한국인 부 또는 모의 사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부 또는 모와 거주할 경우에도 세대주가 될 수 있음

## 04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 남편과는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만9개월 된 아이와 함께 1년 넘게 친정에서 살고 있음. 아기의 주소를 현재 사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자 하는데 방법은?

**회신**

- 남편의 세대원으로 있는 자녀를 귀하의 세대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라면 전 세대주(자녀의 세대주인 전 남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미성년 자녀가 실제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를 통한 확인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판단

## 05 세대주가 조모,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부모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세대주인 조모가 아이를 편입시키려고 하는데 전 세대주인 부 또는 친권자인 모가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회신**

-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인 조모가 하여야 함
- 그리고 부(父)가 조모의 직계혈족이라면 부(父)도 위임을 받아 신고 가능

## 06 미성년자 단독 세대주 가능 여부

•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단독으로 별도의 주소에 세대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음.
- 부모 또는 성인인 세대원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나, 거주사실대로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거부할 수 없음
-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다면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07 미성년자 단독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므로 미성년자인 어린이가 거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이 사실이면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가능
- 이 경우 미성년자의 전 세대주 확인은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 08 만 4세 아동의 단독 세대주로 전입

• 만 4세 아동을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함. 단독 세대주로 전입시키고자 하는데 전입이 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법 제12조는 합숙사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를 그 숙소의 관리자로 규정하고 관리자가 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합숙사의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단독 세대주로 구성 가능

## 09 세대주인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전 세대주의 확인

• 미성년자가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타세대로 편입할 경우 전입신고 시 전 세대주 또는 본인 란에는 누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 회신

● '전 세대주의 확인', 즉 친권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며,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읍·면·동장의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각 사례별 "전 세대주 또는 본인확인" / "전입신고인"

• 미성년자가 세대주(전 거주지) → 세대주(신거주지)
  - 사실조사로 갈음
• 미성년자가 세대원(전 거주지) → 세대주(신거주지)
  - 전 세대주 확인이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
• 미성년자가 세대주(전 거주지) → 세대원(신거주지)
  - 사실조사로 갈음

## 10 친권자 확인 없이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

• 친권자인 모의 세대에 있던 미성년자를 이혼한 남편(부)이 친권자인 모 확인 없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친권자인 모의 확인이 없으므로 전 주소지로 직권정정 해야 하는지?

### 회신

●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서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하지만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결과 부와 살고 있는 것으로 거주관계가 확인되어 전입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거주사실과 일치하므로 직권정정 처리할 필요 없음

## 11 전 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증 발급받은 미성년자가 서명

• 부(父)의 세대에 있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을 이혼한 미성년자의 모(母)가 모의 세대로 전입신고함
• '전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은 자녀 중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첫째가 함
• 통장 사후확인, 당사자 진술,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를 확인함
• 부(父)는 둘째 자녀의 전입신고는 전세대주의 확인이 없었으므로 취소해줄 것을 요구함. 이 경우 둘째의 전입신고 취소 가능한지?

**회신**

- 전입지의 세대주인 모(母)가 미성년자 자녀의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자 중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미성년자 자녀가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서명을 하였다면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읍·면·동장은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또한, 전입신고시 전(前) 거주지 세대원이 신(新)거주지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전입자 대표 1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둘째 자녀의 전입 또한 본인 서명을 한 첫째 자녀가 대표로 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사실조사 시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전입신고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음

## 12 미성년자 전입 시 전 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전입신고를 접수할 경우 전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전 세대주 확인'란에 미성년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본인의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다만,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 제 2 절

# 전입신고 처리

## 13 철거지역 전입신고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비닐하우스에서 실제 거주중이며, 철거를 위해 주민의 이주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전입신고 수리 가능

## 14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무단 설치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관할 면사무소에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임
-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대법원은 '09.6.18. 2008두 10997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시장 등의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결
- 따라서, 주민등록제도 상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만을 심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수리 여부가 달라질 것임

## 15 노인시설, 아동보호시설, 요양원 등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노인시설, 아동보호시설, 요양원에 전입신고 시 시설장이나 직원이 방문하여 해당자를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회신**

- 해당자가 단독 세대주로 전입하는 경우 시설장이나 직원이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 여부 결정
- 신고인을 대상자로 하여 전입신고서, 서면위임장, 입원(입소)확인서를 시설장이나 직원이 제출하는 경우 사실조사 실시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 결정

## 16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식당업을 하는 자로 식당에 거주를 하는 시설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인 식당에 전입신고 가능여부?

### 회신

- 대법원은 '09.6.18. 2008두 10997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시장 등의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하였음
-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 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관청은 해당 주민이 상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둘 수 있는지 여부를 생계와 숙식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전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 17 병원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민원인께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병원 병실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주민등록제도에서 '거주'는 특정 세대가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거주지(장소)에는 숙박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취사 및 가재도구 등이 부속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의 목적없이 특정 생활 장소에 머무르는 '기거'와 구별됨
- 예를 들어 영내군인이 병영에서 장기간 숙식을 하거나, 일반인이 아침부터 밤늦게 직장에 머무르는 경우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기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생활한다 하더라도 병원 병실은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 기거하는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

## 18 재개발 지역 또는 철거단계에 들어간 건물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재개발 지역 또는 철거단계에 들어간 건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회신**

- 재개발지역 또는 철거 단계에 들어간 건물 등 주민의 이주가 시작된 지역 등은 관할 행정청이 거주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 19 전입신고 금지요청 가능 여부

• A번지의 소유주가 A번지에 전입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수리하지 말 것을 요청

• 이런 경우 건물 소유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전입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상 건물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타인의 전입신고를 금지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전입신고를 수리한 후 사후확인을 하여 허위 전입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조치 및 벌칙(주민등록법 제37조) 적용 가능함을 안내
- 주민등록법령 개정(법 제16조의2제1항, 영 제20조의제3항, 규칙 별지 제1호의15서식 신설)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사전 신청 시 해당 주소지에 타인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 알림 문자메시지 수신 가능

## 20 수용자의 전입신고

**회신**

- 수용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표시로 타인에게 위임하고 수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음(수용자의 신분증, 수용증명서, 서면위임장)
- 다만, 전입신고 주소지는 가족, 친척, 지인 등 수용자의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주소로 가능

## 21 재혼한 부인의 '자'를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 전남편과 이혼한 부인이 재혼한 남편과 새로 세대를 구성하면서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을 '자'로 해줄 수 있는지?

### 회신

- 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해서 해야 할 것임. 사실상 전입신고 시 세대주와의 관계는 민원인 신고하는 대로 하고 있으나 명백히 재혼한 남편과 친자관계가 아닌 자를 "자"로 올릴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모"를 세대주로 할 경우 "자"로 등재할 수 있음

※ 재혼가정의 자는 세대주(재혼한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란에 기재되므로 동거인이 아님 (세대주와의 관계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

## 22 남편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처조모가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 남편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처조모가 전입신고할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에 처조모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회신

- 처조모, 즉 처의 할머니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장조모"로 표시되고 있음. 처조부의 경우에는 "장조부"로 표시되는 것으로 처조모와 장조모는 같은 의미임. 따라서 장조모로 처리

※ 처의 할아버지인 처조부는 장조부로 처리

## 23 전입신고 취소 가능 여부

• 전입신고 후 이미 처리된 전입신고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가능한지?

### 회신

- 주민등록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착오나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통하여 전입신고 수리가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전입신고의 철회 및 그 기록의 삭제가 가능

## 24 전입신고 소급 가능 여부

• 거주지를 이동한 지 4년이 지났다고 전입신고일을 4년 전으로 하여 전입신고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은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주민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전입신고 행위가 없었으므로 전입일자의 소급은 불가
  - 다만, 대상자가 정당하게 전입신고 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착오로 전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전입일자 소급처리가 가능

## 25 전입과 동시에 세대합가 후 세대주 변경

• 세대주(A)이었던 자가 세대주(B)인 세대로 전입해 세대주로 될 경우 처리방법은?

**회신**

- 전입처리 후 세대합가를 하면서 세대주 결정을 하면 되며, 전입신고 구분을 세대합가로 표시하고, 세대주는 A로, 전 세대주는 B로 하여 한꺼번에 처리

## 26 동일번지 내 타 세대 세대원으로의 전입

• 동일번지 내 A세대와 B세대가 있는데, B세대 세대원이 A세대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전입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신**

- 이 경우는 B세대원이 A세대, 즉 다른 세대로 편입되는 것으로 전입신고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고, '전 세대주 또는 본인'은 전입자 본인(B세대원)이어야 함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아니라면 동거인으로 편입되어야 하며, 처리 후 전산에 나오는 주소 이력을 보면 "동일 주소내 전입"으로 나옴

## 27 실수로 잘못 전입신고 처리한 경우 직권 정정

• A 지역에서 B 지역 주민을 실수로 전입신고 처리한 경우(공무원 착오) A 지역으로 전입되었던 주소이력을 없앨 수 있나요?

### 회신

- 다른 대상자를 전입처리한 경우 직권정리 방법
  1. 잘못 처리한 대상자를 전출지 행정기관에 연락하여 다시 전입처리 하도록 요청함(이때, 전·출입은 1일 1회 처리만 가능하므로 전입지에서 [자료관리-직권정리-개인일반사항정리]의 (초본)변동일자, 변동신고일자를 전일자로 수정 후 전입처리 함)
  2. [자료관리-직권정리-개인일반사항정리]에서 작업구분을 [1-세대편입일 및 편입사유]로 선택하고 변경 후 내역의(초본)변동사유, 변동일자, 변동신고일자와 (거소)전입사유, 일자를 이전의 상태로 변경함 : 세대전부 세대구성으로 재전입 처리한 경우가 아니면 (등본)편입사유, 일자도 변경함

## 28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층·호수 기재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층·호수 기재를 요구하는 주소정정 신고 시 수리 여부

###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제5항에 따라 다가구 주택 및 준주택의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표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번호와 호수를 기록할 수 있으나, 공법상 주소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등 초본에 기재하지는 않고 있음.
- 다만, 원룸, 다가구 주택 등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는 건물에도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을 통해 공동주택의 경우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주민등록표에 표기가 가능함

## 29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주소 기재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공동주택 명칭과 동·호수의 표시는 없으나, 거주자의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기재 시 지번 다음에 "2층B호" 또는 "2층서쪽"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고 있으므로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하는 기관의 각종 공부의 기재와 활용에 차질이 없으면서 전산처리, 공부의 표준화 등 업무수행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제3항

-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상 근거 없는 "2층B호"나 "2층서쪽"등의 표시나 과거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표시 등은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기재하여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

## 30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 주민등록증 뒷면은 주소변동 사항을 현재 거주지에서 전 거주지의 변동사항도 기재해 줄 수 있는지?

**회신**

●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주소변동사항을 기재하고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입지에서 하여야 할 것이나, 주소변동사항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이전 주소변동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의 원부나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증명내용의 정확한 정리 및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그 이전의 전입사항도 기재해 주어야 할 것임

## 31 아파트 명칭 없이 전입신고

• 아파트의 경우 도로명주소와 동, 호수 만으로 전입처리 가능한지, 반드시 아파트 명칭이 있어야 하는지?

### 회신

- 아파트의 이름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참고항목'이므로 아파트 이름 없이 도로명 주소(도로명, 건물번호, 동, 호수)만으로 전입신고 가능함
- 추후 건축물대장에 아파트 이름이 등재되어 도로명 주소 '참고 항목'에 아파트 이름 등재를 요청할 경우 '정정신고'를 받아 정정 가능
- 행정기관이 직권 정정 시에는 해당 주민으로 하여금 정정하도록 최고·공고한 후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통보하여 주민이 직권 정정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함

## 32 전입신고 금지요청 가능 여부

• A건물의 소유자 B는 임차인 C와의 토지 및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던 중 A건물로의 지속적인 전입신고로 인하여 1,2차 강제집행이 집행 불능으로 처리되어 A건물로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를 요청함

### 회신

-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고주의 원칙(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수리하고 있으며, 신고사항을 통·리장을 통해 사후 확인함(시행령 제15조)
- 건물 소유주의 전입신고 불수리 요청 권한은 주민등록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사후 확인을 통하여 전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33 아동복지 시설에 각 아동들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세대원으로 전입해 있는 아이들을 각각 세대주로 해도 되는지?
- 아이들을 각각 단독 세대주로 분리하는 경우,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제출받아서 처리해야 하는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12조는 합숙사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를 그 숙소의 관리자로 규정하고 관리자가 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합숙사의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단독 세대주로 구성 가능
-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제출받아서 처리

## 34 해외체류자가 포함된 세대가 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 절차

### 회신

- 세대 모두 이동 또는 해외체류자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 이동하는 경우
  -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에 따라 출국 후에 본인이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해외체류자가 포함된 세대 모두 이동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자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 이동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한 주소로 이동
- 해외체류자를 제외하고 세대 일부 이동하는 경우
  - 전출하지 않고 남는 세대원(거주자)이 있는 경우
    - 기존 세대주는 전출하지 않고 남는 경우 해외체류자 역시 기존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록 유지되고, 기존 세대의 세대원 일부가 전출하지 않고 남는 경우도 기존 등록지에서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 유지
  - 전출하지 않고 남는 세대원(거주자)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에 따라 해외체류자가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 신고의무자에게 해외체류자를 포함한 전입신고 또는 해외체류자가 주소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등을 거쳐 직권으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관리주소가 이동될 수 있음을 안내

# 제 3 절

# 전입신고 위임

## 35 직계혈족의 범위

• 세대주의 위임만 있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계혈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회신**

- 직계혈족이란 「민법」 제768조에 따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 증손 등이 해당되고, 형제자매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방계혈족). 이때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부모 자식 간 직계혈족 관계는 유지됨
- 단, 부 또는 모(A)와 재혼한 배우자(B) 및 A의 자녀(C)로 구성된 세대의 경우 B, C는 민법상 직계혈족이 아닌 인척 관계임

## 36 전입신고 의무자 중 "세대를 관리하는 자"

• 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 배우자가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회신**

- 세대를 관리하는 자는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부부라 할지라도 주소지가 다르다면 동일 세대원이라 볼 수 없고, 당연히 세대를 관리하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의 지위로서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 있음

## 37 전입신고서의 위임범위, 위임신고 요령

•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위임할 수 있는지? 위임할 경우 위임받은 사람이 구비해야 하는 것은?

**회신**

- 전입신고 시 세대주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서명 또는 확인을 받아 전입신고 하여야 함

## 38 동거인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 동거인을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 보아 세대 전부를 다른 곳으로 전입할 때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 회신

-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동거인은 제외하고 있음. 그러므로 동거인이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자격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불가

## 39 주민등록 대리 전입신고

• 타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대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로부터 위임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1994.7.1.부터 전출신고 제도가 없어지면서 통·이장 사전 확인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전입신고 후 즉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등이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이래 거짓 전입신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의무자의 철저한 신분확인이 요구됨에 따라 전입신고를 타인이 대리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다만, 단독 세대주의 입원,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없고, 위임할 자도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당사자의 전입의사를 확인한 후 예외적으로 신고(재등록 포함)처리 및 접수가 가능할 것임(입원증명서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또한,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세대전원 또는 단독세대주가 해외유학, 파견, 취업 등)가 불가피하게 전입신고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영사관(또는 대사관)으로부터 서면위임장에 확인받고 위임받은 자가 전입신고(재등록)를 할 수 있음

## 40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동거인을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 세대원 편입 시에는 현 세대주의 위임으로 세대원을 편입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편입하는 세대원이 동거인인 경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회신**

- 전입신고 수리는 새로운 거주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므로, 동거인이 세대편입을 하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음

## 41 본인의 배우자 전입신고 위임

• 본인이 타 세대 세대원으로 편입할 경우 본인의 배우자에게 위임이 가능한지?

**회신**

- 편입하는 본인이나 신세대주, 신세대주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위임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 42 형제·자매의 전입신고 위임

• 가족인 형제·자매에게 전입신고 위임이 가능한지?

**회신**

- 형제·자매에게는 전입신고의 위임이 불가
-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는 세대주가 하는 게 원칙이며, 그 밖에도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이 가능

## 43 위임받은 말소자가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이민출국, 현지이주말소자도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으로서 주민등록에 대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11조의 신고의무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자를 전제로 하며, 이민출국말소자, 현지이주말소자는 주민등록자가 아니므로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전입신고를 할 수 없음

# 제 4 절

# 전입신고 일반

## 44 본인이 전입신고 시 세대주 신분증 제시 필요 여부

• 본인이 전입신고 시 전입지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지?

**회신**

● 주민등록제도상,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본인의 신고 등)에 따라야 하며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인)이 필요하되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45 전입자의 의사확인

• 민원인인 전입 당사자는 전혀 전입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입 당사자의 전입 의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가 수리됨에 전입신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

• 전입신고 수리 시 전입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요?

**회신**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하여 신고의무자인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가 관련 요건을 갖추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전입자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있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전입자가 주장한다면 사실확인 후 수사의뢰 할 수 있음

## 46 '30일 이상' 거주요건에 관한 문의

• 전입신고 후 반드시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해야 하나요?

**회신**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달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전입신고 후 관할 자치단체에서 사후확인, 사실조사 등을 통한 실제 거주여부 확인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음

## 47 전입신고 사후확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입신고 후 이·통장 사후확인과 관련하여 이·통장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

### 회신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제2호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제1항제7호에는 '주소'를 당연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의거하여 신고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통장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48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전입신고의 자격이 있나요?

### 회신

- 전 거주지의 세대주는 세대원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할 수 없음
  전입신고 시 신고의무자인 세대주는 항상 신거주지 중심으로 생각하면 됨

## 49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자의 처리

• 전입신고를 하고 30일이 지나지 않은 자가 또 다시 다른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의 신고서 처리여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또 다른 사정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 수리 가능

## 50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증 내용란 정리요령

• 전입신고자가 주민등록증 뒷면 변경내용란 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뒷면정리를 하여야 함. 그러나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정리할 수 있음
- 전입세대의 일부가 장기출타 중으로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뒷면 변경 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안내
- 현역 영내 군인은 변경내용란을 정리하지 않으므로 현역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 51 전입자의 세대구성일자 기준

• 세대주의 일부 전출 또는 전입으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때 세대구성 일자는?

**회신**

- 전 거주지에서 세대주 일부 전출로 인하여 남은 가족 중에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전출일자(전입신고 전일)를, 신거주지에서 일부 전입으로 세대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일자를 세대구성일로 함

## 52 영내군인의 주민등록 직권이송

• 독신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록된 자가 입영하였을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직권 이송할 수 있는지

**회신**

- 동거인이라 함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는 친척인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하숙, 고용인 등 일시적으로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경우도 있음

-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이라 하였으므로 친척관계에 있지 않은 단순한 동거인을 뜻한다고 해석되는 바
-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에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그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세대주로 하여금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거나 현주민등록지에서 그대로 잔류시킬 수는 있으나 읍·면·동장이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이송할 수는 없음
  ※ 참고적으로 영내군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직권 거주불명 등록 불가

## 53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신고일자 기준 확인

- 1994.6.30. 이전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전입일 변동과 변동일 사유란'이 있는데 위 사항 중 어느 것이 전입신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 회신

- 1994.6.30. 이전에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거주지를 이동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고 전출신고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전입일자'는 전출신고 익일, '변동일자'는 전입신고일자였으나, 1994.7.1부터 전입신고 1회제 실시로 전출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전입일자와 전입신고일자는 동일한 날짜가 됨

## 54 동일일자 이중전입 신고자 처리

- 동일일자에 "갑"지에 전입신고한 후 "을"지에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을"지에서 전입신고한 일자를 다음날짜로 각종대장을 정리해야 하는지?

### 회신

- 전입신고서 접수대장, 주민등록표 등 관련대장 일체와 주민등록증을 정리하고 전입신고일자를 익일자로 정리하여야 하며(동일자 거주지가 중복되기 때문임) 전입신고서 접수 시에는 민원인에게 익일자로 정리됨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할 것임

## 55 1주소에 2세대 또는 수개의 지번에 1세대 거주지 수리 가능여부

• 사회통념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에 2세대 이상의 주민등록을 신청할 경우와 건축물관리대장상 수개의 지번이 등재되어 있을 때 당사자가 임의로 한 번지를 택하여 주민등록 주소로 신고할 경우

**회신**

-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독립적 생계를 영위하는 것을 뜻하므로 아파트 등의 경우 여러 세대의 주민등록은 어려울 것이나 임대차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거주여부에 관한 사실확인을 실시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건축물관리대장상 1동(棟)의 건물이 수개의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주민등록주소는 주민등록사항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아파트 등의 경우 같은 동(棟)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일치시킴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 56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회신**

- 전입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며, 세대주가 할 수 없는 경우에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할 수 있음. 이때 전입신고서의 세대주 확인, 전 세대주 및 본인 확인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세대원이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과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57 나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곳의 전입신고 시 수리 여부

• 나대지나 도로 등에 전입신고 시에도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나?

**회신**

- 나대지나 도로 등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 시 이를 발견하였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하여야 함

- 전입신고 수리 당시 이러한 내용을 몰랐더라도 통(리)장 사후확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면 직권조치하고 거짓신고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 불법 건축물이라도 30일 이상의 거주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신고 가능
- 전입신고 당시 거주 가능한 건축물이 확인되어 전입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이후 재개발, 자연재해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되어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절차 진행

## 58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투기목적 등으로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전입신고하려는 경우 수리해야 하는지?

### 회신

- 대법원은 2009.6.18. 2008두 10997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시장, 군수 등의 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라고 판결하였음
- 따라서, 투기목적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고 주민등록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만을 심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이 어려운 만큼 전입신고 후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59 전입신고 시 신분증 지참 여부

• 전입신고 시 본인이 올 경우와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올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지?

### 회신

- 민원인이 본인임을 주장하는 경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상 지문조회(우무인) 또는 화상사진을 확인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질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여부가 확인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 수리 등 주민등록업무 수행이 가능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올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등 전입신고서 양식 〈작성방법〉에서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은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시행령 제19조(위임에 따른 신고))
- 따라서, 세대주가 오지 못하여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임

## 60 숙박업소에 주민등록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일시적인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소 등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사안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주거할 곳이 없는 자 등) 그 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숙박업소의 주인(건물 소유주)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61 세대 일부가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전입신고

- 전에 살던 곳에 부(75세), 자1(48세), 자2(46세) 이렇게 있었는데, 자2가 전입신고서 신고인이 되면서 자1, 자2 두 명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신고인인 자2의 도장날인만 찍어도 2명 전부를 전입시킬 수 있나요?

**회신**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한 세대일부가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전입자가 성인이며 여러 명인 경우)에 "전 세대주 또는 본인"란에는 그 중 한 사람의 확인을 받으면 전입신고 가능

## 62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숙박이 가능한 시설인 고시원, 고시텔 등에 전입신고 수리 시 처리요령?

**회신**

-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숙박이 제공되는 영업장으로써,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임이 입증(계약서, 입실증 등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등)된다면 전입 가능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 -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63 주거형 오피스텔 등 주민등록 가능 여부

• 주거형 오피스텔, 주거형 실버타운, 주거형 콘도미니엄 등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6조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의 목적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도모에 있으므로, 거주하는 곳이 생활의 근거지이며, 30일 이상 거주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64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신축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

### 회신

- 주택 신축 등의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관계기관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주하도록 되어 있음
-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주민등록담당부서)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아파트의 안전도, 사용검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65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처리방법

• 전입한 주소가 다가구주택이었는데, 재건축하여 다세대주택이 되었음
• 주소 이전한 적이 없다면 이때 주소변경은 정정인지, 전입인지?

### 회신

- 정정으로 처리
-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하면'(법 제16조) 신고하므로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다면 전입이 아닌 정정으로 처리
  ※ 정정사유 : 코드번호57 - 공동주택변경

## 66 다가구주택 내에서 거주지 이동 시(호수 변경) 처리 방법

- 다가구주택 3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1층으로 이사
- 다가구주택이므로 공법상 주소변동이 없고, 전산의 기타주소만 바꿔야 하는데 이런 경우 처리방법
- 실제 이사를 했으니 동일 주소지내 전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 공법상 주소는 변동이 없으니 전산상 기타주소만 변경처리 하는 것인지?

**회신**

- 정정으로 처리
- 실제 이사를 했어도 공법상 주소변동이 없으므로, 정정신고서를 받아 전산 상 기타 주소만 변경처리

## 67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14일에 공휴일 포함 유무

**회신**

- 포함
-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며 익일 종료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바, 기간 중 공휴일은 포함해서 생각하면 됨

## 68 수용증명서로 '서명/인'대체 가능 여부

- 세대편입하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수용중인 경우, 세대주 '서명이나 인' 대신 수용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
- 세대주 정정 시에도 서명이나 인 대신 수용증명서로 가능한지?

**회신**

- 수용증명서가 사실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수용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정정신고 시 전 세대주의 확인도 수용증명서로 가능

## 69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방법

**회신**

- 민원인이 정부24 또는 시·군·구 지적과(토지정보과, 민원토지과, 부동산정보과 등)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 후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신청자에게 통보
- 민원인이 그 상세주소를 기재해달라는 정정신고를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하면 정정처리

## 70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 방법

-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으나 사망신고 접수 처리 전에 새 주소로 전입신고 시 처리 방법

**회신**

- 사망 이후 사망자에 대한 전입신고 요청은 무효임
- 사망자를 제외하고 전입신고 처리하고 이후 사망자 주소지에서 사망 신고토록 안내

## 71 종교단체시설에 다수의 단독세대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종교단체시설'이 주민등록법 제12조상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시 읍·면·동의 사실조사 결과를 근거로 단독 세대 구성이 가능할 것임

## 72 전입신고 수리 기준인 거주 여부의 판단

-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 없이 카라반과 텐트를 두고 생활을 하고 있으며, 취침을 하고 있지 않으나, 농작물 관리를 위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
- 주민등록제도에서는 30일 이상 거주목적만을 판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동 가능성이 높은 카라반 및 텐트에 주소이전이 가능한지?

**회신**

-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야 하며, 해당 거주지는 숙박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취사 및 가재도구 등이 부속되어야 함
  - 따라서 건축물은 없고 농작지에 카라반과 텐트를 두고 취침을 하지 않으며, 취사 및 가재도구 등이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 관리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라면, 거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읍·면·동에서는 생계와 숙식여부, 우편물 수령 여부, 수도·전기 사용 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거주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73 의사 무능력자(치매) 본인 방문 전입신고

- 의사 무능력자(치매) 본인이 외손녀와 방문하여 요양원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러 옴
-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여 확인할 수 없음에도 전입신고 가능한지?

**회신**

-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처리를 준용하여 '전 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확인이 불가하므로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다만,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즉, '전 세대주 또는 본인'의 확인을 대체하는 사실조사는 전입신고 수리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74 주소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변경('17.7.1. 시행)

**회신**

- 전입신고와 함께 타 권역으로의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휴대폰 번호 입력 및 수수료 부과 사실 안내

| 구분 | 동일 권역 | | 타 권역 | |
|---|---|---|---|---|
| | 3개월 이내 | 3개월 연장 | 3개월 이내 | 3개월 연장 |
| 개인(1인당) | 무료 | 4,000원 | 7,000원 | 7,000원 |
| 단체(법인·사업자) | 무료 | 53,000원 | 70,000원 | 70,000원 |

※ 타 권역으로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 시 기한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 취소됨

## 75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 방법(1)

**회신**

- 주민등록법 제10조의3('17.12.3.시행)에 따라 주민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유학, 해외 주재원 등)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음

## 76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 방법(2)

-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이미 해외체류중임.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기를 원함

**회신**

-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이 원칙(영 제17조의3제3항)
- 다만, 사전에 해외체류신고 없이 이미 출국한 경우, 본인(정부24) 또는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자(영 제17조제2항제2호)가 가능. 국내주소가 변경되는 일자는 신고일*임
  – 이때부터 해외체류자로 관리됨

  *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근거

## 77 주소, 거소와 주민등록지 주소의 차이점

**회신**

- 「민법」 제18조에 의하면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주소(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음)가 되며, 주소가 없이 얼마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 거소가 됨
- 주민등록은 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보고 있음
  ※ (공법) 법률관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이들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 제3장
#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제1절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 제 1 절

#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 01 거동불가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 민원인께서 뇌병변 장애 1급이라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방법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비록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은 아닐지라도 거동불가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발급 신청을 한다면 행정관청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기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 02 수감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 교도소 수감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음
• 수감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신**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시 반드시 본인임을 밝힌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교도소에서 재발급신청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지 않다면 재발급을 할 수 없을 것임

## 0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수감된 자의 주민등록증 처리방법

• 민원인이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후 수감되어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해 갈 수 없다고 하며 교도소로 주민등록증을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처리방법은?

**회신**

- 교도소에 수용자의 주민등록증을 송부한다고 공문으로 통보, 대상자의 수용증명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는 사유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를 수신처로 하여 송부한다는 내용으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송부

## 04 2006.11.1. 이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2006.11.1.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에 대해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 무료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3호에는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006년 당시 주민등록증에 형광인쇄기술을 추가하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경신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증 경신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0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 1999년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때 미발급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발급신청이 있는데, 신원조회 등이 필요한지, 아니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첨부된 사진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발급해줘도 되는지?

**회신**

-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십지지문을 통한 신원조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수 있음

## 06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 관련

- 몇달 전, 지방의 A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함
- 그런데 서울에 취업이 되어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음
-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여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A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직장주소로 등기로 받을 수 있는지
- 가족 중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임

### 회신

-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의 교부는 본인 및 신분이 확인된 본인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할 수 있도록(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제42조 준용) 하고 있으며, 이는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수령, 부당하게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민원편의 및 적극행정 차원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민원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송부하여 민원인이 수령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발급한 주민센터(주민등록시스템 상 "미수령증이송" 처리 후, 등기로 이송) → 수령한 주민센터("교부처리" 확인 후, 교부)

## 07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교부

-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기 이전에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경우 주민등록증 처리방법은?

### 회신

- 주민등록제도상 주민등록지 외 교부기관에서 보관 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으로 등기 우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주민등록증 보유기관에게 현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송하여 교부할 수 있음

## 0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 79년생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았고, 이모가 키우시다가 시설에 맡겨졌다고 함
- 현재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과는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사진자료나 지문이 등록된 흔적이 없어 주민등록증 발급 처리를 위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상태임
- 본인 확인 방법은?

**회신**

- 본 민원의 내용에서, 다른 신분증이 없다면 본인확인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법원의 판결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공증을 받아 오도록 안내(공증은 보통 '사서인증'의 형식을 취하며 인우보증의 내용을 공증인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

## 09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증 교부가 가능한 대상

**회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증 재발급 시 본인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로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는 방법으로 함
- 주민등록증의 교부 및 증 분실(철회)신고자는 본인 및 본인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할 수 있음
  ※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한 증은 본인이 직접 방문시에만 교부 가능

## 10 해외체류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회신**

- 해외체류자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국내 주소지 주민센터로의 공문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

## 11 국외이주신고 후 증발급 대상자가 될 경우 처리방법

**회신**

- 국외이주신고 후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발생할 경우는 국외이주신고 사유가 소멸되거나 국외이주를 취소 또는 포기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증 발급을 유예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유예할 때는 "▲▲년 ▲▲월 ▲▲일 국외이주신고로 증발급 통지유예"라고 개인별 주민등록표 예비란(메모장)에 기재하여야 함

## 12 중국교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현재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동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귀화 또는 국적취득을 한 후에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창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면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 주민등록신고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1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 언니가 동생의 성명을 도용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고 동생은 이를 모르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였더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함

**회신**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읍·면·동에서는 소명자료와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등록증이 잘못 발급된 것이 판명되면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다음 언니는 거짓신고자로 고발조치하여야 하며 동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 또한 관계공무원은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후 언니의 발급사항을 삭제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 14 십지지문 채취과정에서 지문채취가 어려운 경우 해결방법

**회신**

- 노동·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문의 융선이 닳아 없어졌을 경우 융선이 소생되도록 일정기간 보호조치 한 후 십지지문을 채취하고 절단된 부분 등은 사유(지문닳음, 지문손상, 절단 등)를 해당란에 기재

## 15 습득증 회수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교부불능으로 회수한 후 파기하였는데 후일 재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회신**

- 습득한 주민등록증 파기 시에 해당자의 개인별주민등록표 예비란에 파기일자와 사유를 입력하여 공부상 그 근거를 남겨두었다가 거주불명 등록자가 재등록 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재발급 가능
- 이때 재발급사유는 "회수재발급 또는 기타재발급"으로 입력함

## 16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분실 후 재발급신청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신청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하였는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는 분실신고 후 증재발급 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30일임. 그러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17 유학생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구성원이 해당자가 해외유학 중이라는 재학증명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연기신청을 하였는데 언제까지 연기가 가능한지?

**회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해외에 유학중이라면 재학증명서 등 유학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유학기간까지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유예, 해외유학 중인 기간은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됨

## 18 의식불명자, 거동불가자 등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 의식불명자나 거동불가자 등의 법적·재산관계를 위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가족이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거동불가자의 경우 재발급 신고를 받은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장이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거동불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아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실확인서(본인의사 확인과정 등에 대한 내부결재 등)를 작성한 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발급이 가능
- 의식불명자는 가족 및 병원·요양소·후원기관 등에서 의식불명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등)의 신청으로 가능

  ※ 최근 가족·친지 간 본인의 동의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을 받아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재발급 의사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

## 19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가능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사진 보완에 대해서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현상·인화된 사진 외 변형이 가능한 그 밖의 사진"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미지가 실물과 다르다면 그 이미지 사진은 곤란

**사진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보다 크거나, 사진 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
②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③ 색안경을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④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⑤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났더라도 용모의 변화가 거의 없어 본인인식이 용이한 경우 다른 사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⑥ 이미지·스티커·복사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⑦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 20 이중등록자의 십지지문 재작성

• A시와 B군에서 이중 등록된 자의 주민등록을 정리하였는데 경찰청에 관리하고 있는 십지지문 채취자료(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정리를 위하여 별도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 주민등록이 이중등록된 자를 정리한 경우에는 월별로 시·도에서 변동자료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으므로 따로 통보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경찰청으로부터 해당자의 자료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영 별지 제30호서식)를 재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함

## 21 개인별 주민등록표상 증 발급일자 미기재 시 분실신고서 접수여부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접수 시 개인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증 발급란을 대조한 결과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진이 미부착 되었다는 사유로 분실신고서 접수를 거부하였던 바, 신고인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주장. 이런 경우 분실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 신고인이 주민등록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분실신고서를 우선 접수하고 신고인의 구두 진술만으로는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고인이 진술한 주민등록증 발급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조회한 후 그 회보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민에게 증 발급지에 가서 증 발급 확인서를 받아 오도록 안내하거나, 신규발급 대상자로 간주하는 등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22 주민등록증 2매 지참자 처리 요령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다시 찾아 2매를 지참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신**

●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 이후 분실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을 경우에는 분실재발급의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먼저 발급받았던 구 주민등록증은 회수해야 함

## 23 사망신고 시 주민등록증 분실자의 증 회수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사망한 때는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찾지 못하는 경우 사망신고서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분실·훼손 등)에는 분실신고서를 첨부하지 말고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와 일자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지에서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별지 제11호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되도록 함

※ 전산처리절차 : 직권정리 - 개인일반사항 정리 - 메모수정

## 24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상의 지문자료를 요구할 때 처리방법

**회신**

● 지문자료는 주민등록증 발급 시 십지지문을 채취하여 이를 경찰청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필요하여 전산조직으로 관리하는 것임. 따라서 수사목적에 의한 지문자료의 요구는 경찰청에 요청하도록 하여야 함

## 25 주민등록증 미경신자가 경신발급 신청할 경우 처리방법

**회신**

- 사진과 지문자료를 입력하여 경신발급신청으로 처리
  - 이 경우 경신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 26 신분증 복사 및 팩스송부에 관하여

-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의 복사 또는 팩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신**

-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이 발급받은 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해 주거나 신분증을 복사해 줄 의무는 없음. 그러나 민원편의를 위하여 복사기 및 팩스기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임

## 27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1년간 찾아가지 아니할 때 주민등록증 회수요령

**회신**

- 분실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 경과 시 회수하여 주민등록증 회수(인계) 대장에 등재하여 전산처리
- 회수된 증은 주민등록증 표면의 네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철제이중금고에 보관 매월 말에 결산하여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인계하고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확인을 받음
- 기간 계산 시 초일을 불산입하고 통지의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2009.5.1. 수령안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등기도달일자 확인)하였다면, 2010.5.1.이 1년이 됨. 따라서 등기도착 예정일을 계산하여 2009.5.2.~2010.5.1. 까지 방문기간을 설정하면 됨

## 28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전화접수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유선(전화)로 할 수 없음
- 본인이 정부24(www.gov.co.kr)를 통해 분실신고 하거나, 본인 또는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

## 29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도 송부가 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불가

## 30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가 시 공고의 이유

**회신**

-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만 17세가 되는 달에 발급 통지를 하고 발급통지를 받은 주민은 신청기간 내에 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 한편 증발급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만약 무단전출로 인하여 발급통지 및 공고한 사실이 없으면 과태료 적용을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및 공고된 사실을 반드시 개인별주민등록표 예비란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여야만 후일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됨

①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의 경우

| |
|---|
| 2013. 2. 10.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발급기간 : 2013. 3. 1.~2014. 2. 28. 수령자 ○○○ |

②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의 경우

| |
|---|
| 2013. 2. 20. 주민등록증 발급공고 발급기간 : 2013. 3. 1.~2014. 2. 28.<br>※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 |

## 31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 교부 가능 여부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자 중에서 교부받기 전에 거주불명 등록되어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러 왔을 경우 교부해야 하는지

**회신**

●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 교부 가능

## 3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공고)에 관하여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14일 이상) 하여야 하는데, 과태료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공고(14일 이상)는 통지할 수 없음에 대한 공표수단으로 통지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확정하는 것임

● 그러므로 이 때의 공고를 근거로 규칙 제21조 제1항(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공고이후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주민등록증 발급을 최고 또는 공고한 때에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 33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자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시에 시행령 제42조제1항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인데 '17세 이상'은 세대원만인지, 배우자 등 가족도 17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신**

● 원칙적으로는 세대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만17세 이상이 동일하게 적용

## 34 신분 소명하는 신분증

• 현재는 자퇴한 상태라서 학생증이 없고, 부모와 조부모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함. 사진이 있는 생활기록부로 신분 소명이 가능한지?

**회신**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학교로 직접 요청하여 공식적인 자료(사진이 있는 학적부 등)를 받는다면 가능(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청소년증으로도 신분확인 가능)

## 35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과태료 부과

• 외국에서 있다가 거의 입국하자마자 군 입대를 했음

• 과태료 유예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회신**

● 군입대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 복무기간을 과태료 산정기간에서 제외

– 휴가기간에 발급 신청이 가능하였겠으나, 제대 후 발급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휴가기간까지 굳이 산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는 없을 것임

## 36 우무인이 변경되어 재발급 시, 새로 받은 우무인을 경찰에도 보내야 되는지?

**회신**

●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십지지문이 기록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경찰관서로 전송되며, 십지지문의 정보는 경찰관서에서 보유·관리됨(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우무인의 정보만 보유·관리)

● 경찰청으로 새 우무인 정보를 전송할 주민등록법 상의 근거는 없으나, 경찰관서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

## 37 재발급 주민등록증 교부 방법

- 증 재발급 시 프리미엄 등기신청, 배송지로 배송했는데 반송이 됨
- 신청 후 민원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 민원인 요청에 따라 그 곳으로 등기우편 배송해줘도 되는지 여부
- 신청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로 이동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신청 시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6개월 이후 현재 주소지로 이송해도 되는지 여부

### 회신

- 해당 민원인과 통화가 되었더라도 제3자가 수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로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송하여 재발급 신청자가 수령해 갈 수 있도록 조치 가능

## 38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십지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지문채취를 해보았으나 불분명한 상태라 등록이 안될 것으로 판단됨
- 치료 이후 신청하도록 대상자에게 권했으나, 함께 온 보호자(부모님) 말씀으로는 어릴적부터 이런 상태였고, 전혀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함
  - 이대로 등록이 되는지?
  - 이 경우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지문채취불가 등록을 할 수 있는지?

### 회신

- 최대한 십지지문 채취하여 경찰서로 보내야 함
- 손가락 절단 등 지문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채취불가이지만, 이런 경우 지문이 마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채취하여 경찰서로 보내야 함
  - 의사진단서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경찰서로 보낼 때 첨부하고, 이후 경찰서에서 이 지문에 대하여 판단하게 될 것

## 39 현지이주말소자의 주민등록 분신실고

- 현지이주말소자인데, 증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
- 증 분실신고를 하려고 가까운 주민센터 갔더니 신고가 안 된다고 함
- 현지이주말소자는 분실신고 자체가 안 되는지?

**회신**

- 말소자는 어차피 진위확인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실신고 할 필요도 없음

  ※ ARS 1382 증 진위확인시 말소자에 대한 멘트
  - 현지이주말소자 : "현지이주말소로 인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망말소자 : "사망말소자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0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관련

- 질병이나 장애의 이유로 부득이 얼굴에 장치나 붕대 등을 부착해야만 하는 사람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허용 문의(사례 참고)

사례1) 호흡기 질병으로 코에 호스를 상시로 부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호스를 부착하고 있는 사진으로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

사례2) 심한 화상으로 인해 얼굴이 일그러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경우 꼭 마스크를 벗은 상태의 맨얼굴 사진이 있어야 증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본인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예전 사진이라도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마스크, 장치 등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은 곤란할 것

## 4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통리장이 본인 확인을 한 경우

- 신규증 발급 시 본인확인 방법 중 통리장이 확인할 경우, (서면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회신**

- 임의의 서면확인서. '통리장 누가 누구에 대해서 확인해주었는지' 등 내용을 담아 작성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발급신청서 중간에 〈통장·이장〉란에 서명날인하고, 이 서면확인서도 별도로 1장 받아서 첨부

## 42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11.20.에 했다면, 주민등록증 앞면에 표기되는 발급일은 11.20.인지? 이후 한국조폐공사에서 실제 발급한 날짜인지?

### 회신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된 날짜 기준(11.20.)

## 43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해야 하나요?

### 회신

● 2017.7.1.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급가능한 주민센터 범위 확대

● 재발급의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발급 가능

※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수령 가능

## 44 의사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여부

• 동 주민센터 직원이 A의 의사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인감 신고 등 민원을 반복할 경우 A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의사소견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 만약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는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는지에 대한 신청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따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신청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관련 자료로 신청의사를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함

## 45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재발급시 대리인 신청 여부

- 고등학생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수령하였으나 분실함
- 직계혈족(모)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재발급받고자 함

**회신**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재발급은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수령하여야 함
- 유효기간(30일) 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재발급 가능

## 46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회신**

- 인터넷(정부24)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본인(공인인증서 필수)만 신청할 수 있음('17.7.1.시행)
  ※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과 대조하여 정합률이 50%이하인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최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부정 재발급을 통해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신용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 재발급 신청 시에는 직계혈족이나 동일 세대구성원이 대리 수령 가능한 것(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의 범위를 준용)과 달리 인터넷 신청 시 반드시 본인 수령이 필요(신청이나 교부 중 최소 1회는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 필요)
  ※ 재발급신청화면 상단 "임시신분증은 (전국)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십시오" 라는 문구로 안내 중

## 47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회신**

-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17.12.3.시행)

## 48 생년월일만 있는 학생증이 소명 자료로 사용 가능한 지?

**회신**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면 본인 소명 가능

## 49 제출한 사진이 6개월 이상 지난 사진인지 판단 기준

**회신**

- 명확히 6개월이 지난 사실을 확인* 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관청이 사진과 신청자의 용모를 비교·판단하여 처리
  * 증 발급자가 가져온 사진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경우 등
- 신분증은 공공기관, 은행이나 개인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용도이고
  - 국제 여권규격에서 사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발급하도록 표준이 정의되어 있으며,
  - 주민등록증도 이에 준하여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발급신청을 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함

## 50 통합복지카드가 주민등록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지?

• 2014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발급되고 잇는 통합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해 인정
- 통합복지카드에는 사진, 성명, 생년월일, 지자체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신분증명서로 인정은 되나
  - 사진으로 동일인임이 확인 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에 관하여 대상자에게 확인하여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제4장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1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제2절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제3절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제4절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5절 가족간 발급
제6절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제7절 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제8절 기타사항
제9절 전입세대 열람

# 제 1 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신청 | 신청서 | 증명자료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 | - |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무문서 등 |

### □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법령 예시

- 소득세법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 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조사 및 연구)
  -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정보 제공 및 전산망 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등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구직자취업촉진법 제9조(신청에 따른 확인·조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받으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확인 등)
-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 별표 1에 따른 정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다음 각 목의 농업인에 관한 정보
   가. 성명,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신고 거소지를 말한다)
   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다. 연락처, 영농 이력
2.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에 관한 정보
3. ~ 10. 생략

## 01 예비군 중대에서 공무상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회신**

- 우선 예비군중대는 국가기관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 공문에 근거조항(「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과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다면 발급할 수 있음

## 02 공무상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방법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더라도 그 교부는 공문서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신분이 확인된 공무원이 직접 내방하여 받도록 하고 있으며,
- 모사전송의 방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수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음

## 0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세대명부 열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지번을 지정하여 거주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경우, 대상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어있지 않는다는 이유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세대명부는 '열람'만 가능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료제공 되지 않는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세대명부 등 열람은 '증명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며, 전입세대 열람 후 출력물 제공하듯 출력해서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를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하면 세대명부도 제공할 수 있음

## 04 생활체육회 등 유관단체에서 시를 대표하여 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회신**

- 유관단체를 관리하는 관계기관(시·군·구, 읍·면·동)에서 체육행사, 보건진료, 토지보상, 재해재난 대처 등을 진행하면서 일정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와 근거법령을 제시하면 공용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0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

- 경찰에서 공문 등을 가지고 등·초본 신청 시, 제7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는 개인신청인인지, 법인신청인인지?

**회신**

- 법인신청인란에 작성
- 다만,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증명자료로 첨부하는 경우 신청서식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략 가능

※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형사수첩 등)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 제출 시 등·초본 교부 허용
- 신청 시 법인신청인 란에 작성하고,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문 생략 가능

## 06 국가기관 등이 공무상 열람 요청 시 그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열람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 이외의 것도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등록기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해서 열람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 이외의 것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지도 열람 가능

## 07 공무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세무서로부터 다량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 받은 경우 처리방법

### 회신

-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된 문서에 그 목적과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임
-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특정공무원이 급박한 사정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로 국한하여 관계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시한 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예시〉
①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형사수첩 등을 제시하고 요청한 때
②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서를 소지한 세무공무원이 공무집행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때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한 지명서를 소지한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때
④ 당해 기관장(부대장)이 특수업무 수행자임을 증명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대공수사요원 또는 군수사요원이 직무집행상 긴급하게 필요한 때

- 따라서 해당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세금의 부과·징수용 보조자료 등으로 다량의 자료를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절차를 거쳐 이용하는 것이 타당

## 08 관계기관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세무서에서 다량의 자료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발급하기 보다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반드시 전산자료로만 제공해야 하는지?

### 회신

- 관계기관에서 공무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대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의 업무형편을 감안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본발급을 지양하고 전산자료로 제공토록 한 것으로, 반드시 전산자료로만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따라서 신청 건수가 해당 읍·면·동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09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가능 여부

• 관내 영구임대아파트(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사무소 측에서 거주자의 실태조사를 위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신청한 경우 교부 가능 여부?

**회신**

-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이 불가하며 입주자로부터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받아 신청하여야 함
-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근거 및 그 필요사유를 명시한 해당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할 경우 등본 교부신청이 가능

## 10 국·공립학교에서 감사(가족수당) 관련 교직원 등·초본 발급요청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초본의 발급이 가능.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서 요구하여야 할 것임

## 11 집행관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용발급 가능 여부

• 집행관사무소장 명의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공용발급 가능 여부

**회신**

- 집행관사무소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과 판사의 현황조사명령서와 집행관 또는 소속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교부는 가능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용발급은 불가

## 12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제출서류

**회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명의로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공문서로 요구하여야 함 (근거법령에는 조례도 포함)

- '근거법령'이란 수행 업무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음을 포함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법제처에서 법령해석한 바 있으므로(법제처 17-0167), ① 수행하려는 공무가 법령상 명시되어 있으며, ② 요청하는 주민등록자료가 공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 것임

## 13 지방의회에서 위원회의 주민등록표 열람 요청

-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가능한지?
- 대상 의원을 제외한 세대원의 초본, 전·출입 등의 주민등록사항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신

- 지방자치단체는 의사결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결기관(지방의회)과 결정된 의사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사항의 열람 및 발급 가능
- 대상 의원을 제외한 세대원의 초본, 전입·전출 등의 주민등록사항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가능

## 14 수사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 요청할 경우 교부 방법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 명의의 문서만 있다면 사건 담당자가 아닌 해당 기관 소속 경찰이 방문할 경우에도 직접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제출하면 사건 담당자가 아닌 해당기관(담당부서)의 소속경찰이 방문할 경우 방문자의 신분이 확인되면 직접 교부가 가능할 것이며, 관계 기관장 명의의 문서에 자료요청 근거 및 내용 등이 기재된 경우 특별히 추가하여 확인할 사항이 없으면 문서만으로 교부가 가능할 것임
- 공무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 해당기관(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도 신분이 확인되면 대리수령이 가능한 것임

# 제 2 절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① 증명자료 및 교부신청이 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증명자료**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하는 문서
-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신청서와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인의 공정증서 등】

※ 강제집행 신청의 종류

| |
|---|
| 재산명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 강제관리),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경매, 압류명령, 전부명령, 추심명령,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동산인도청구,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경매신청 |

※ 집행권원이 있는 자료

| |
|---|
| 확정된 종국판결문,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문,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 등 |

**□ 교부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집행권원 + 집행불능조서(강제집행신청서를 대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가능】
- 법원에 접수된 공탁신청서 + 이해관계자료
  (법원에 접수를 해야 비송사건으로 인정)
-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 명백한 이해관계사실 자료(판결문 또는 공증인의 공정증서 등만 인정)
- 임의경매신청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위임장(위임시)
- 판결문 + 승계집행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승계집행 : 원고가 피고에게 주어진 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
- 공시송달신청서 +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조회 내역 + 소송진행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소송, 비송사건 관련 초본 교부신청

### 15 소송접수증명원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회신**

- '소송접수증명원'은 소장 등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서류로서, 단순히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명원 그 자체만으로 명확한 이해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명자료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소송제기 후 '보정명령'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가능

### 16 소송, 비송 사건의 원고가 외국인일 때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단기체류)이 보정명령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는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내국인'에 한하여 가능
-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 부당하게 근로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있어, 민·형사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교부 신청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반송된 내용증명 또는 보정명령서 등 입증서류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음
- 아울러, 외국인등록이 안 된 외국인은 소송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초본을 교부 신청 할 수 있음

### 17 지급명령결정 정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

- 채권자가 소액재판에 의해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결정서와 강제집행신청서(법원에 접수하기 전 압류, 추심, 전부, 경매 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결정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면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음

## 18 채무자의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개인회생 결정문이 도착하였음
- 대출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햇살론을 취급하였고, 개인회생결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보증이행청구를 하여 대위변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 개인회생결정이 나왔고, 독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가 없음
-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은?

**회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등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채권자는 채무독촉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입증자료인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9 법원판결문이 복사본일 경우

- 복사된 법원판결문으로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지?

**회신**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신청 시 입증자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3에 따라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음(형식적 심사)

  ※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 : 원본을 발급한 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금융기관 등이 원본을 복사한 후 사본을 제출하기 위하여 원본대조필을 한 것은 인정

## 20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조정조서 및 화해조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한지?

### 회신

-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는 일종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반송된 내용증명이나 강제집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초본 교부신청 가능

## 21 형사사건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수용 중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자녀가 약식명령서와 고소장, 국선변호인결정문을 가지고 고소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 회신

- 형사소송인 경우 이해당사자는 원고(검찰 또는 경찰)와 피고가 되므로 원고(검찰 또는 경찰)가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피고소인이 직접 고소인의 등·초본 신청을 할 수는 없음
- 법원이 아닌 검찰, 경찰 등에서 발부한 명령서, 고소장 등으로는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없음

## 22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고소인이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첨부하여 피고소인의 등·초본을 요구할 경우

### 회신

- 불기소처분통지서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처분한 통지서로 이를 증명자료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는 불가능.
-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소송、비송、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초본 발급 가능

## 23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한 출석요구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한 출석요구서로 고용인이 고용주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출석요구서는 단순한 출석 통지서에 불과하여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음.
- 고용주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임

## 24 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원고대리인이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을 경우 증인의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원고 및 피고가 아닌 증인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은 불가하겠으며 증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

## 25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서류

• 법원의 회생절차폐지 결정문 없이 채권자표를 확정판결문으로 갈음하여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채권자표, 강제집행신청서만으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상자의 초본 발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2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와 강제집행신청서를 함께 제출 시 초본발급 가능(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확인 필수)

## 26 원폭피해소송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가능 여부

- 원폭피해자인 A씨는 형제, 남매를 제외하곤 전혀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 일본법원에서 A씨의 조카인 B씨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동상속인인 A씨의 누나인 C씨의 며느리, 손자, 증손자에게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요구
  - 즉, B씨는 사촌, 사촌조카들, 그 조카들의 자식들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함
- 일본법원에서 그들의 등·초본을 요구한다는 요구서가 있는 상황에서 B씨는 사촌, 사촌조카들, 그 조카들의 자식들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지?

### 회신

- 한국인 피폭자의 유족이 일본 정부에 위자료 청구소송 중 공동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였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됨
- 공동상속인 중 원고는 소송 접수증, 일본법원에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통보서, 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하여 다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

## 27 소송관련 판결문만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한지?

- 법원판결 후 강제집행은 신청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판결문만으로 초본 발급을 요구

###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판결문 제시만으로는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문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3 강제집행 관련 초본 교부신청

### 28 집행불능조서를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집행관이 집행권원을 소지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채무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그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집행불능조서'를 작성(「민사집행법」 제10조)하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집행불능조서등본'을 발급받아 초본 교부신청의 증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

**회신**

- 집행권원 자료와 강제집행신청서를 대체하는 '집행불능조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29 강제집행신청서의 요건

**회신**

-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로 간주함
- 반드시 법인인감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님

### 30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판결문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는 이유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 취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써, 주민등록표 초본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임
- 물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하고 있으나, 그 자체가 개인의 정보를 수록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 권리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초본의 필요성을 밝히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첨부토록 한 것임

## 31 소멸시효가 지난 판결문과 강제집행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회신

- 민법상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없다면 통상 10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의 입증서류로 볼 수 없으나,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따라 소송 등을 위하여 법원에서 입증서류의 소멸시효를 다시 확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된 판결문과 강제집행신청서(법원에 접수하기 전 압류, 추심, 전부, 재산명시, 경매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음

## 32 경락대금완납증명서와 부동산 인도청구신청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회신

- 부동산 인도청구서와 소유권 이전된 등기부등본 또는 경락대금완납 증명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경우 초본 교부신청 가능

## 33 부동산(채권,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가능 여부

- 채권자가 부동산(채권,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에 의한 초본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발급 가능 여부

### 회신

- 가압류는 신청인이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절차를 취하기 위해 가압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당사자를 명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가압류신청서와 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제출할 경우 초본 교부가 가능

## 34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채권자가 채무자 '갑'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주차장 부지로 수용된다고 함
-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저당권 행사를 위해 압류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로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회신

- 「민법」 제342조에서 질권의 물상대위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0조에서 이 규정을 저당권에도 준용하고 있음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채권자는 물상대위권자로서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갑'의 수용보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35 공정증서에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공정증서와 재산명시신청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공정증서에 집행문이 꼭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지?

### 회신

- 종국 확정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 변제기일이 지난 공정증서 등은 그 자체만으로 집행권원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변제기일 전인 공정증서라면 집행문 부여가 필요
  -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집행문 없이도 가능

## 36 예전(2009년) 강제집행접수증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회신**

- 집행관 사무소의 접수증과 영수증도 돈을 내고 영수증까지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했을 것이므로, 다시 접수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온 것이라면 어떤 이유인지 민원인이 초본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입증해야 함

## 37 임의경매신청서, 근저당설정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 소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회신**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이라면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처럼 가능
- 다만, '근저당설정계약서'는 계약만 한 것이므로 불인정

※ 등기필증 : 등기를 완료한 때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
※ 등기필정보 :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 38 정정판결문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 본 판결(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정정 판결을 받음
- 지급명령의 판결문이 없이 정정판결문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회신**

- 확정판결문 정본과 정정판결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가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정정판결문만으로는 채무자의 초본 발급 불가
- 따라서, 확정판결문 정본과 정정판결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제출 시 초본 발급 가능

## 4 승계집행 관련 초본 교부신청

### 39 채권 승계집행신청에 따른 채무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회신**

- 판결문과 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승계집행신청서(법원에 접수 전 신청서)를 첨부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40 승계집행문 부여를 위한 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채권자가 판결문을 득한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기 위해 채무자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판결문과 승계집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제출하여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41 승계집행신청 관련 미성년자의 친권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판결문상 채무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승계집행신청
- 상속인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그 친권자는 이혼한 배우자임
- 승계집행 중 법원에서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초본발급을 요구했다고 주장
- 보정명령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승계집행은 보정명령이 안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 승계집행의 경우도 채무자의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상속인도 아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초본은 불가
- 친권자의 초본 교부신청을 위해서는 보정명령 등 법원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

## 42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위해 피고에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인 경우 초본 교부 신청

**회신**

- 이미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위하여 피고(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부여사실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다시 초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승계집행문 송달불능사실을 알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출력물을 첨부하면 초본 교부신청 가능

## 43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입증 자료

**회신**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 원채권계약서(판결문 등 집행권원)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채권양도통지서(반송, 보내고 14일 경과, 도달된 것 모두 가능)' 로 채무자 초본발급 가능
- (채권)승계집행부여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필요한데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신청서로 초본 발급 가능하도록 해석한 것임

## 44 승계집행 확정 전에 승계신청인이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승계집행 접수해서 진행중인 상태. 아직 승계집행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승계신청인이 다른 강제집행을 신청하고자 초본발급
- '원 판결문 + 승계집행 진행중인 출력물 + 강제집행신청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한지?

**회신**

- 승계집행이 결정되기 전에는 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기에 다른 강제집행신청은 불가능

## 5 공탁 관련 초본 교부신청

### 45 소송 승소금 지급을 위한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승소하여 판결 승소금을 수령하였으나, 소송당시 일부 소유자가 전출 간 상황이라 승소금 수령안내 안내문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경우 해당자들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수령할 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령할 자에게 승소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판결문과 함께 접수된 공탁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열람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46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공탁자의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이 발급이 가능한데,
-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탁자가 공탁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이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어 소송을 시작하려하는데 공탁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소송이 불가하다고 함
-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피공탁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47 주식대금 지불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회신**

- 회사는 퇴사한 직원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관계 증명서류(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와 '접수된 공탁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음

## 48 피공탁자 사망에 따라 해당 상속인 간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피공탁자가 사망, 그의 상속인 자녀 4명이 공탁금 수령대상
- 자녀1인이 수령신청 시 나머지 3명의 초본이 필요하다고 함
- 역시 공동상속인으로서 가능한지?

**회신**

- 공탁된 사항이 확인되고(공탁통지서),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가 제출되어, 사망자의 자녀가 공탁금 수령대상임이 확인된다면 상속인들 간 서로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49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신청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 가해자가 공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에 접수된 공탁신청서*(성명, 주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교통사고사실증명서(성명, 주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공탁신청서 원본 또는 접수 후 원본대조필 된 공탁신청서도 가능
- 공탁소 보정권고를 받은 경우(동일인 확인이 되어야 함)도 가능

## 50 공탁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 공탁신청서를 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이 가져올 경우 서면위임장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공탁신청서만으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서면위임장, 법원에 접수된 공탁신청서와 증명자료가 있어야 함

## 51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회신**

-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상속인 초본을 발급할 부분은 없음
- 공탁자는 공탁의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부분을 모두 한 것이고,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은 피공탁자가 할 몫이므로 공탁자가 피공탁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피공탁자의 상속인까지 초본을 발급할 부분은 아님

## 52 공탁관의 보정권고를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공탁이 접수되기 전이라고 하는데 보정권고를 받아 옴
-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라고 되어있고, 법원 공탁계 직원 등의 도장이 있는데,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가능. 법원에 속한 자의 직인이 있다면 어떤 직위인지는 관계없음

## 6 위임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 53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소속사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따라 주소보정명령서 등 입증자료, 신청자가 기관이고 방문자가 그 기관의 소속사원이라면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보정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소송 진행 중에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소속 사원은 별도의 위임장 없이 교부신청 할 수 있음

### 54 법원제출용 소송위임장을 등·초본 발급 위임장으로 인정 가능 여부

- 소송·비송·경매목적을 위하여 변호사사무실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등·초본을 발급할 경우, 등·초본 발급에 대한 서면위임장이 아닌, 법원에 제출할 소송위임장으로도 초본발급이 가능한지요?

**회신**

- 소송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장, 판결문 등의 증명자료에 소송수행자임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원제출용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초본 교부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음

### 55 주민등록표 등·초본 위임장 유효기간

-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등록표 등·초본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동의일로부터 몇개월로 인정해야 하는지?

**회신**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임한 날이 오래되었다면 위임자의 의사를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할 것임

## 56 소송대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판결문(사건이 종결됨)에 명시된 소송대리인이 접수되지 않은 재산명시신청서와 판결문(사건이 종결됨)을 가지고 채권자(원고)의 별도의 위임없이 채무자(피고)의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 회신

- 「민사소송법」 제90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으므로,
- 소송대리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신청을 위해 별도의 위임없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할 것임

## 57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의 위임장 접수시 담당자 유의사항

• 위임장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담당공무원 유의사항

### 회신

- 위임장은 위임하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된 바 이때 "서명"이란 자신의 성명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으로서 반드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다만 지장(손도장)은 불가
-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유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동 서식 유의사항 4호에 따라 위임장에 위임자의 세대주 성명란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와 전화로 확인하는 등 발급에 신중을 기해야 함

## 58 위임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분증 사본

- 법무사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방문
- 신분증 사본은 은행이 다른 업무를 위해 받아서 보관해둔 신분증 사본으로 보임
- 은행에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신분증 사본 종이에 은행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거부함에 따라 민원 발생
- 차라리 은행명 등 다른 것은 가리고, 신분증 부분만 다시 복사해온다면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줄 수도 있겠는데, 은행명 등 다른 사항이 적혀 있는 바,
- 제출한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다른 용도/목적이 명확하면 거부해야 맞는지?

### 회신

- 주민등록표 등·초본 위임용으로 신분증을 복사해 온 것이 아니고, 허위로 작성된 위임장으로 판단된다면 거부가능 및 추가 증빙자료 요구 가능

## 59 소송관계인 등·초본 발급 시 서면위임장 양식에 대하여

-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서면위임장은 어떠한 양식으로 해야 하는지?

### 회신

- 서면위임장의 서식은 정해진 것은 없음. 위임자 및 위임받는 자의 인적사항(서명 또는 날인), 위임한 내용 등이 포함된 위임장이면 가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에서도 위임자 및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원내용을 기재
- 단,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식이므로 같은 법 제29조제2항 서면위임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소송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장, 판결문 등의 증명자료에 소송위임자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첨부받을 필요는 없음

## 60 위임자의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 앞면만 확대 복사해온 경우

- 위임자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 앞면만 확대복사 해왔음
- 뒷면까지, 실제 크기대로 복사해와야 하지 않는지?

**회신**

- 신분증 첨부의 목적은 위임의사 확인이므로 뒷면은 필요치 않으며, 신분증 앞면 사본만으로 가능(확대·축소 여부도 관계없음)

# 7 기타 초본 교부신청

## 61 입증자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 보완 가능 여부

-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로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이 입증자료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내용증명으로 보완하는데, 이 내용증명의 반송 여부에 따라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가 달라지는지?

**회신**

- 입증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역할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반송 여부와 관계없으며, 다만, 도달이 확인되거나 발송후 14일 지났거나 반송된 경우 모두 인정 가능

## 62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회신**

-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은 판결문(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입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관계입증) 그리고 가압류신청서(해당 물건 가압류 서류)를 제출하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빚)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 ·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

## 63 가등기권자가 소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과 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유자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데,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과 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유자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가등기에는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으며, 내용상 담보가등기일지라도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유자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함

  ※ 가등기에는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와 소유권청구권 가등기가 있으며, 내용상 담보 가등기일지라도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음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가 경매신청을 했으면 이는 담보 가등기로 볼 수 있음

## 64 보전처분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1

-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방법은?

### 회신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제2호(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의 적용을 받아 가압류신청서와 명백한 이해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음
- 명백한 이해관계 자료란 법원의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만 인정

## 65 보전처분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2

- 카드회사에서 카드가입 신청서 및 연체내역서, 가압류신청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제2호로 채무자의 초본 교부 신청

**회신**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소(訴) 제기 전이나 소(訴)제기와 동시에 하는 것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이 없는 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보전처분 시 명백한 이해관계 사실 자료는 판결문 또는 공증인의 공정증서만 인정됨

## 66 개명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주소보정명령에 초본 발급 대상자는 "김철수"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표에는 "이철수"로 되어 있음
- 초본에는 대상자의 성명이 "김철수"에서 "이철수"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됨
- 이런 경우 보정명령서 상의 성명과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보정명령서상에 대상자의 성명이 명확하지 않다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불가
-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성명이 정정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제출한 보정명령서로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

## 67 채권자가 채무자의 성명과 사업장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방법

- 보정명령서상에 채무자의 성명과 사업장 주소만 있어서 초본을 발급 받지 못함. 채권압류를 위해서 초본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

-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그 주소는 사업장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대상자를 특정하여 조회할 수 있음
- 따라서 채권자에게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 68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소송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피고의 주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피고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은?

### 회신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것도 가능)와 소송사건을 법원에 접수한 근거서류(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원고와 피고의 성명이 기재된 출력물 사본 가능), 이해관계증명자료(법원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한 출력물의 피고 성명과 이해관계자료의 피고 성명이 일치하면 가능하며, 이해관계 증명자료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할 경우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69 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을 위해서는 정당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판결문 등을 받아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의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임

## 70 유체동산 압류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유체동산 압류를 위한 접수증과 집행비용영수증으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 회신

- 원칙적으로 집행관 사무소에서 발급한 강제집행 접수증과 집행권원 사용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가 가능하나,
- 영수증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용증명원 없이 강제집행 접수증과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명자료로 인정하여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8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 71 보정명령에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회신**

- 보정명령에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입증서류가 없는 한 발급 불가
  - 법원에 사실조회 요청 후 법원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 등을 첨부하여 보완 가능

### 72 보정기간 지난 보정명령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회신**

- 비록 보정명령서상 보정기간이 지난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초본 발급이 가능

### 73 보정명령에 성명의 한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회신**

-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 및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보정명령서상에 대상자의 성명에서 한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기관에서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74 이름만 있는 주소보정명령서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민원인이 가져온 법원의 보정명령서 상에 이름만 있고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 가능여부

**회신**

● 보정명령서에 이름만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법원발행)가 있어야 하며 민원인이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음
– 법원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보완 가능할 것

## 75 보정명령서의 대상자가 동명이인인 경우 처리 방법

**회신**

● 보정명령서에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전산조회 결과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원에 유선으로 통화하여 대상자의 다른 정보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입증서류(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로 대상자를 특정하여 발급

## 76 보정명령서를 증명자료로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이전에 말소되어 시스템상에서는 나오지가 않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등·초본 발급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보정명령으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복사하여 증명·발급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전산에도 입력한 후 전산발급도 가능함

## 77 법인 대표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1)

- 보정명령서 : 피고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해산-청산 상태
- 이렇더라도 법인 대표의 초본 교부가 가능한지?

**회신**

- 가능
- 보정명령에 대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
- 다만, 보정명령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하는 등 동일한 법인임이 확인되는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임

## 78 법인 대표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2)

- 보정명령서 : 피고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해산-청산 상태 아님
- 해산이나 청산이 아닌 경우에도 법인 대표의 초본이 가능한지?

**회신**

- 불가능 (보정명령에 법인명만 있는 경우)
- 가능 (보정명령에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이 있는 경우)

※ 소장각하명령(대법원 1997.5.19. 자 97마600)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함.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된 것임

## 79 보정명령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 보정명령서에 "채무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정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라고 되어 있음
- 피고경정을 위해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방법은?

**회신**

- 법원의 보정명령서에 채무자표시를 정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다면, 채무자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피고경정신청서와 제적등본, 보정명령서를 제출할 경우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80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 보정명령서에 "피고 망 ○○○(주민등록번호)의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음
- 이 보정명령서를 근거로 상속인들의 초본까지 요구하는 경우 초본 발급 가능 여부

**회신**

- 보정명령서상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만으로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필요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보정명령서를 제출하여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 81 주소보정명령서를 대리인이 가져왔을 때 초본발급 여부

- 소송 당사자(원고)의 남편이 대리로 주소보정명령서를 입증서류로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회신**

- 소송·비송·경매목적 수행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소송 당사자가 작성한 서면위임장, 주소보정명령서, 등·초본 교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할 경우 피고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 82 개인사업자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 방법

- 보정명령에 소송대리인 법무사 홍길동 기재되어 있음
- 법무사 직원이 방문하였는데 법무사가 개인사업자임
-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 작성 방법은?

**회신**

- 법인신청인에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란에 개인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직원은 방문자란에 작성

## 83 수용자가 원고로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보정명령서상에 원고가 수용자
- 위임으로 피고의 초본 발급 시 일반인들처럼 서면 위임장으로 가능한지?
- 별도 수용증명서가 첨부되고 용도도 확인되어야 하는지?

**회신**

- 별도 수용증명서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일반적인 경우처럼 서면위임장에 위임자, 위임받은 자, 위임내용 확인되면 가능

## 84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불가한 근거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따라서 주소보정명령서상에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령하고 있다면, 피고의 주소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할 수 있음(320p 참고)
  - 등본의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는 주소보정명령만으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발급은 부적절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목적 외에 이용·제공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령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만으로 피고 외에 세대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은 제공할 수 없음

## 85 보정명령서와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문서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원고가 피고의 성명과 사업장 주소만 기재된 보정명령서와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여 초본 요청

### 회신

-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주소는 사업장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대상자를 특정하여 조회할 수 있음
- 따라서 채권자가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세무서로부터 채무자 자료를 확보했다면 세무서의 회신문서의 수령 주체가 법원이므로 법원에서는 이 문서를 기초로 채무자에 대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는 그에 따라 초본 발급 가능

## 86 보정명령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이해관계인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보정명령서(채무자 성명과 주민등록상 전입된 적이 없는 주소)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기부등본(주민등록상 전입 확인된 주소)로 등기부등본 상 채무자의 초본 요구

### 회신

-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려면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그 주소는 사업장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대상자를 특정하여 조회할 수 있음
- 주소보정명령서 상의 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서, 별도의 서류(등기부등본 등)에서 전입된 적이 있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

## 87 보정명령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초본 교부

- 보정명령서에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부) 제출을 요구하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될 경우 보정명령서 보완 없이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회신**

- 가능
- 보정명령서에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부) 제출을 요구하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될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대상자가 특정되므로 보정명령서 보완 없이 초본 교부신청 가능

## 88 보정명령서 상 신청인이 대한민국일 경우

- 해군본부에서 신청인이 대한민국인 보정명령서와 협조공문으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요청
- 신청인이 대한민국이 되는데 신청서상 직인 날인 방법은?
- 증명자료인 보정명령서가 인터넷 출력물이라면 원본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해군본부의 공익법무관이 원고가 대한민국인 소송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경우 보정명령서로 초본 요청 가능.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됨
- 보정명령서의 원고가 '대한민국'인 경우 신청서의 신청인(법인) 직인 날인은 생략할 수 있음
- 전자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보정명령서를 원본으로 볼 수 있음.

## 9 서면위임장에 대한 이해

### 서면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련)

□ 서면위임장의 서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위임자 및 위임받는 자의 인적사항(서명 또는 날인), 위임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에서도 위임자 및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원내용을 기재

※ 전산출력물인 서면위임장도 수리 가능

□ 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은 사용할 수 없음

□ 소송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장, 판결문 등의 증명자료에 소송수행자(대리인)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음

□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원 등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요청한다면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능하나, 별지 제7호서식상에 방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입하고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방문자가 법인직원(법무사, 변호사 사무소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서면위임장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의 교부신청에 대한 위임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포괄적인 위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서면위임장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위한 위임사실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제출받아 보관하고 돌려주지 않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과 관련한 서면위임장의 도장이 위임자와 전혀 관계없는 인영이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법인인감증명서나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제 3 절

#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1 증명자료 및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증명자료**

-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기관(보장시설, 공단, 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공문서

**□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법령 예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도시개발법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3.「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 한국장학재단법률 제50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등 : 행정안전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 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응급의료법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89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서류의 발급신청)를 적용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는 토지 등을 수용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수행자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의해 교부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함

### 90 보상관련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및 공용발급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의하여 OO지방국토관리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서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OO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보상전문기관도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할 수 있음
  ※ 다만, 업무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 다만, 공용발급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다면 면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인가 결정 서류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8호 포함)을 사용하여 고시된 대상자에 대하여 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 91 공사, 공단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 공사나 공단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과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이 필요함
- 이때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시 공단이나 공사의 직원이 방문 할 경우 개인신청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신청으로 해야하는지?
- 또한 법인으로 신청 시 대표자의 서명 또는 인은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시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시 법인 신청란에 작성하며,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증명자료로 첨부하는 경우 신청서식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략 가능

## 92 공단(공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요청 시 신청절차 및 공용발급 여부

-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사원증이나 신분증의 확인없이 공문으로 공용발급 가능한지?

### 회신

- 공사(공단)의 개별법에 무료로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용발급이 가능
- 이 경우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 및 그 필요사유를 명시한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된 문서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93 토지수용재결서만으로 토지소유자의 초본발급 가능여부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및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를 적용하여 토지수용재결서만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초본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를 적용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수행자로서 기관장 명의의 공문 요청시 초본 발급 가능

## 94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보존등기를 위해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보존등기를 위해 보존등기신청서, 사업시행인가서, 조합등기사항증명서, 조합원명부로 조합원의 초본 발급을 신청함.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구역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들이 '재건축'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자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95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추진 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한지 여부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요청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
- 이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라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로 토지 소유자의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함

# 제 4 절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1 증명자료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증명자료
  - 반송된 내용증명 + 판결문
  - 반송된 내용증명 +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 상속관련

1.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위한 초본교부 신청
   = 제적등본 + 등기부등본 + 상속등기신청서
   (상속인 중 1인이 타 상속인의 초본교부 신청 가능)
2. 대위상속등기 : 채무자가 사망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등기시키는 것
   = 소유권이전(대위등기)등기신청서 + 이해관계 입증서류(판결문, 계약서, 차용증 등)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채권자가 상속자의 초본교부신청 가능)

**□ 영 별표2 제3호에 규정된 자(금융회사 등)**

- 증명자료(별지 제7호서식)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있는 계약서 등 채권, 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 (판결문 포함) +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
- 증명자료(별지 제10호서식)
  -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기관의 장 (지점, 지회 등의 장을 포함)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

**□ 영 별표2 제4호에 규정된 자(개인 및 법인)**

- 증명자료(별지 제7호서식)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 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판결문 포함) + 반송된 내용증명
- 증명자료(별지 제11호서식)
  - 채권,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 반송된 내용증명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96 소유권이전 판결문으로 초본 교부 신청

**회신**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강제집행과 상관이 없으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조정조서 등 판결문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법 제29조제2항제6호)

  ※ 등기실무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각각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함

### 97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다른 공유자 초본 교부 신청

- 공유물분할 판결이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등기를 위해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초본교부신청 시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는?

**회신**

- 공유물분할 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공유자에게 보낸 반송된 내용증명 첨부 불요)

  ※ 공유분할판결의 주문에는 특정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없지만, 각 공유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등기(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등기실무임 (선례 3-556)

  ※ 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닌 형성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판결에 해당하고 따라서 각 공유자는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98 대위상속등기를 위한 초본 교부 신청

**회신**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으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대위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판결문과 부동산소유자의 상속인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위상속등기신청서를 첨부하면 반송된 내용증명 제출없이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 가능

## 99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상속인 1인이 법정상속등기를 위하여 타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하려면 법정상속등기 신청서와 혈연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가능

## 100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 아버님은 2000년에 사망, 어머니는 2011년에 사망, 형님은 2년 전에 사망
- 어머니 명의로 시골에 집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수와 조카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 소유권 이전을 위해 형수와 조카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방법은?

**회신**

- 사망자(부친, 형님)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과 그리고 등기부등본, 법정상속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형수와 조카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가능

## 101 사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회신**

- 사망자의 상속인 중 배우자와 1순위(직계비속) 및 2순위(직계존속)가 없고 선순위로 3순위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법정상속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망한 주민등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가능
  ※「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 관련 페이지 참고(p.185, 186)

## 102 공동소유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공동명의의 지분중 일부의 지분을 구입하였고, 공동명의의 지분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나머지 지분의 구입을 위해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로 등기를 보냈으나 이사하였다고 반송되었음
- 공동지분권자에게 꼭 연락해서 나머지 지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공동소유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방법은?

**회신**

- 토지 등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도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유자 주소로 보내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103 임대아파트 계약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회신**

- 임대주택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1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임대계약서, 혈연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타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104 부모님 사망에 따른 은행예금을 찾기위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방법은?

- 모(母)가 돌아가셨는데, 모(母)의 은행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이에 1순위 상속인 1인이 다른 1순위 상속인의 초본을 교부신청하려고 하는데,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

- 사망자의 예금 인출과 관련하여 상속인 1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상속인조회서비스를 신청하여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통보서와 은행권의 예금지급의뢰서(=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 대표상속인 지정 및 손해담보부약정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105 토지공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 전체 71평 중 토지의 69평은 A가 소유자, 2평은 B가 소유자
- A가 부동산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공유자 B가 사망함
- A가 B의 상속인의 초본을 교부신청하고자 함

###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로서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을 위해 사망한 토지공유자의 상속인의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으며,
- 이때 사망한 토지공유자의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토지공유자임을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사망한 토지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송/도달/14일 경과한 것 모두 인정) 사망한 토지공유자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06 토지공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 토지공유자 중 1인이 토지매매를 위하여 등기부등본 상 토지공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신청 시 가능 여부

### 회신

- 수인의 토지공유자 중 1인이 토지매매 등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에 토지공유자임이 기재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 토지의 공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부동산의 권리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유대상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07 차량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회신**

- 상속인 중 1인이 차량이전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자동차 등록원부를 제출할 경우 다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108 차량 폐차를 위한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 사망한 형님 A(직계 및 배우자 없음)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 폐차시에 상속인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함
- 형제 중 역시 사망한 누나 B가 있는데, 그 자녀의 초본 발급 문의
- 공동상속인으로서 가능할지?

**회신**

- 폐차 관련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제출하는 경우 사망한 누나 B의 공동상속인 초본 발급가능
- A의 상속 1순위자인 B 사망시, B의 1순위 상속자가 B상속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음

## 109 채권자가 대위등기 신청을 위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회신**

-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재산과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되므로(「민법」 제1005 내지 제1007조), 그 채권자는 그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이해관계가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초본발급 시
  - 소송수행상 필요한 경우(법 제29조 제2항 제2호)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승계집행신청서 + 집행권원자료(판결문 등)
  -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법 제29조 제2항 제6호) : 이해관계자료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대위상속등기신청서

    ※ 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가 없으므로 반송된 내용증명 불필요

## 110 대위등기의 비송사건 여부

• 법무사가 등기 및 대위등기가 비송이라며 위임에 의해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의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에 따른 대위의 신청은 채권자가 채권의 기한 전에 신청하는 것이고, 대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법원의 대위신청 허가 등에 따른 대위권이 있을 때 등기를 신청하는 것에 해당됨
-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대위등기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제6호에 따른 것으로, 위임하여 발급받을 수 없으나 등기소의 보정명령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위임가능

## 111 근저당설정(임대차) 계약서로 경매신청 시 소유자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회신**

- 근저당설정계약서 + 경매신청서 : 불가
  –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 + 경매신청서'로 소유자 초본발급 가능
- 임대차계약서 + 경매신청서 : 불가
  – '전세권설정된 등기부등본 + 경매신청서'로 소유자 초본발급 가능

## 112 전세권설정권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 1988년 전세권설정이 아직도 등기부에 남아있음

• 전세권설정권자는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

**회신**

- '전세권설정된 등기부등본 + 사망한 전세권설정권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의 초본발급 가능
  ※ 부동산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므로 사망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이 때 내용증명은 반송/도달/14일 경과된 것 모두 인정

## 113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 근저당권자(=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아 소유자가 근저당 말소소송을 접수한 후, 근저당권자의 사망사실을 확인

### 회신

- 근저당 설정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사망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출할 경우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인 자의 초본발급 가능

  ※ 부동산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므로 사망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이 때 내용증명은 사망자 주소로 보내서 반송/도달/14일 경과된 것 모두 인정

## 114 물건 소유자가 근저당권자 등의 초본 교부 신청

-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을 해제하고자 소유자가 해당권자(채권자)의 초본발급.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
- 채무자가 채무부존재에 대한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보냈고 그로서 채권자에게 채무부존재에 대한 확답 또는 확인을 받고자 함
-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과 그 채무의 부존재와 근저당권해지를 요구하는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초본발급 가능한지?

### 회신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과 반송된 내용증명 첨부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15 본인 소유의 땅을 침범한 건물주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본인 소유의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사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보아 건물 소유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에 포함될 수 있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해당 민원인의 땅에 건물이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 등기부등본, 지적현황측량성과도(한국국토정보공사 발행),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여 땅을 침범한 건물주의 초본 발급 가능

## 3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116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1)

- 여러차례 채권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양수계약서(채권 양도양수 A→B→C에게 넘어간 각각의 양도양수계약서) 모두가 첨부될 필요는 없고 마지막 채권채무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최종 양도양수계약서만 첨부되면 초본발급이 되는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의거하여, 채권양도의 경우 입증서류는 원 계약서(원채권자와 원채무자간 계약서 등)와 최종 양도양수사실을 밝히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그리고 양도통지서(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반송되었다면 가능)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 양도통지는 양도인, 양수인 모두 가능

### 117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2)

**회신**

- 주민등록제도상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는 '원 계약서(원 채권자와 원 채무자 표시), 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내 반송된 양도통지서가 있다면 이를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인정)'를 제출하여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18 당사자 표시변경 신청으로 채무자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 민원인은 은행을 대리하는 변호사로,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한 상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소보정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음
- 주소보정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니,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 이에 채무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파악하였고, 채무자가 사망하여 당연 상속이 개시되었고, 1순위 상속인들(배우자, 자녀들)을 상대로 당사자 표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당사자를 채무자들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증명자료는?

### 회신

- 보정명령,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당사자 표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인들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19 보험금 수령자가 사망자의 말소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사망한 보험계약자 乙과 제3자 관계인 보험금수령인 甲이 보험계약서를 근거로 사망한 보험계약자의 말소자초본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제3자(보험금 수령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사망자를 잠재적 채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채권·채무관계 등'에 해당하여 보험금수령자는 사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20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체납자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

###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전단 관련(별표)제출서류에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한전과 사용자 사이에는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의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사용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사용료 체납내역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이해관계서류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자료(전기요금 체납내역 관련 자료, 체납내용,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고객종합정보내역서 등)와 반송된 내용증명(제29조제2항제6호)을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 가능
- 다만,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입증서류'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임

## 121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 초본 발급

- 제2금융권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했는데,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을 변제하라는 통지서가 통보됨
- 주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관계로, 주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고자 하는데 방법은?

### 회신

- 연대보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주채무자에게 보낸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주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22 주주총회 관련 초본 신청 가능 여부

-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사건본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들에게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고 반송이 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권채무관계를 알 수 있는 증명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서는 임원변경을 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는 법원의 결정으로서 그 서류만으로는 쌍방의 채권·채무관계를 나타내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 123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체납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상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 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판결문 등 포함)' 이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은 약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본인이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청서는 쌍방간 계약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바,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와 반송된 우편물(또는 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하면 체납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24 개인의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초본 교부 신청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제4호에는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입법취지는 채권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그 주민등록표 초본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임
-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의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며, 다만, 법인인 경우(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간 등)에는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법 제29조제2항제2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금액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증서류가 갖추어지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125 제3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A와 B는 채권채무관계임. A가 채권자이고, B는 채무자임
- A는 B에게 약속어음을 받음과 동시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B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OO아파트 101동 101호에 거주하고 있음
- A는 B의 전세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위해 임대인의 초본을 교부신청하고자 하는데 방법은?

**회신**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입증자료(전세계약서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세금 등을 압류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가능

## 126 채권자 사망시, 1순위 상속자가 채권승계 결정없이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 채권자 사망시, 1순위 상속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채권승계 결정없이도 채권자가 하듯이 채무자 초본발급 가능한지?

**회신**

- 가능. 채권승계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도 채권자의 1순위 상속자는 채무자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127 신용회복기금이 제도권 금융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신용회복기금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적으로 대부업체도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음

## 128 대부업체의 초본 교부 신청

- 대부업체 중에서도 신용회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는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규정된 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

-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부업체의 채권 매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매입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대부업체가 신용회복 지원사업자임을 증명할 입증자료가 현재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협약기관으로 조회되더라도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대부업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용 불가

## 129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여 반송된 내용증명서가 없는 경우 초본 교부 신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8호 다목에 따라 금융회사의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여 반송된 우편물이 없을시 송달불능확인서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가 가능한데,
- 금융회사 이외의 개인 및 법인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 회신

- 금융회사 이외의 개인 및 법인의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터넷 우체국 출력서가 첨부된 내용증명과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가능

## 13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서 변제기일이 미도래시,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상실을 명시해야 한다는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상실 표기없이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에 '0000.00.00.'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기재시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기타 란에 수기로 '기한의 이익상실' 기재후 직원개인 도장 날인시 발급여부
- 년 월 일 이라는 날짜 기재없이 "기한의 이익상실"이라는 문구 첨부시 다른 문제가 없다면 발급 가능한지

### 회신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이해관계내용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수정, 추가로 기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할 것임
  * 변제기일 이전에 기한의 이익상실의 사유로 초본 교부신청하기 위해서는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상실을 기재해야 함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반드시 표기되지 않아도 가능

## 131 우편물 발송확인서를 통한 초본 교부 신청

- 우편물 1차 발송일이 2013.3.28.이고, 2차 발송일이 2013.4.8.인 경우 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날은?

**회신**

- 우편물발송확인서는 우편물 1차 발송 후 총 15일의 기간 경과 후에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발송일 당일은 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우편물 발송일이 2013.3.28.(1차), 2013.4.8.(2차)인 경우 초본발급 요청 가능한 일자는 2013.4.13.이나 해당일이 토요일이므로 2013.4.15.에 초본신청 가능

  ※ 1차 발송과 2차 발송은 10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함. 1차 발송 후 15일이 경과하였다면, 2차 발송일 후 바로 신청 가능

## 132 우편물발송확인서 발송기관 문의

- 우편물발송확인서의 1차발송과 2차발송이 다른 기관에서 발송한 경우 인정을 할 수 있는지?
- 원 채권자인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1차 발송하고, 1차 발송 후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정보회사에서 2차 발송이라고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한지?

**회신**

- 불가. 우편물발송확인서 상의 1차 발송(시행규칙 개정 2012.6.7. 이후 발송분에 한함)과 2차 발송이 동일한 우편물발송기관에서 발송된 것이어야 함
- 신용정보회사가 수탁을 받고 채권추심을 위해 초본을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초본을 필요로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우편물을 2회 이상 발송하여야 함(이때, 우편물 발송은 신용정보회사가 직접 발송할 수도 있고,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우편물발송 DM기관이 발송할 수도 있음)

## 133 개인회생 실효에 따른 채무자의 초본 교부 신청

- 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꾸준히 입금을 하던 중 미납 등 이유로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실효한 경우
- 채권자 채무자에게 남은 금액에 대해 추심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개인회생을 실효한 경우 채권자가 개인회생폐지확정결정문,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할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34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이사간 주소지로 발송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채권자가 A라는 주소로 내용증명 보냈고, 이 내용증명이 B주소로 배송이 되었다면 우체국 사이트에서 등기번호 등으로 A주소에서 B주소로 배달된 것이 확인되는 출력물 가지고 오면 반송으로 인정

## 135 내용증명의 보완 역할

- 내용증명은 채권채무 입증자료의 흠결사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 채무자가 사망하였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은 필요없으나, 입증자료가 미흡한 경우라면 내용증명이 필요한 것인지?
- 보완역할의 내용증명도 반송되어야 하는지?

**회신**

- 입증자료가 미흡한 경우는 사망자나 거주불명 등록자라도 해도 내용증명으로 보완해야 할 것임
  ※ 입증자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보낸 내용증명은 '반송된 것/보내고 14일 경과/도달된 것' 모두 다 인정 가능

## 136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가능 여부

- 판결 전에 보낸 '반송된 내용증명' 인정여부?
- 변제기일 이전에 보낸 '반송된 내용증명' 인정여부?

**회신**

- 판결문과 판결 이전에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가능

● 변제기일 지난 이후에 변제기일 이전에 보낸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오면 인정할 수 있음
※ 예) 차용증의 변제기일 4월말, 내용증명을 3월에 발송(반송됨), 변제기일이 지난 5월에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37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초본 교부 신청

-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과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채무자 초본을 교부신청함
-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는 신용정보회사처럼 위수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서가 없고, 제10호서식을 통해 가져오는 것들은 농협의 채권을 매입한 자기채권이라고 주장
- 농협자산관리회사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과 반송된 내용증명이나 반송된 우편물만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통해 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위탁자(농협)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서가 불필요하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직인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서를 첨부해야 함

## 138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의 친권자 초본 교부 신청

- A : 채무자(망자), B : 채권자
  갑 : A의 전남편 (을의 친권자)　을 : A와 갑의 사이의 친자
- "채무자 A(여)"가 사망하여 "채권자인 B"가 보정명령서를 들고와서 채무자 A의 상속인의 초본을 발급 요구
- 그런데 초본 교부 대상자로 A의 전남편인 "갑"의 초본을 요구함
- 상속 1순위인 "을(A의 자녀)"이 미성년자(13세)이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친권자로 지정되어있는 "갑"의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

### 회신

● '갑'은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바, 채권자(B)와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채권자(B)는 '갑'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없음

## 139 주주총회 개최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한 주주의 초본 교부 신청

- 주식회사의 소액주주가 회사에 통보없이 이사를 하여 주주총회 개최 알림 및 배당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음
- 주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주명부에 남아 있는데, 주주의 현주거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발급이나 열람을 할 수 있는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회사와 소액주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본 민원의 내용에서 회사는 소액주주에게 배당금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접수된 공탁신청서와 명백한 이해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주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40 인접 토지소유자의 초본 교부 신청

-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행사 중 문제가 발생함
- 토지가 등록된 도면인 지적도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해당 법령에 의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며, 권리행사를 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알고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한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으나,
- 민원인과 인접 토지소유자와는 채권, 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원인이 인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 불가

## 141 거래장의 인정 여부

• 거래장만으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거래장은 단순히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사실을 입증 할 수 없으므로 거래장 만으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음
- 이 경우 거래에 관한 계약서, 미수금 현황을 입증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정당한 이해관계자 등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42 매매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회신**

-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불가하며, 매매계약서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을 입증자료로 하여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43 10년이 지난 차용증으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민원인이 1995.12.31.자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

• 내용에는 1996년에 1차상환, 1997년 3월에 2차상환, 1997년 6월에 3차상환하기로 되어있음. 이 경우 차용증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차용증으로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다만, 소멸시효 중단사유(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무자의 승인 등)가 있을 경우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되므로 10년이 지난 차용증으로는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확히 따져서 판단해야 할 것임

## 144 채권양도와 관련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시 입증 자료

### 회신

- 채권을 법적으로 양도받은 채권관리 전문업체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인정되므로, 반송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가능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양수인이 채무자 초본발급
  ※ 원 이해관계서류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반송된 채권양도통지서(제도권 금융회사 외라면 반송된 내용증명)
-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양수인이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위한 채무자 초본발급
  ※ 집행권원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채권양도양수통지서(모든 우편형식 가능)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참고사항**

**소멸시효(消滅時效)**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권을 청구하여 변제받지 못한 채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본다.
- 소멸시효의 기간
  - 10년 : 채권(일반적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5년 : 상사채권
  - 3년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주로 전문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
  - 1년 : 숙박료, 동산 사용료, 입장료, 주로 단순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
    ※ 상사채권 및 단기소멸시효 채권의 구체적 기간은 민법 제163조, 164조, 상법 제46조, 수표법 제51조, 어음법 제70조에서 확인
-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는 중단이 있으면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
  - 중단사유 : ① (재판상)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채무자의) 승인
- 소멸시효의 기준일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이므로 금전 등의 거래는 변제기일로부터 시효를 기산
- 상사시효(상사채권)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의 3년, 1년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나 상행위와 유사한 것은 민법 적용
  - 주요 상사채권
    ①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
    ②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③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④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⑤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 기타 법상 시효
  - 수표 :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 어음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
    ②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부도일자),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 145 차용증, 각서 등에 변제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증명자료 중 차용증, 각서 등에 변제기일이 일람출급이라고 명시된 경우에 초본발급 가능 여부

**회신**

- 일람출급이란 지급을 위한 제시와 그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된 날을 만기로 보고 있음. 예를들어 수표(당좌수표,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와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일람출급식임
- 따라서 각서, 차용증 등의 증명자료에 일람출급으로 명시되어 있는 증명자료와 규칙 제7호서식으로 정당한 이해관계자는 초본을 발급 교부신청 가능

## 146 채무자의 근저당설정권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 채권자 A가 채무자 부동산의 또다른 근저당설정권자 C의 초본 교부신청

**회신**

- 채권자(A)와 채무자의 근저당설정권자(C)는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음

## 147 공정증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가능여부

**회신**

- 채권·채무의 이해관계 입증자료인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등·초본 발급은 불가하며, 다만, 채무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등·초본 발급 가능
- 이때에도 공정증서만으로는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을 입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주소보정 명령서 등을 증명자료로 추가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이 가능

## 148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자가 소유자의 초본발급 가능 여부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설정이 된 건물의 소유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불가하며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 이행을 위한 의사전달수단인 내용증명이 함께 입증자료로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

## 149 채무자가 채권자의 등·초본을 발급

• 채무자가 차용증(기타 입증자료)을 가지고 채권자의 초본을 교부신청하러 방문, 채무자가 채권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회신**

- 채권·채무의 정당한 이해관계인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에 대하여 교부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원의 접수인이 나와 있는 공탁신청서 등과 이해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초본을 교부받는 것이 가능

## 150 채권·채무관계에서 변제기일 경과전 초본발급(영 별표2의 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 변제기일이 지나지 않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가능 여부

**회신**

- 계약당사자간의 관련 계약서(약관 등)에 약정일에 약정금액 등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도록 하고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되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로 신청할 경우에 변제기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명시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관계기관장이 발급하였다면 초본발급 가능

## 151 물품구입 할부계약 및 카드결제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여부

• 물품구입 할부계약 및 카드결제와 관련한 채권·채무로서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여부

### 회신

- 거래약관(약정) 또는 관련 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채권자가 채권·채무관계(변제기일 미도래 포함)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52 할부금 등 변제기일 이전에 초본발급 가능 여부

• 변제기일 이전에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상실로 주민등록표의 초본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민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음
- 그러나 「민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 등을 들고 있으나, 그 밖에도 기한 이익의 상실을 특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할부금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는 할부금을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연체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할 경우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2회 이상 연속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도 그 지체된 할부금이 할부가격의 1/10이 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고, 또한 매수인이 지체하고 있는 할부금이 매매대금의 1/10을 넘는다 해도 계속해서 2회이상 지체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게 됨
-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입증할 수 있으면 변제기일 전에 초본발급은 할 수 있음

**참고사항**

**1. 기한(期限)**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나 차금을 2009.10.1.까지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면 발생이 확실한 2009.10.1.은 기한이 되며
- 특히,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을 시기(始期)라 하고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을 종기(終期)라 한다.

**2. 기한의 이익**

- 기한을 붙여 법률효과를 제한함으로써, 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매매대금을 2009.10.1.까지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했다면 그 때까지는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이다.
  - 대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민법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153조 제1항)

**3. 기한의 이익의 포기**

-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153조 2항)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하여도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이자부 소비대차(이자가 있는 대출)의 채무자는 이행기까지(변제기가 아님)의 이자를 지급하여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 다만, 할부계약의 매수인은 기한이 되기 전에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고, 이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금액은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4. 기한의 이익의 상실**

-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이행의 유예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고 변제케 한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자는 채권자의 기한 전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 법률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민법 제388조)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민법 제388조) ③ 채무자의 파산(파산법 제16조)
  - ④ 할부 매수인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⑤ 매수인이 해외에 이주하는 경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 15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할 내용

-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채무자 인적사항과 채무금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초본발급이 가능한지?

### 회신

- 신청서식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기재사항 누락 등)에는 초본을 발급할 수 없음.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 요건이 갖추어진 후 발급하여야 할 것임

## 154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상에서의 변제기일 문제

• 금융회사(카드회사) 직원이 가져온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서는 변제기일 도래여부를 따지지 않는지?

**회신**

- 서식 상에 변제기일 항목은 채워져야만 하며, 계약당사자간의 관련 계약서(약관)에 약정일에 약정금액 등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도록 하고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되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변제기일이 경과전이라도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상실을 명시하여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법인의 장이 발급하였다면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5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은 어떤 경우에 작성되는지

• 신청용도가 이혼신고용, 공탁신청용 등 채권채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변제기일, 금액 등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회신**

- 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은 이혼신고용, 공탁신청용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해당 서식으로 이해당사자의 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상의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교부 가능

## 156 연대보증인끼리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연대보증인끼리 초본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나,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만일 어느 한 연대보증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경우라면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 관계인의 주소를 알기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증명자료로 첨부시 가능

## 157 채무자 부인의 초본발급 여부

•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채무자의 유체동산공동소유자인 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회신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인은 채무의 직접책임이 없으므로 불가하나,
- 채무의 법적 책임이 채무자의 부인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법원의 판결 등)가 있다면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보아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가능

## 158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 권한 제3자 위임 여부

• 정당한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회신

-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초본발급을 할 수 없음
- 다만, 교통사고 등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159 파산재단(영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용

• 파산재단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초본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회신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법원에 의해 파산관재인이 지정되면 파산자와 관련된 재산권 등과 관련한 법적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 제4항에 대리인은 파산관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파산재단이 영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로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 초본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파산관재인이 확인하여 파산재단이 사용할 수 있음. 참고로 파산재단의 재직증명서도 파산관재인이 발급하여 주고 있음(파산관재인 대리인의 경우에도 가능)

## 160 내용증명서(또는 최고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의 초본발급

• 미거주로 반송된 내용증명서(또는 최고서)와 회사 자체에서 전산출력한 미수금현황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신청 가능 여부

### 회신

- 내용증명(또는 최고서)은 단지 어떠한 의사의 발송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해 줄 뿐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표의 초본 교부를 할 수 없음
- 다만, 운수주식회사가 고용한 운전자와 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매월 운전자로부터 받기로 계약을 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과 그 계약서와 미수금 현황을 입증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자 등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그리고 물품할부 계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초본교부 신청시에는 물품할부 계약시 작성한 거래약관에 따라 이해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 161 이해관계사실확인서(규칙 제10호서식)에 날인하는 인감은?

• 금융회사 등이 채권·채무관계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 시 날인해야 하는 등록된 인감은?

### 회신

- 금융회사 등이 채권·채무관계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의 이해관계사실 확인서에는 당해 법인의 장(지점·지사 및 지회 등의 장 포함)이 법원에 등록된 인감(법인인감 또는 지점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인감이 날인된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의 경우 규칙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위탁자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서가 불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위수탁 계약서 반드시 첨부

## 162 유동화전문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주민등록표 초본교부 관련

• 유동화전문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이해관계사실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0호 서식)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회신

- 유동화전문회사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초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0호 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탁계약서(계약서의 매수가 많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양 당사자 간 날인 또는 서명이 된 사본 일부로 확인 가능) 및 방문자의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규칙 제10호서식 신청기관 대표자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인감이 원칙이나, 위탁계약업체의 인감도 가능

## 163 신용정보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개인에게 위수탁받은 경우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 가능 여부

### 회신

- 시행일 : 2012년 1월 1일부터
- 신용정보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개인사업자, 일반법인에게 채권추심위탁 받아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0호서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0호서식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하여 직인을 날인하고, 신청기관에도 신용정보업자로 기재하여 신청 가능
  ※ 이 경우, 위수탁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함

## 164 신용정보업자의 채권 양도, 매입 가능 여부

### 회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는 부실채권 매입이나 양도가 불가능. 오직 채권추심에 대한 관리업무만 위·수탁 받을 수 있음

## 165 반송된 우편물 확인 여부

- 신용정보업체에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가지고 방문
- 반송된 우편물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인데 뜯어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회신**

- 내용도 당연히 확인해야 함. 동의를 구하고 확인하면 되겠음
  엉뚱한 내용을 보낸 것인지, 채권·채무내용 관련 내용을 맞게 보냈는지 등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함

## 166 변제기일 이전에 초본 교부 신청

- 변제기일이 지나지 않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신청가능한지?

**회신**

- 불가
-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나, "기일까지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이므로 변제기일 전이라면 집행문 없이는 불가
- 다만, 기한의 이익상실임이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되면 가능

## 167 채권자 2인끼리 초본 교부 신청

- 판결문. 원고가 2명. 채권압류신청을 하려고 하니, 다른 원고와 같이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함
- 채권압류신청서와 판결문으로 다른 원고(채권자)의 초본발급 가능한지?

**회신**

- 원고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진 않지만 일종의 공동소유 개념으로 보아 판결문과 강제집행신청서에 2명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
  ※ 강제집행으로 인한 권리실현과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인정

## 168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여부 1

• 계약서(성명, 주민번호, 주소 A), 내용증명을 계약서와 다른 주소 B로 보내어 반송된 경우

**회신**

- 계약서에 없는 주소 B로 보낸 주소가 채무자가 주민등록을 했던 주소이면 인정
- 계약서에 있는 주소 A로 보냈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어도 인정

## 169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여부 2

• 입증자료상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
①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송되었으나 주소는 주소이력상 확인이 안됨
② 입증자료에는 주소지 A로 되어 있고 이후 주소지 B로 내용증명을 발송함(주소지 B는 주소이력에 확인됨)

**회신**

① 입증자료에 주민번호가 있어서 특정이 되고, 기재된 주소로 보낸 것이라 채무자에게 보낸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 가능
② 가능

## 170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1

• 타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한 채무자가 두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음
• B업체에서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A업체에서 그 사실을 기한이익상실로 간주하여 초본 신청 가능한지?
(A대부업체에는 연체사실이 없고, 그 내용이 명시된 약관도 없음)

**회신**

- 가능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면 기한의 이익상실됨
  ※ 공정거래위원회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2호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기한의 이익 상실되는 것으로 명시됨
- 대부계약서 등 + 반송된 내용증명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증명 (법원 공고 등)로 채무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 채권자가 제시한 개별약관에 이 조건이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표준약관에 의하여 인정

## 171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2

- 채무자 A, 채무자 B에 대해 각각 규칙 제10호서식 작성
- A, B의 이름과 주민번호은 다르나 둘의 주소가 동일함
- 내용증명 수신인을 'A 외 1명' 으로 기재하여 1통만 보낸 경우 채권자가 A, B 초본 가능한지?

**회신**

- 봉투에 수신자 성명이 A만 적혀있더라도, 내용 안에라도 B에 대해서도 있다면 가능. 내용에도 없으면 불가

## 172 반송된 우편물에 채무 독촉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변제기일 경과)과 반송된 우편물(언제까지 신청하면 채무 감면혜택이 있다는 안내)
- 동 담당자가 우편물 내용에 '채무독촉' 내용과 변제기일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함
- 우편물의 내용에 채무독촉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회신**

- 내용물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독촉' 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채무 이해관계가 존재함과 그 대상자에게 보낸 후 반송되었음만 확인된다면 가능
- 시행규칙 별표 비고 3번에도 '반송된 내용증명에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음

## 173 등·초본 교부신청 시 통수 제한 가능 여부

- 이해관계인이 보정명령 등 입증자료로 등·초본 신청 시 2통 이상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회신**

- 주민등록법상 제한할 법적근거는 없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2통 이상도 가능

## 174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 A → B → C → D 양도양수 계약관계
- 원계약서(A와 채무자가 작성) + 채권양도양수계약서(C와 D가 작성) + D가 보낸 채권양도통지서를 가지고 초본발급 가능한데
  ① 채권양도통지서의 내용에 C → D 내용만 있으면 되는지, A → B → C → D 모두 있어야 하는지?
  ② 채권양도양수계약서(C와 D가 작성)가 없는 경우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양수계약 내용이 있으니 혹시 인정되는지?

**회신**

① C → D 내용만 있으면 가능
② 불가. '원 계약서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채권양도통지서' 제시해야 가능

## 175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발급

**회신**

- 〈판결문 등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승계집행신청서 또는 대위등기신청서〉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 승계집행신청은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지 않고 발급
- 대위등기신청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되어 주민번호 뒷자리를 생략하고 발급

## 176 등·초본의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제출

- 입증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지?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면 되는지?

**회신**

- 신청자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 갈음할 수 있으나, 이 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본인이나 가족의 경우엔 정보보유자로서 이 동의가 가능하지만, 제3자가 타인의 정보열람에 동의할 수는 없으므로 제3자는 직접 제출해야 함

## 177 채권 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 채권양도양수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는지?
- 민법에는 양도인이 통지하라 되어있는데, 양수인이 통지한 우편물도 가능한지?
- 양도인이 통지한 우편물을 양수인이 가져만 오는 것은?

**회신**

① 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경우 : 우편의 형식 불문하고 가능
(내용증명, 등기, 일반우편 모두 가능)
※ 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경우: 반드시 반송된 내용증명이어야 함

② 가능.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통지를 양수인이 하기로 하였다면 양수인이 통지한 우편물 인정

③ 가능. 두사람의 관계가 양도양수계약서에서 확인되므로 인정

## 178 대금지불한 공사 미이행으로 초본 발급

- (확약서) 리모델링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인적사항 등 있음
- (반송된 내용증명) 대금 지불했는데, 마무리공사를 하지 않았으니 언제까지 이행하라
- 채권·채무 관련 이해관계로서 초본발급 가능 여부?

**회신**

- 가능
- 계약이행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행지연한 부당이득이 생겼다고 봄
- 채무변제 불이행이나 물품대금 체납처럼 동일하게 볼 수 있음

## 179 세금계산서를 채권채무 입증자료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신**

- 불가
-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영수증일 뿐이고 부가자료이므로 이해관계 자료로 보기 어려움. 내용증명이 있어도 불가
- 단, 거래원장(매출원장), 견적서, 납품서 같은 별도 증명자료가 필요하며,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용 안내

## 180 주소와 주민번호로 특정되면 초본발급 가능한지 여부

• 보정명령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이름만 틀린 경우

**회신**

- 불가
-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 주소가 명확해야 함

## 181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초본 교부 신청

•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독촉을 받을 경우 원래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회신**

- 보증사실이 나타나는 계약서가 있고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반송된 내용증명 첨부 시 원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8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채권채무 입증자료에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같이 명시되어있을 때 법정대리인의 초본발급
- 판결문 : 피고-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성명이 함께 명시되어 있음
- 판결문과 반송된 내용증명 또는 강제집행신청서가 첨부되면 법정대리인의 초본도 가능한지?

### 회신

- 가능. 이해관계자료에 법정대리인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채무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초본 가능
- 미성년자가 채무자인 이해관계서류(핸드폰 요금 미납 등) 또는 판결문 등 + 가압류/강제집행신청서 또는 반송된 내용증명(미성년자만 나와있어도 가능) + 법정대리인 확인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채권자가 증명해야 함)
- 민법 상 법정대리인 취지가 재산권 행사(휴대폰 구매 등)에 그 동의를 받게 하는 것임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재산상 행사는 나중에 취소가 되며, 동의를 받았다면 그 의무의 귀속은 결국 법정대리인이 되고, 보증인처럼 봄

  ※ 다만, '채무를 발생시킨 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만 위의 경우처럼 법정대리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함

  ※ 원래 미성년자의 채무가 아니었던 채무의 상속·승계집행의 경우는 불가, '상속인의 친권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더 우선한다고 봄

  예) 채무자인 부가 사망. 미성년자녀에게 대위등기나 승계집행을 하면서 그의 친권자인 이혼한 모의 초본 신청 → 불가

## 183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진료비 계산서를 환자와 병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 만일 진료비 계산서를 정당한 자료로 인정한다면, 대상자 특정을 위한 보완 서류로 진료신청서 또는 내부전산망 화면 캡처본을 첨부하여 반송된 내용증명과 함께 초본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인 진료비계산서 상에 환자등록번호, 성명, 진료비, 미납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권·채무관계의 증빙서류로 볼 수 있음

- 다만, 성명만으로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미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신청서, 환자등록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확인 가능한 내부전산망 화면 캡처본(원본대조필을 한 것)을 통해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 신청서, 내부전산망 화면 캡처본(원본대조필 한 것)과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8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변제기 도래의 기준

- 만기일시상황(대출만료인 미도래) 조건의 대부거래계약에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변제기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초본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됨
- 대부회사에서 제출한 대부거래계약서에 매월 이자지급 약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약정일이 지남에 따른 이자지급에 대한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185 채권양도와 관련한 초본교부 신청

- A저축은행에서 B대부회사로 채권을 양도하였고, A저축은행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못함
- B대부회사에서 A회사의 보정명령서와 양도양수계약서, 원계약서를 제출하여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 회신

- 주소보정명령서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 초본 교부 가능

## 186 채권·채무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채무자 A는 물품을 신청하였고, 수령은 채무자의 회사 직원이며 남편인 B가 수령하였음
- 채권자 C는 B가 서명한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 A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 A와 회사 직원이며 남편인 B의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회신

- 채무자 A의 물품신청에 따라 채권자 B가 납품하였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면 물품신청서, 거래명세표, 반송된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채무자 A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
- 다만, 「민법」 제390조, 제391조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고 있어, 회사 직원인 B(이행보조자)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직원 B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음

## 187 신용정보업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과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의뢰서 등을 첨부하여 초본발급 가능 여부

- 개인에게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초본발급 신청 시, 위수탁계약서 대신 위임의뢰서를 첨부하여 초본발급이 가능한지?

### 회신

- 개인에게 채권추심위탁을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초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 등을 수탁받았음을 입증하는 위수탁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원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등을 수탁받았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임 의뢰서를 첨부하여 초본 발급 가능

## 18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상의 변제기일을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수정할 시 업무처리방법

- 변제기일이 채권소멸시효(10년)로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중단 사유 등으로 변제기일 수정 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변제기일 수정 후 날인한 경우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 변제기일 수정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상 기타 란에 소멸시효중단사유와 날짜기입만으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무자의 승인 등)가 있을 경우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되므로 10년이 지난 이해관계서류는 증빙자료(소멸시효 중단사유) 없이 변제기일만 수정 후 직인을 날인한 경우 초본 발급 불가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심사하지 않아도 되나 형식적 기재사항의 확인은 필요하고, 변제기일 이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기타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타란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날짜를 기입하면 충분하고 별도의 증빙서류를 처부하지 않아도 됨
  ※ 이 때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시행령 별표2 제3호의 금융기관에 있음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 채무자의 승인(일부변제, 이자지급) 등이며 내용증명만으로는 증빙자료로 불인정

## 189 가맹점계약서로 가맹본부(갑)에서 가맹점사업자(을)의 초본 발급 여부

**회신**

- 가맹점 본부의 계약서(단, 계약서상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미수금 등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와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90 상인회가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 한지 여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에 등록된 상인회가 방치된 구분 상가들을 상인회 관리 규정에 의해 건물 시설관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건물 구분상가 소유자들과 상인회 간에는 별도의 상가 위탁관리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건물의 관리 주체로서 건물 구분상가 방치 소유자들의 미납된 공용관리비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수하고자,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구분상가 방치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상인회가 구분상가 소유자의 초본을 발급하려면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 「전통시장법」 제65조제5항에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경비를 징수할 수 있음

- 상인회 등록증, 회원명부 등을 통하여 회원임을 확인한 경우, 상인회 등록증, 회원명부, 관리비 징수내역,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

## 191 병원의 미납 진료비 회수를 위한 초본 발급

-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 당사자 일방(채권·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대신, 연대보증인의 서명이 된 이해관계서류로 계약의 성립 여지가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 연대보증인의 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된 자료로 볼 수 있다면 채무자(환자)외에 연대보증인의 초본까지 교부신청할 수 있는지?

### 회신

-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대신해주는 보증채무는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약정(연대보증인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므로 이해관계서류로 인정
-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해보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진 사람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바, 연대보증인의 초본까지 교부신청 가능

## 192 이해관계사실서의 위임일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상의 계약일자와의 일치 여부

-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상에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임일자가 채권추심 계약기간 이후로 작성되어도 발급 가능한지?

### 회신

- 채권추심 위임계약서상에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임일자가 채권추심 계약기간 이후로 작성되어도 발급 가능

## 193 제3채무자의 초본 발급

- 대부회사(A)는 임차보증금(임대인 B)을 담보로 채무자(C)에게 대출을 해줌
- A는 채권회수를 위해 C를 발신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상 B의 주소로 B에게 C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A에게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됨

### 회신

- 대부회사(A)가 채무자(C)의 임차보증금(임대인 B)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양도양수계약서를 맺었고 이를 임대인(B)에게 통보하였거나, 질권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다면 C가 대출 미변제시 A는 B에게 변제요구를 할 수 있음
- 임대인(B)는 제3채무자로 임대인(B)와 채무자(C)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대부회사(A)와 채무자(C) 사이에 작성한 담보대출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또는 질권설정계약서 등) 서류, 반송된 내용증명서가 첨부되면 초본 교부 가능

## 194 부동산 가계약에 따른 은행 입금거래 내역 및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 A와 B가 부동산(A명의 아파트)을 중개업자C의 소개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가계약금 3백만원을 송금하였으나 A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가계약금 3백만원을 다시 돌려줌
- B가 A에게 가계약 당시의 주소지로 가계약금의 2배인 6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손해배상금 청구하는 내용증명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회신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계좌이체내역'은 갑이 을에게 금액을 송부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료일 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의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로 보기 어려움

## 195 원계약서(온라인대출서)에 대출자 성명만 기재, 채권양도통지서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원계약서(온라인대출서)에 채무자 인적사항 중 이름만 기재됨
-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양수인이 양도통지서 발송시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발송함
- 원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여 초본 신청

**회신**

- 불가
- 주민등록법상 채무자 초본 발급 관련 요건으로는 채권·채무관계를 나타내는 관련 자료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무금액, 서명 또는 날인유무 등의 요건이 갖춰진 자료여야 함
- 원계약서에 채무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면 양도통지서에 추가로 주소나 주민번호를 기재하였더라도 인정할 수 없음

### 196 변제기일이 없는 건축대금 지급확인서로 초본 발급 가능한지?

- 채권자는 건축대금 지급확인서(각서)의 변제기일을 공란으로 작성하였으며, 채무자에게 '14.5.31.까지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됨
- 채권자가 내용증명사 독촉한 '14.5.31.을 변제기일로 볼 수 있는지와 '14.5.31.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민법」 제387조에 따라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차용증 등에 변제기일이 없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보완이 가능함
-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14.5.31.을 변제기일로 볼 수 있으며, 변제기일 이전에는 채무자의 초본 발급 불가능

### 197 신용카드 회사에서 채무자의 초본 발급 신청시 해당 회사외 파견직 근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 방문 직원이 재직증명서 상 소속은 인력아웃소싱 회사이고 근무처는 해당 카드회사임. 이 재직증명서로 초본 발급 가능한지?

**회신**

- 금융기관 등(신용카드 회사 포함)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시 방문자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토록 하는 것은 정규직, 파견직 등 고용형태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해당 신용카드회사에서 근무자로 확인하고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이 가능하다면 해당 신용카드회사에 재직중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98 양육비 부담조서로 초본 교부신청

- 이혼 후 전남편이 양육비를 매월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입금되지 않음
- 양육비부담조서로 전 남편의 초본 신청

**회신**

- 양육비 부담조서는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작성해 주며, 양육비 부담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불가능
- 별도의 소송 절차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양육비 부담조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가능

### 199 유언공정증서에 있는 집행인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회신**

- 유언공정증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 첨부시 가능

## 4 임대인, 임차인간의 초본 교부신청

### 200 임대인이 월세 미납자 초본 교부신청

**회신**

- 「민법」 제640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비록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201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1)

-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있은 후에 임차인이 더이상 계약 연장을 원치 않아 임대인에게 본 사항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됨
-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6.9.)으로 기간 단축(1개월 전까지 → 2개월 전까지))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17363호('20.6.9.)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12.10.)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에 "제6조제1항에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반송될 경우, 계약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202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2)

- 임차인은 계약만료까지 3개월 가량 남았으며,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 변경
-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등 의무를 서로 미루고 있어 임차인은 3개월 후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함
- 임차인은 계약서상 임대인과 변경된 새 임대인 중 누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 임차인에게 변경된 임대인의 초본 발급교부가 가능하다면 변경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변경후 임대인에게 보낸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초본발급신청이 가능한지?

**회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주택의 양수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임
-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임대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내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은 주민등록상 주소여야 할 것임

## 203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발급 가능여부

-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할 수 없으나, 다만, 임차인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접수된 공탁신청서와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초본발급 가능

## 204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 임대차계약이 3개월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 초본을 교부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는?

**회신**

-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사망한 임대인과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 차용증 등의 채권·채무관계와는 달리 부동산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의사표시가 필요함
- 이때, 내용증명은 사망자 주소로 보낸 후 반송, 도달, 14일 경과된 것(우체국 보관 또는 폐기) 모두 인정

## 205 전세금 반환 후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발급 가능 여부

-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 상 임차등기를 하고, 계약만료 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졌으나 임차등기말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반환영수증을 입증자료로 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회신**

- 위의 입증서류(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에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 206 집수리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 임차인이 집수리 건으로 임대인(집주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함

**회신**

-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채권발생 후에 가능
- '수리비영수증 등 지불된 증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대한 이해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은 입증자료 없이 신청서식만으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심사하지 않아도 되나 형식적 기재사항은 확인 필요

□ 변제기일 이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기타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수기작성시(부분 수기작성 포함) 해당 금융기관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형식적 요건을 만족한다면 정당한 신청서로서 인정 가능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기관장 인을 신용정보회사의 직인으로 날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수탁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에 수정하여 추가로 기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감으로 날인토록 해야 할 것임

□ 내용증명과 이해관계사실확인서상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일치하나 채무금액이 상이한 경우, 입증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금융기관의 채권관리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위탁자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신청 가능(이때에는 위수탁 계약서 불필요)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신용정보회사의 직인 날인하여 교부신청 가능
(이때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위수탁계약서를 첨부해야 함)

※ 위수탁계약서 일반사항
위수탁계약서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6 채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 채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5조에 따르면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증명자료로서 판결문을 제출할 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가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소멸시효가 지난 판결문을 가지고 초본 발급신청하면 재판상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입증해야 인정

### 소멸시효 중단사유

**□ 재판상의 청구 (법원에 소송제기)**

-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
- 법원이 청구(소)를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원고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게 됨
- 기각되면 소멸시효의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과 같게 됨
- 위의 경우일지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절차에의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때에는 시효는 처음 재판상의 청구가 있는 때로 소급하여 중단

**□ 파산절차의 참가**

-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자기채권을 신고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1조)

**□ 지급명령 신청**

- 독촉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단,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므로,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만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 화해를 위한 소환**

• 제소전 민사분쟁에 관해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자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의 취지, 청구원인을 명시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화해를 신청하면 신청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화해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게 되는데, 소환장을 받고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최고**

•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최고라고 한다.
• 보통은 내용증명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야 시효가 중단된다.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 승인**

• 채무자가 지급확약서 또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면 작성해준 그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채무금의 일부변제, 이자지급, 담보제공 등

※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
• 중단된 시점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
• 중단된 이전에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 주 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음

## 7 반송된 내용증명에 대한 이해

### 반송된 내용증명

□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내용증명 반송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초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임

□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소 : 판결문, 차용증 상의 주소로 보내는 것이 원칙

□ 내용증명서를 판결문이나 지불각서의 주소로 보내지 않고, 채권자가 아는 주소로 보냈으나 반송되었을 경우, 보낸 주소가 채무자의 과거주소와 일치한다면 인정

□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 유효기간은 정당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간 이내로 볼 수 있고,
- 우체국에서 발송 후 그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므로 내용증명 효력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볼 수 있음(「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제54조, 제55조)

□ 내용증명 우편물 원본을 제출받아 사본을 복사한 뒤 내용 확인 후 보관하고, 원본은 민원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임

□ 반송된 내용증명은 그 겉봉투와 내용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원본대조필)도 가능

□ 내용증명을 '반송불요(반환 불필요)'로 보낸 경우, 우체국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 확인필요)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배달되지 않아 우체국에 보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등기우편 조회' 결과

□ 내용증명으로 이해관계서류 보완 가능 여부
- 차용증에 채권자 성명 없으면 : 내용증명으로 보완 가능
- 차용증에 변제기일 없으면 : 내용증명으로 보완 가능

※ 근거 : 「민법」 제387조제2항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차용증에 채무자 성명 없으면 : 내용증명으로 보완 불가
- 차용증에 채무금액 없으면 : 내용증명으로 보완 불가

# 제 5 절

# 가족간 발급

## 207 계모와 재혼자녀 간의 등·초본 발급

- A세대 : 세대주인 아버지, 세대주의 배우자인 계모는 세대원
- B세대 : 세대주인 성년자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와 제8항을 적용시켜 구분함
- 자녀가 아버지의 등·초본발급 :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으로 등·초본 모두 발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8항에 적용되어 초본만 가능
- 자녀가 계모의 등·초본발급 : 제29조제2항제5호에 적용되나 제8항에 따라서 아버지의 초본만 가능하고, 계모의 등·초본은 불가능

**참고사항**

- 아버지 생존
  - (자녀가 신청) 아버지가 세대주, 계모가 세대원 : 아버지의 초본만 가능
  - (자녀가 신청) 계모가 세대주, 아버지가 세대원 : 아버지·계모의 초본만 가능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계모의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나, 법 제29조제8항의 취지에 따라 초본만 발급 가능
  - (계모가 신청) 재혼자녀(타세대 세대주)의 등·초본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모두 가능
- 아버지 사망(계모가 재혼하기 전)
  - (자녀가 신청) 계모가 세대주 : 계모의 초본만 가능
  - (계모가 신청) 재혼자녀가 세대주 : 자녀의 등·초본 모두 가능
- 아버지 사망(계모가 재혼)
  - (자녀가 신청) 계모가 세대주 : 계모의 등·초본 모두 불가
  - (계모가 신청) 재혼자녀가 세대주 : 자녀의 등·초본 모두 불가
    → 계모의 재혼으로 계모와 재혼자녀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관계가 종료

**(근거)**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208 이혼한 부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전 남편이 전처의 실종신고를 위해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전처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자녀의 친권*이 父로 지정되어 있다면 전처의 실종신고를 위해 전 남편이 자녀의 명의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로 확인 가능

## 209 형제자매간의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 가능 여부

• 동일 가족인 형제자매간은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형제·자매 사이라 할지라도 위임장 없이 서로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불가(교부 대상자의 위임장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210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부대상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발급 대상자의 이름만 알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는지?

**회신**

● 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자격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신분확인이 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수 있음

## 211 상속 포기를 위한 조카의 삼촌 등본 신청

• 삼촌의 사망 및 사촌의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로 조카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조카가 상속포기를 위해 사망 말소된 삼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재산상속포기심판 청구서 등을 구비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 가능

## 212 시아버지와 이혼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회신**

- 이혼한 시어머니라도 자녀는 직계혈족에 해당되므로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며느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이 가능
  ※ 단, 이혼한 시어머니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

**참고사항**

- 주민등록 정보의 제한이유
  - 주민등록표에는 신분, 가족관계, 주소 등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헌법 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권 및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 가족간 발급의 제한 및 허용
  - 가족관계등록은 주소에 대한 의사주의를 채택하여 주소가 증명자료로 쓰이지 않으므로 가족관계 범위에 있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함
  - 그러나 주민등록은 주소에 대한 객관주의를 채택하여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하는 세대 중심으로 관리하며, 주소가 여러 가지 증명자료로 쓰이므로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가 아니면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
  - 사망자는 일반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되나 인격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특히 상속에 의해 상속자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세대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에 의해 주민등록 관계가 인정됨
-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하나 다음의 경우 주민등록표의 자료를 모두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세대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 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 따라서,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는 화상자료 및 기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열람 후 사본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처리절차에 따름

## 213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친권자 모가 부의 초본 교부 신청

- 미성년자와 동일세대원인 친권자 모가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부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회신**

- 불가. 동일세대인 친권자라는 것만으로 대신 신청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자녀의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여권 신청 등 자녀와 관계된 업무 중에서 아버지의 초본이 필요한 경우를 입증하고 자녀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가능

## 214 친권자인 모가 자녀를 계부에게 입양하기 위해 이혼한 부의 초본 교부 신청

- 친권자인 모가 만15세 미만 자녀를 계부에게 입양하려고 이혼한 부의 초본신청 가능한지?
- 법원을 거치는 입양신청 말고, 시청에 입양신고서를 낼 수도 있는데, 이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받으려 한다고 함

**회신**

- 입양신고서 첨부시 발급가능
-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처럼 동일하게 가능함
- 초본 발급으로 입양, 개명 등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은 관계된 자의 동의나 인감이 필요할 것인데 그 절차 진행을 위해서 주소확인이 필요하므로 해주는 것임

## 215 외국인 모가 아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외국인 모가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여 법적 보호자가 외국인 엄마만 있는 상황에서 비자 발급 등 업무를 위하여 자녀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1항에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원칙적으로 외국인인 배우자(어머니)의 경우 주민등록자(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가 아니므로 등·초본 교부 불가
- 다만, 친권자인 외국인 모가 그 자녀와 관계된 일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청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

# 제 6 절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 216 현지이주 말소자 초본 교부 신청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전산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현재 현지이주자 상태임
- 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자녀분이 방문하셔서 대상자의 현지이주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길 원함
- 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원장조회를 하니 구원장2는 확인이 되었음
- 하지만 세대별, 개인별 카드는 존재하지 않음. 구원장2를 통해 79.3.22. 우리동 전입기록(말소상태 아님) 마지막으로 확인됨
- 대상자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았음을 확인

**회신**

- 최종주소지 행정관청에서 전국조회 후 구원장2 및 거주여권 발급 회신을 근거로 주민등록 전산 입력을 하고,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 217 수감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수감자가 우편으로 본인의 등본을 발급 요청하였는데, 발급 가능 여부?

**회신**

- 수감자가 우편으로 주민등록표를 교부 신청할 때 그 등본을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으나, 교도소를 수신처로 교부할 수는 없음(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 p.178 참고)
- 또는, 수감자의 위임을 받은 교도소의 교도관이 수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거나(신분 확인 가능), 교도소에서 교도소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 시 발급 가능할 것임

## 218 수감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 수감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가능 여부
- 수감자가 이해관계자로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방법

**회신**

- 수감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에 의거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대리신청 하거나, 수감자 본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수신처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도소장이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능
- 또한 수감자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초본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면위임장, 수감증명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 219 등·초본 발급 위임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으나 위임하여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없음
-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로써 불가피한 사정(입원중, 외국체류, 수감 등)을 읍면동장이 확인한다면 예외적으로 위임하여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을 것임

## 220 현지이주말소자가 본인의 말소자초본 교부신청 방법

**회신**

- 현지이주말소자(재외국민이 아님에 주의)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재외공관(대사관 등)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면 가능하며,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에는 여권 등으로 신분확인 후 초본 교부신청 가능
  ※ 신분확인 시 외국여권 성명과 주민등록상 성명이 다른 경우 동일인이라는 공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필요

## 221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 시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법인등기부상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표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법률상 대리인임을 증명한다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가능

### 222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 날인 가능 여부

- OO조합의 등기부등본상 대리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소송대리를 포함, 법인을 위한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인의 자격으로 재산명시신청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였음
- 그런데 발급신청서 신청인(법인)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자 000의 대리인 홍길동이라 기재하고 사인을 하였는데 담당직원으로부터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 날인 가능여부?

**회신**

-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은 대표자를 대신하여 재판상 또는 그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 서명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서명(날인) 할 수 있음

### 223 지배인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초본 교부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이해관계인 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에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배인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결(대법원 2010도1040 판결)이 있으므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 서명을 대신하여 지배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배인의 대리권을 인정한 취지(「상법」 제10조 이하)에도 부합할 것임

### 224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대한민국 국적을 미취득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교부해야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등 · 초본 교부 대상이 아님
-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교부 가능(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47조)

## 225 외국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 외국인 배우자 등본 기재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외국인등록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확인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 공공기관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써 동의가 반드시 필수절차는 아님

## 226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한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

- 외국인이 법원에서 발행한 주소보정명령서를 증명자료로 제시할 경우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외국인이 규칙 제7호서식과 주소보정명령서를 증명자료로 제시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여 신분이 확인된다면 초본 발급 가능

## 227 사망자의 등·초본 발급 가능 범위

- 남편 사망 당시에는 부인이었으나 남편 사망 후 재혼으로 인하여 제적처리가 되어있는 경우 사망한 남편의 재산 상속과 관련 부인이 등본 발급 신청

**회신**

- 사망자 등 · 초본 발급은 세대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에 의해 주민등록 관계가 인정(질의 212. 〈참고사항〉)
- 따라서 부인이 재혼한 경우 「민법」 제775조에 따라 인척관계가 종료되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본문 및 같은항 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등 · 초본 교부는 불가

※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228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발급 여부(1)

- 가족이 무단전출직권 거주불명 등록자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 거주불명 등록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거주불명 등록자의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 229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발급 여부(2)

-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본인·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의 위임을 받은 자·제3자에게 위임을 받은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가 등·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주민등록 대상자에 거주불명자도 포함('2015.1.22.)됨에 거주불명자가 본인의 등·초본 교부와 위임을 통한 제3자의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본인의 등·초본을 위임할 수 있음. 증 발급도 가능

## 230 주소확인을 위한 말소·거주불명 등록자 초본의 발급 유무

- 이해관계인(신용정보회사 등)이 주소확인을 위해 말소·거주불명 등록자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라면 말소·거주불명 등록자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참고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 규칙 제10호서식이나 제11호서식은 초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0호서식은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11호서식은 개인 및 법인의 채무와 관련 있는 경우로서 이해관계사실확인을 통한 신청서로 별도 입증자료없이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이행하게 하거나 이행하려는 의사전달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소송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어서 정당한 이해관계 여부를 나타내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쌍방간의 계약 내용만 나타난 것으로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내용증명만으로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231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가능 여부

-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한 후 즉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는 주민등록 신고된 자중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17세 미만자에 한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신규등록)를 하였을 때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의 등록기준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교부 할 수 있음
- 이 때, 출생신고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대상임(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3호 신설, 시행 '21.3월)

## 232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 시 처리 요령

-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 시(발급통수 및 처리기한 등) 처리요령은?

**회신**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의 처리기한은 즉시처리(3근무시간 이내)이나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20통(전입세대 열람 매 3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으나(규칙 제13조제6항, 규칙 제14조제5항), 실제 처리기간은 당해 기관의 타 민원 접수현황, 조직인원 등 현지 발급기관의 여건에 따라 그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도 있을 것임
- 해당 규정은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한 규정이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
- 또한 규칙 제13조 제6항의 '동일한 자'의 범위에는 '동일 법인이 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 2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음

## 233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의 위임 받은 자의 주소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규칙 제9호서식)에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기재란 중 주소는 회사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원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회신**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위임장 작성시 위임받은 사람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234 무단전출로 최고·공고 중인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여부

**회신**

- 가능. 민원인에게 최고·공고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

## 235 법무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대행 가능 여부

- 법무사가 채권자의 위임장(관계된 모든 권한을 000법무사에게 위임한다)을 첨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 가능 여부?

**회신**

- 법무사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의 확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함

## 236 대법원 사이트 출력물의 입증자료 인정 여부

- 입증자료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진행내역으로서 소장접수가 확인 가능한 출력물을 가지고 옴

**회신**

- 대법원 홈페이지 내 '나의 사건' 사건조회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사건관련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사건관련 출력물만으로는 등·초본 발급을 할 수 없고, 전자적으로 출력된 주소보정명령서 등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등·초본발급이 가능
-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독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복사방지코드와 정본표시가 된 지급명령 결정문은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된 경우 판결문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해관계 입증서류가 됨

  ※ 독촉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규정에 의해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의 경우 전자독촉시스템으로 진행

## 237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의 팩스 자료 요구

-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출생신고 접수 후 출생자의 주민등록등본 FAX 송부요청시 가능 여부?

**회신**

-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전산자료를 통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공단으로 팩스 송부 불가
- 다만, 출생 신고한 민원인이 등본을 교부받아 공단으로 팩스 송부 요청할 경우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FAX 송부하는 것은 가능

## 238 주민등록표 전화열람 가능 여부

- 주민등록표를 전화로 열람할 경우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열람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회신**

-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서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 후 열람토록 하고 있으므로 전화열람은 불가

## 239 주민등록 인적사항(주소 등) 자료 협조 요청시 처리

- 종교단체 등에서 선교목적으로 각 가정의 신상명세서가 필요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등 자료를 요구시 제공 가능 여부

**회신**

- 공부상이나 전산자료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의 주민등록사항은 법 제29조와 제30조에 의거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상 대상자 이외의 주민등록 자료 제공은 그 목적의 선의·악의 등을 불문하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 외에는 불가함

## 240 모사전송으로 접수된 공문에 대한 회신을 모사전송 가능 여부

- 모사전송으로 접수된 공문에 대한 회신을 모사전송 및 전화로 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사전송 및 전화를 이용한 회신을 할 수는 없음

## 241 과거의 주소,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성명)로 초본발급 가능한지

- 이름과 과거의 주소(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도 발급 가능한지?

**회신**

- 전출자명부 등에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발급 가능
- 반드시 최종주소지(현재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242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의뢰 시 처리 요령

• 관내 우체국에서 휴면예금가입자에 대하여 예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신**

- 읍·면·동의 형편을 감안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지양하고, 전산자료 제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

## 243 확정된 판결문과 판결문경정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회신**

- 확정된 판결문(채무자 이름, 주소는 있고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등)
- '판결문 + (판결문상의 이름과 주소로 작성한)판결문경정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확정판결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해도 판결문에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강제집행의 진행이 불가

## 244 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 관련

• 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을 근거로 '개인'이 본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주장하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불가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초본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제1호~제7호의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하도록 함
- 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에서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임

## 245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불명 등록자인 남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외국인 배우자)을 기재한 남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요청함.
- 남편이 거주불명 등록자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 대상자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불가
- 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 등(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등 · 초본)'의 경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가 가능하므로 거주불명자인 남편의 등본을 외국인 배우자가 교부신청 가능할 것

## 246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관련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과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의 교부기준에 대한 차이점은?

**회신**

-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서는 '신청인의 신청 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함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등본'이 아닌 '초본'을 발급해야 함

## 247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과 제적등본만 존재 시 사망자의 말소자 초본 발급가능 방법

- 상속인이 말소자인 부친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요청 하였으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부여대장만 있는 상태에서 말소자 초본 발급 방법은?

**회신**

-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하고, 구 주민등록표를 말소자와 그 당시 세대주 중심으로 찾아야 하며 구 주민등록표를 찾을 경우 전산등록 할 수 있음

## 248 아동복지 시설에 단독세대주로 있는 미성년자의 초본 발급

- 아동복지 시설에 단독세대주로 있는 미성년자의 초본이 필요한 경우, 대상 아이들의 신분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나, 증명서가 없을 경우 합숙사의 관리자나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합숙사의 직원이 동행하여 신분 확인

## 249 신청인의 교부제한 대상자 신청 범위

- 신청인은 4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였으나,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3명의 자녀에 대한 언급만 되어있는 상황으로, 증빙자료와 무관한 1명의 자녀에 대하여도 교부제한이 가능한지?

**회신**

- 신청인이 가정폭력피해자임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된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신청 증빙자료에는 3명의 자녀에 대한 언급만 있더라도 나머지 1명의 자녀에 대해서도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할 것임

## 250 세대주가 세대원의 초본 발급 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가능 여부

-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의 초본 발급 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을 요구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도장) 없이도 세대주의 신분확인만으로 발급 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르면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만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음

## 251 독립운동가 포상 심사 자료제출에 후손의 증언이 필요하여 주소 열람 요청

- 한글학회에서 요구하는 독립유공 포상을 위한 후손의 주소열람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는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된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은 없음

## 252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위해 동일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신청가능 여부

- 서울가정법원 사실조회신청서에 따른 A의 생존여부 및 생존 시 초본 교부 요청 관련으로, 사실조회신청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본적이 기재되어 있음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사망여부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생년월일만 기록되어 있음(주민등록 관련 공부 전무)
- 이름, 생년월일, 본적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가능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등록공부 발급 및 교부가 가능한지?

**회신**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의하여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

- 위 조항을 근거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며, 주민등록 관련 공부가 없음을 회신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시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대상자에 대한 초본 발급만 가능

## 253 타인이 본인의 등·초본을 발급한 내역 확인 방법

**회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타인이 발급한 내역 및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공개 청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아울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 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중(단,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 · 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미통보)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8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시행규칙 별지제1호의5서식 참고

## 254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에 의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가능 여부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에 근거하여 학생 복지의 증진과 교육적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기숙사 신축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주소지 확인 및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기숙사 신축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할 수 없음

## 255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업무 관련 초본 교부 신청

- 관련 법령이 없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및 상속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1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관장 명의로 발급한 공문을 증명자료로 첨부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256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한 말소된 자의 초본 교부 신청(1)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망자의 사망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던 자, 사망자의 유증으로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수증자가 없음
- 이 경우에 차순위 상속자가 말소자의 초본 신청시 필요한 서류

**회신**

- 차순위 상속자가 1명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로 발급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말소자 초본 발급 가능(용도 확인)
- 차순위 상속자가 다수일 때는 제적등본과 법정상속등기신청서(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말소자 초본 발급 가능
  ※ 공동상속인의 서명, 재산을 분할상속할 것에 대한 협의내용 포함

## 257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한 말소된 자의 초본 교부 신청(2)

- 국적을 상실한 자녀(외국인)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 또는 모의 초본 발급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교부할 수 없음

-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로 말소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자(외국인 자녀)밖에 없음이 확인된다면 근거자료(내부 공문 등)를 남긴 후, 내국인(주민등록자)에게 위임하여 교부 가능

## 258 국적상실 후 사망한 자의 초본 교부 신청

### 회신

- 국적상실로 인하여 가족부가 폐쇄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추후에 사망하여도 가족부에 기록이 남지 않음
- 따라서, 국적상실 후 사망한 사실을 입증한 후(외국에서 사망시 공증 등) 사망자 초본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가능

# 제 7 절

# 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 259 구 세대별카드의 이해관계인 발급가능 여부

• 구 세대별카드도 이해관계인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

- 구세대별 카드 발급도 현재 전산발급 및 현 세대별카드(원장) 발급과 동일.
- 정당한 이해관계인이라면 이해당사자의 구세대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260 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포함]의 열람범위

• 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포함] 등·초본의 열람범위 또는 교부 관련

**회신**

- 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포함]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에 한함
- 다만, 본인, 세대원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61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분실 재작성 교부

•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를 분실하였는데 민원인이 이를 요구할 경우 재작성하여 교부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 민원인이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분실하였더라도 재작성하여서는 안되며,
- 만일, 구 주소가 확인되었다면 현 주민등록표에 구 주소이력을 추가입력한 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전산발급 하여야 할 것임

## 262 1960년대 기류부 보관 유무 관련 질의 및 주거표

• 1960년대 기류부 보관 유무 및 등본 발급 가능 여부, 주거표 관련

### 회신

- 주민등록법 제정 이전의 당시 기류법(1962.1.15.~6.19.)에 의하면 기류부에 기재하는 기류자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적지에 거주하는 자는 대상이 아니었으며, 기류에 관한 사무의 감독을 법원(관할 지방법원)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1962.5.10. 제정된 주민등록법 부칙에 의하면, 본법 시행으로 기류법이 폐지되고 기류부는 본법 시행 후 1년간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년이 지난 후에는 폐지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류부와 관련한 질의사항은 당시 감독기관인 대법원(☏ 02-3480-1114)으로 문의
- 주거표란 1968년 법 개정으로 본적지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자의 신고를 받아 거주지에서 본적지로 거주사항을 통보하여 작성·비치한 것으로 1981.10.1. 동 제도가 폐지되고 당시 주거표 보존기간이 10년이므로 현재는 보존되지 않고 있음

## 263 구 주민등록표를 찾을 수 없고 색인부만 있는 경우

• 구 주민등록표는 찾을 수 없고 색인부상에는 주소와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련 공부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색인부라도 복사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

### 회신

- 색인부를 통하여 최종주소지가 확인되었으나, 구 주민등록표가 없는 경우는 손실이나 분실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민원인이 색인부를 요청한다면 정보공개청구에 의거하여 복사해주어야 할 것임

## 264 구 주민등록표(62.6.25.~68.10.19., 68.10.20.~79.6.30.) 발급

**회신**

-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원장 조회하여 출력, 증명·발급하고 수수료 부과, 전산화되지 않은 자료는 최종 보관된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FAX 등으로 전송받아 증명·발급하고 수수료 부과
- 1962.6.25.~1968.10.19.까지의 구 주민등록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 결정할 경우 복사하여 교부는 가능하나, 기관장 증명은 불가
- 참고로 구 주민등록표(1962.6.25.~ 1968.10.19.)는 보존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대다수 읍·면·동에서는 폐기되고 일부 읍·면·동에서만 보관되고 있을 것임

## 265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주소정리 교부

- 1979.6.30. 당시 주소지에 보관중인 구 주민등록표상 주소사항이 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현 주민등록표에 추가 기재하고 전산입력한 후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현재의 세대별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1968.10.20.~1979.6.30.까지 사용된 구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에서 확인되는 주소사항이 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누락된 것이므로 그 주소 이력을 현 주민등록표에 추가 입력하여 전산으로 등·초본 교부를 하여야 함(종이 원장 추가 기재 불가)

## 266 구 주민등록표(1962.6.25.~1968.10.19)의 정보공개결정 절차 및 방법

- 이해관계인이 구 주민등록표에 대해 정보공개신청을 했을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받아야 하는 건지, 증지와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규칙 제7호서식은 불필요

-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해 처리하되 증명발급이 아니라 사본을 공개하면 되고, 수수료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증명수수료가 아닌 정보공개법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

## 267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등본 발급시 위임 여부

- 본인의 구 주민등록표 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 구 주민등록표의 발급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통해 위임받아 발급 가능

## 268 이해관계인이 구 주민등록표 교부신청을 한 경우 교부 방법

-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교부신청을 한 경우(구 주민등록표에는 다른 가족들의 주민번호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교부 방법은?

**회신**

- 현행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와 동일하게 주민등록표 초본 사항만 발급 되어야 함
- 즉, 교부대상자 이외의 가족 사항은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

## 269 동적부 발급

- 민원인이 동 주민센터에 동적부 발급을 의뢰한 경우 가능 여부

**회신**

- 동적부는 1955년 4월부터 1962년 1월까지 시·도 규칙이나 기류법 등에 의해 동·리장의 일부 행정업무의 부여로 인해(거주지 이전의 확인, 인감의 신고업무 처리 등) 관내주민의 신분관계, 생활관련 사항 등을 상세하게 작성 관리하던 대장으로 1962년도 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공부이므로(기류법 폐지) 발급할 수 없음

## 270 구 주민등록표(1962~1968년) 발급에 대한 문의

**회신**

- 구 주민등록표(1962년)는 보존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다수의 읍·면·동에서는 폐지되고, 일부 읍·면·동에서만 보관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시스템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음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증명·발급해서는 안되고, 복사 등의 교부방법으로 처리

## 271 구 주민등록표(1968~1979년) 증명·발급 방법

**회신**

- 본인이나 세대원의 구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모든 정보가 가능할 것이나 교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서식과 같은 내용으로 복사·발급
- 다만, 본인이 부득이 구 주민등록표상 본적지 등 등·초본의 서식 내용이 아닌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해당 정보의 확인이 가능

## 272 과거주소 확인을 위해 구 주민등록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

**회신**

- 주민등록법상 주소에 대한 기록은 주민등록표로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 주민등록표(1962~1968년)는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실 또는 멸실되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주민등록표(1968~1979년)는 1979.6.30. 기준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읍·면·동사무소)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주를 주축으로 조회작업을 거쳐 확인
- 1979.6.30. 최종 주민등록지 행정관청에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되 만약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관청에 요청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람

## 273 구 주민등록표의 수정·추가 가능 여부

•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 회신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판결문, 행정기관의 착오로 수기 작성된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를 수정·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수기 작성이 폐지되었으므로 수기로 수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전산상에서 수정하여 민원인에게 발급

※ 원장과 전산에 입력된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에 후임자가 전산이기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5329」개인 메모사항정리에 수정사항에 대하여 입력해 두고, 원장에 연필로 사유를 기재

# 제 8 절

# 기타사항

## 274 전화번호 제공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제도상 전화번호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주민등록자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해 제공하는 것은 불가
- 다만,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정보 보유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보유기관의 장이 '비공개' 처리 가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75 영정사진 또는 기타 용도로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사진자료 요구 시 제공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1호를 준용하여 사망자와 사망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했던 세대원(또는 세대주)인 자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할 경우 사망자의 사진자료 열람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나,
- 사진자료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그 외의 자가 사진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

## 27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초본 교부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위임자 신분증의 진위확인을 해야 하는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전단 및 [별표] 제출서류 등에서 별지 제9호서식(위임장)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증명자료로써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서식 '유의사항'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에 형식상 심사에 하자가 없다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위임자의 신분증에 대한 진위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님

## 277 주민등록제도상 인정되는 신분증

**회신**

- 주민등록제도상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역증, 국가유공자등, 학생증, 청소년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함) 등을 인정
-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어린이 등은 의료보험카드로 신분을 확인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국내 운전면허증을 인정

## 278 분실신고된 주민등록증으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회신**

- 민원인께서 주민등록증 분실 철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옛 주민등록증을 되찾았으나 그 주민등록증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 279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증빙자료

-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한지?

**회신**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규정된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음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단,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의 제한은 해제되어야 할 것임)

## 280 가정폭력행위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회신**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을 하더라도,
- 교부제한자(가정폭력행위자)가 소송 · 비송사건 · 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하거나 채권 ·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로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면 교부신청자(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 281 가정폭력행위자 등·초본 교부 제한 이후 이혼한 경우

- 남편에 대해 가정폭력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했고, 그 이후 이혼하였다면 그 교부 제한 신청은 유효한지?

**회신**

- 교부 제한 신청은 법 제29조제2항제5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이혼한 경우, 전 남편은 더 이상 전 부인의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 남편은 전 부인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이혼을 하였더라도 자녀와 엄마가 세대를 같이하고 있다면 전남편이 세대원의 직계혈족 자격으로 자녀의 초본 발급은 가능할 것이므로, 세대원인 자녀를 함께 교부 제한 대상자로 지정받아야 함

## 28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요건의 미비

-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였으나 신청 시 제출하였던 증거서류가 미비하거나, 해당 사건이 불기소 결정(증거 불충분 등)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행정기관에서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교부 제한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증거서류가 미비한 경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에서는 법령에 따른 신고를 법정민원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제22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원처리법」을 따르도록 규정(제3조)

- 「주민등록법」에 따른 각종 신고 역시 「민원처리법」의 법정민원이고, 신고서류 보완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①가정폭력피해자에게 등 · 초본 교부 제한 신청의 미비사항 안내 및 일정 기간 내 보완*하도록 요청한 다음, ②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한 등 · 초본 교부제한을 취소하는 것이 피해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 '즉시'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 3근무시간 이내 처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해당 사건이 불기소 결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게 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해 등 · 초본 교부가 제한된 자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법원의 판결문,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를 제출한 경우 교부 제한 해지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이 경우 증명서류상 기재사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 283 가정폭력피해자 교부 제한 신청인 범위

**회신**

- 특례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 제11조의 신고의무자와는 구분
  – 성인 : 본인 신청이 원칙. 입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소명할 때에만 위임 가능
  – 미성년자 : 세대주, 보호시설장, 직원 등의 요청을 받아서 읍·면·동 사실조사로 갈음
-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로 확인하면 내부결재를 받아서 남겨두고, 가정폭력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작성
  ※ 단,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를 통한 확인을 했다는 것이 중요

## 284 가정폭력피해자 교부 제한 대상자 범위

-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등초본 열람을 제한하면서 시아버지도 제한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관련서류에는 남편만 가해자로 기록)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가정폭력행위자가 남편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아버지(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음

## 285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 포함)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 포함)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교부기관에서는 다량의 교부 신청건에 대하여 그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1일 20통을 교부 처리하고 업무량 및 조직인원 등 현지여건 및 다른 민원처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발급량을 늘릴 수도 있을 것임

## 286 입증자료의 미비사항 내용증명으로 보완 가능 여부

• 입증자료의 미비사항 중 내용증명으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무엇인지?

**회신**

| 구분 | 채무금액 | 변제기일 | 채권자 성명 | 채무자 성명 | 채무자 주민번호 |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
|---|---|---|---|---|---|---|
| 입증자료 보완 가능 여부 | X | ○ | ○ | X | X | X |

-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인정하는 서류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 또는 날인과 채무금액 등은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항목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보완이 불가능함
- 다만, 채권자의 성명은 입증자료 원본을 소지한 사람을 채권자로 보아 내용증명으로 보완 허용
- 「민법」 제387조에 따라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차용증 등에 변제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보완 가능

## 287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토대로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가능 여부

**회신**

-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가능

## 28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은 구술·서명(전자문서 포함)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가 가능한 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가능
- 다만, 교부는 기관 소속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 후 직접 방문하는 경우 교부 가능

## 289 주소보정명령서를 분실한 경우

- 채권자(금융기관)가 주소보정명령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분실확인서를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해 초본 신청을 하였는데, 금융기관이 작성한 분실확인서와 대법원 사건조회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불가. 보정명령을 다시 받아서 신청하여야 함

## 290 요양원에서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요양원에 계시면서 단독세대주였던 수급자 할머니가 사망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니 조카분이 있으나 연락이 안되는 상황
- 요양원에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위해 요양원장이 공문으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조카나 가족이 있더라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공문 + 사망입증서류'로 요청 시 사망진단서 등을 근거로 사망 말소처리하고 매화장 제출용으로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가능
- 매화장 제출용으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형제 및 사망신고 당사자에 한해 초본 교부 가능(사망진단서 등 첨부)

## 291 열람용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회신**

- 열람용으로는 발급 불가
- 주소보정명령서에는 보정대상(교부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명시)이 특정되어야 하며, 발급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의 증명자료로 인정될 수 있음

## 292 신분증(사본 또는 촬영한 사진) 인정 가능 여부

-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 만약 위임자의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을 제출할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으로 인정 가능 여부?

**회신**

- 위임자의 신분증 첨부의 목적은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신분증의 사본도 제출이 가능함
  -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출력물의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 담당자의 판단 하에 신분증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정당한 신분증(사본)의 제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단,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화면을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 정당한 제출로 인정하기 어려움

## 293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가 근저당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근저당설정의 원인인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근저당권 해지를 요구하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근저당권자(채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근저당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요구하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근저당권자(채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 294 주민등록법상 새아버지와 새조부모의 직계존속 해당 여부

• 부모의 재혼으로 가족이 구성된 경우, 모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조부모(계부의 부모)를 직계존속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이 아니므로 직계존속으로 볼 수 없을 것

## 295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대부업자가 대부거래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등·초본 발급을 요구하는데, 채무자가 당초 약정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

● 채무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대부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정해진 시기에 그 금액만큼 정확히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일부만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대금지급에 지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296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을 하였는데 주민등록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기 위해 증명자료 및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였으나 전산상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은?

**회신**

- 전산조회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불가사유에 대한 진정민원을 접수하면 해당기관에서 발급 불가사유 등을 기재한 공문서를 회신할 수 있음

## 297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지문자료 요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의거하여 경찰서의 화상자료 요청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는 바, 화상자료의 제공이 현재의 규정 및 편람상의 절차에 의거할 때 적절한지?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십지지문을 보관·관리함에도 해당 기관이 지문자료가 없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이에 대한 회신을 하여도 무방한지?

**회신**

- 화상자료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자료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관계 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를 받아 제공이 가능하고, 십지지문 중 우무인도 경찰청에서 지문오류나 누락 등의 사유로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음

## 298 외국인 장인이나 장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가능 여부

-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나 세대주나 세대원의 국민인 직계혈족의 배우자였던 결혼이주자의 인적사항을 등본에 기재가 가능함
- 그런데 이때 세대주나 세대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장인이나 장모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가 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할 수 있으나,

- 외국인 장인이나 장모 등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할 수 없음

## 299 공시송달신청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 채권자의 채권양도로 인해 소액사건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승계집행문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및 특별송달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고자 함
- 대법원 사건 조회표 상에 해당 사실(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및 승계집행문발급, 송달불능사유)이 기재되어 있고, 판결문 사본과 공시송달신청서(또는 특별송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이 발급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공시송달 신청서, 대법원 사건 조회표(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소송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 시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 신청이 가능
- 단,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 신청을 위한 증명자료는 원본이 원칙이며, 사본도 가능하나 사본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함(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3)

## 300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없는 경우

- 상속등기신청을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면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때 위 소명의 방법은?

### 회신

- 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였으나, 전산조회가 되지 않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한 행정청에 초본 발급 불가사유에 대한 진정민원을 제기하면 해당기관은 발급 불가사유 등을 기재한 공문서를 회신할 수 있음

## 301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지문확인만으로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음

## 302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연령의 학생이 학생증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

**회신**

● 주민등록증 미발급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장 바람직
– 학교생활기록부(학적부)를 제출받아 인적사항란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도 가능할 것

● 그 외에 유효한 신분증명 수단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으나 소년소녀가장, 무의탁어린이 등이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계 공부 등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의 주민등록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질의하여 본인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여야 할 것임

## 303 구 주민등록표의 원본대조필 가능 여부

•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구 주민등록표를 복사해 줄 경우 원본대조필 고무인에 담당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지?

**회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는 자료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첨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본대조필과 담당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서는 곤란할 것임

## 304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지?

**회신**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세대원이 아닌 직계혈족도 신청 가능

## 305 임의로 변경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 인정 여부

- 법인채권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서 개인신청인 란과 등본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 삭제하고 출력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

- 불가. 법정서식이 법령 자체이기 때문에 서식대로 사용해야 함
- 본인이 필요없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는 것일 뿐임

## 306 개인과외 교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OO교육지원청에서 관내 개인과외교습자의 연락두절과 지도점검 방문 시 부재 등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교습장소 등)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공문으로 주민등록지 조회를 요청함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주민등록지)를 변경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변경신고 없이 교습장소를 변경하면 행정처분(교습중지)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연락두절 상태인 개인과외교습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내어 사전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함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로 할 수 있음

## 307 개인사업자의 원본대조필

**회신**

- 개인사업자도 자기 사업체가 발행한 서류에 원본대조필 가능
- 판결문 등 법원서류는 원고, 피고가 확인되는 법원사이트 사건조회 출력물을 첨부하면 가능 (법무, 변호사 개인사업자는 가능)
- 'ㅁㅁ 사업장 대표 ○○○' 정도로 표시

## 308 주민등록 업무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 '학생증'이 사립학교의 학생증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회신**

- 가능.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학생증'에서는 국공립/사립에 구분없이 인정(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있으면 인정)

## 309 신용정보회사의 위수탁계약서 원본대조필

- 원본대조필한 입증자료 사본의 재복사본 인정 여부 및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시 흑색 인영(출력물)이 가능한지?

**회신**

- 신용정보회사의 입증자료인 위수탁계약서는 원본이 원칙이되,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대조필한 사본도 가능
- 등.초본 교부기관에서는 원본이나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시받으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복사 한 후 원본대조필 한 후 제출서류로 보관 가능
  - 단,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재복사하여 제출하는 것은 불인정
-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시 흑색 인영(전자이미지)도 가능함

## 310 시행규칙 [별표] 비고 3번 증명자료(사본) 관련

- 대부회사가 소송 수행을 위해 대부회사가 원본대조필한 보정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 가능한지?

**회신**

- 불가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되 사본도 가능하나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것이어야 함

  ※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 : 원본을 발급한 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금융기관 등이 원본을 복사한 후 사본을 제출하기 위하여 원본대조필한 것은 인정

## 311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상 전화번호 이용 가능 여부

**회신**

- 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입신고 시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15호의3서식상 작성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전화번호 기재의 취지에 부합되므로 가능

## 312 법인의 위임장 날인

- 법인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한 위임장의 날인에는 성 또는 이름이 없는 "대표이사"라고만 되어 있음
- 위임자의 인영이 법인 또는 대표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인영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반려함

**회신**

- 서면위임장의 법인 도장이 반드시 법인인감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위임자와 전혀 관계없는 인영이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임자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위임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313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회신**

- 신분증명서를 제시(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및 전산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 제시의 대체가 가능할 것임

## 314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신청 대상자 확대

**회신**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제29조제2항제5호 마목 및 바목이 추가되어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도 세대원의 위임없이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신청 가능
  - 지인의 세대에 있는 자녀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가 세대원의 직계혈족 자격으로 자녀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가능

## 315 과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자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초본을 교부해야 함
  - 다만,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만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열람 또는 교부 가능

## 316 친양자 입양·파양 관련 변경내역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가능한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9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시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교부

* 성 변경, 과거 세대주(친양자 입양 전 부모)의 성명 및 관계, 친양자 입양 전 입양부모와 함께 거주한 경우 입양 전 현 세대주와의 관계 등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은 그 해당자의 세대구성원 모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

- 반드시 주민등록표 등본의 교부가 필요하다면, 각각의 세대원에 대한 증빙자료 필요
- 등본발급이 가능한 경우
  - 보정명령서
    - "피고의 등본을 제출하라" 등 특별히 세대원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명령이므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전체 표시
  - 동산경매신청서 + 집행권원
    - 채무자 외 세대원은 성만 표시(홍**),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미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현황조사명령서로 집행관이 등본 신청
    - 모든 세대원의 정보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전체 표시

# 제 9 절

# 전입세대 열람

## 1 전입세대 열람 신청

### 317 조사의뢰서가 전산출력물인 경우

• 조사의뢰서가 전산출력물인 경우 직인날인이 없어도 정당한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 조사의뢰서 전산출력물을 제출하는 경우 의뢰기관명, 발급번호,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면 정당한 증명자료로 인정
-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제출하는 신용정보조사의뢰서(의뢰기관명, 전화번호, 발급번호 기재)를 전산출력하였으나 그 일부를 수기로 추가 작성한 자료도 인정하며, 팩스도 가능
  ※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함(2014.1.1.개정)

### 318 위임받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여부

• 건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상속인의 배우자도 전입세대 열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현 주민등록제도상 전입세대 열람 시 건물 소유자의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상속인의 배우자도 열람 신청이 가능

### 319 '계약사실확인원'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 주택공사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주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계약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줌
• 임대차계약내용이 확인되면 '계약사실확인원'으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계약사실확인원을 임대차계약서로 간주하여 전입세대 열람 가능

## 320 분양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회신**

- 분양계약서도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 321 경매참가자의 전입세대 열람

- 주민등록 사무편람을 보면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이나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매일시의 의미는?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경매참가'는 경매개시결정과 그 기입등기(등기부) 이후 경매절차의 취소사유가 없을 때 법원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한 때부터 이루어진다고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매각기일) 및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공고문 또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매각일시, 해당물건지가 확인되어야 함)를 제출하여 열람 신청 가능

## 322 신용조사회사의 전입세대 열람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서는 '신용조사회사 :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 신용도 ·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따라서 임대차/현장조사의뢰서는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로 볼 수 있으며 의뢰인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면 가능하나 채권추심을 위한 전입세대 열람은 허용하지 않음

## 323 토지소유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회신**

-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 324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일이 만료된 후라도 계속 전입이 되어 있으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주소로 전입이 계속되어있으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아 임차인으로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함
- 다만, 현재 전입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

## 325 채권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 채권자로서 대상 물건지를 압류하고자 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지?

**회신**

- 단순히 채권자의 자격만으로 전입세대 열람은 불가

## 326 계약경제일보에서 우편으로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 여부

**회신**

- 언론사(경제, 경매관련 신문사 등)에서 보도목적으로 공문 또는 신청서와 기자증(사본) 등 신분증명서, 해당 물건지의 경매공고문 또는 경매목록 등의 입증자료 제출 시 '세대주 성명 일부(홍○○)와 전입일자'에 한하여 우편으로 가능할 것임

## 327 카드회사에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으로 전입세대 열람

**회신**

- 카드회사는 직접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음. 다만, 카드회사가 신용조사회사나 감정평가법인등에 전입세대 열람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

## 328 전입세대 열람 동거인 가능 여부

- 동거인도 위임없이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지?

**회신**

- 소유자, 임차인의 세대원은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므로 동거인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나,
-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의 세대원은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

## 329 팩스로 수신된 감정평가의뢰서 인정 여부

- 팩스로 수신된 감정평가의뢰서는 결국 사본인데, 감정평가법인이 접수인을 실제 날인해 옴
- 원본대조필처럼 보아서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지?

**회신**

-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므로 인정

### 330 동일 법인번호 금융회사의 다른 지점에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가능 여부

- 농협 본점에서 근저당설정계약을 했고 다른 지점에서 그 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자 함
- 사업자번호는 다르지만 법인번호는 같은 동일 법인이면 가능한지?

**회신**

- 가능. 동일 법인의 다른 지점에서도 전입세대 열람과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 33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여부

- 부동산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위임은?

**회신**

-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위임은 불가

### 332 전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 A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
- 잔금을 치르는 도중에 B로 소유권이 이전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데, 소유자가 바뀌어 임차인과 최초 A가 작성한 계약서로도 가능한지?

**회신**

- 물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해당 임대차계약서로 해당 물건 전입세대 열람 가능

## 333 전입세대 열람 신청사실 확인 요청

- 개인 소유주가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 그 열람결과를 저축은행에 제출
- 은행에서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고객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 요청
-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줄 근거가 있는지? 공문을 보낸다면 공문으로 회신해줄 필요가 있는지?

**회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함

## 334 전입세대 열람 교부기간 연장 가능 여부

- 동일 신청인이 동시에 전입세대 열람을 한번에 150통 신청한다면,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을 준용하여 교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30통마다 열람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민원업무의 처리량,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

## 335 경매낙찰자의 전입세대 열람

- 경매낙찰자의 경우,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어 전입세대 열람의 제3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경매낙찰자를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어, 전입세대 열람의 제3자 위임 가능

## 336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매매계약서로 전입세대 열람

•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잔금 지급일이 지났음

**회신**

- 부동산 매매계약자는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완납된 계약서가 아니어도 매매계약서 제출로 열람할 수 있음
- 그러나,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지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매매계약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입세대 열람이 어려움

## 337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회신**

-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교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전입세대 열람의 대상이 아님
- 다만,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자(내국인)에게 위임하여 전입세대 열람 가능

## 338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전 소유주 전입세대 열람

• 현재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로 되어있음
• 기존 집주인 A는 해당 주소지 전입세대 열람 자격이 있는지?

**회신**

-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신탁을 하게 되면 등기 명의인이 수탁자명으로 귀속되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소유자 지위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함
- 또한, 제3자인 개인이 신탁회사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 확인 후 전입세대 열람 가능함
- 부동산 신탁 시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수탁기간 동안 위탁자(원 소유자)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으며, 신탁회사의 위임을 받아 가능함

### 339 동일물건에 대한 연속 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자가 다른 경우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A와 B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B는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채 동일물건에 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
- C는 A와 B의 매매계약서와 B와 C의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 전입세대 열람 신청
- C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호에 의한 정당한 매매계약자로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에 해당되는지?

**회신**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가 반드시 관계 있다고 볼 수 없음
  ※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함(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4714 판결)
- A와 B의 매매계약서 및 B와 C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그 매매계약에 하자가 없다면 C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호에 의한 정당한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음

### 340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활용

**회신**

- 임차인의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상 확정일자 조회를 통해 '임대차계약서' 제출없이 전입세대 열람신청 가능
  – 다만, 임차인은 '14.1.1.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자이어야 하고, 주택소재지의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 2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 341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 시 수수료

- 현재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었고, 만약 신청 건이 1건인데 종전의 지번주소와 현재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2가지의 열람출력물을 요구하여 교부받았을 경우 열람 수수료는 1건으로 처리하는지?

**회신**

- '14. 1월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만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제공(수수료는 1건 300원 부과)
  ※ 지번 주소를 병기하여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지번주소로 전입세대 열람 결과 출력물을 별도로 요구하여 따로 출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수수료는 2건(600원) 부과
- 단,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전입세대 열람 시 지번주소 조회결과와 도로명주소 조회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둘다 제공(수수료는 1건 300원 부과)

## 342 여러필지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 '서울 종로구 A동 100-1외1필지 B아파트 101동 101호'인 경우 전입세대 열람 시 다른 필지인 "A동 100-2"번지로도 전입세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을 해줘야 하는지?

**회신**

- 주민등록제도에서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서, 예시와 같이 'A동 100-1번지외1필지 B아파트 101동101호'의 경우에는 B아파트 101동 101호가 하나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지번주소가 100-1번지와 100-2번지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각각 열람하고, 수수료는 1건으로 징수

## 343 다세대주택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 다세대주택인데, 모든 호수 소유주가 한 사람임
-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과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

- 다세대주택은 동/층/호수까지가 '물건의 소재지'이므로, 소재지별(=호수별)로 각각 열람 신청하고, 수수료도 소재지별 각각 부과

## 3 전입세대 열람 일반

### 344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과거 거주자 확인 가능 여부

•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과거 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회신**

- 전입세대 열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열람이므로, 과거 거주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함

### 345 과거 시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 2008년, 2009년, 2010년 등 과거 시점의 소유자의 주소지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과년도의 전입세대 열람은 불가
-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대상자의 과거 전입사실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여 확인토록 안내

### 346 전입세대 열람 시 증명자료 보관 여부

• 물건에 대해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매매계약서 사본 보관 여부?

**회신**

-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복사하여 사본 보관

## 347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전입세대 열람

- 대출신청자의 임차확인용으로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
- 지번으로 신청했는데, 그 지번에 도로명주소 2개(건물이 2개 있음)인 경우, 대출신청자가 속한 도로명주소만 제공해야 하는지?

**회신**

- 신청한 지번주소에 해당하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모두 가능함

## 348 전국 어디서나 전입세대 열람

- 전입세대 열람은 물건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령 개정(2014.1.1.시행)으로, 현재 전국 어디서나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

## 349 전입세대 열람시 사망말소자

- 주민등록시스템 「4210.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화면」에서 말소자 포함으로 열람 시, 사망 말소자가 표기됨
- 민원인이 사망말소자를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해 줄 것을 요청

**회신**

- 주민등록시스템은 주민의 이름,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의 사항과 과거의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기록 · 관리하므로, 주민의 신고사항과 다르게 입력되어 있지 않는 한 삭제 불가
- 말소자를 제외하여 '전입 대상 물건 소재지 - 등록 구분 - 거주자'를 선택 후 조회하여 열람하도록 안내

## 350 전입세대 열람의 입증자료

• 금융회사 A가 채권자. 채무자, 채권 최고액, 등기목적 등이 기재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함

**회신**

●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근저당 설정을 하기 전에 전입세대 열람을 통하여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열람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가능

## 351 다가구 주택 전입세대 열람 시 세입자의 동의 여부

•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예 : 원룸)의 전입세대 열람을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 시 전체 세입자의 개별 개인정보 사용동의서도 필요한 것인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는 받지 않아도 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

# 제5장
# 수수료, 과태료

제1절 수수료
제2절 과태료

# 제 1 절

# 수수료

## 01 국가유공자가 가족의 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02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이므로 선순위 유족은 1순위에 해당하며, 없는 경우 2~3순위 순으로 함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03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
-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받을 때 수수료는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면제

## 04 수급자의 등본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회신**

- 발급대상자(수급자)의 등본을 제3자(일반인)가 수급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면제

- 발급대상자(일반인)의 등본을 제3자(수급자)가 위임을 받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음
-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수수료 면제

  * 학교 가정통신문, 어린이집 등록신청서 등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주민과-2735, 2018.5.31.)

## 05 지문 변경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 회신

-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사진이나 글씨 등이 닳아 없어짐 등), 보안 미적용(2006.11.1. 이전 발급된 증),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이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이 부족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

  ※ 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 지문 변경을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수수료 면제
  - 단, 무분별한 증 재발급 방지를 위해 기존의 증 미반납시에는 수수료 부과(분실에 따른 재발급으로 분류)

## 06 등·초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 아동보호기관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시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수수료 면제조항이 없으나 관련 업무 사무편람('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별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전산자료 제공의 수수료까지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령에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 면제조항이 있어야 가능함

## 07 아파트가 여러필지에 걸쳐 건축된 경우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 아파트가 여러필지에 걸쳐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대표번지와 나머지 지번이 같이 기재.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대표번지 100번지 외 3필지(101~4번지) 101동 201호로 하였는데, 수수료는 필지별로 4건인지? 물건지별로 1건인지?

**회신**

● 물건지 기준으로 1건의 수수료 부과 처리

## 08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등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요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공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요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음

*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09 주소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산열람 시 수수료

•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과정에서 최종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행한 주소검색 등 절차 시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지?

**회신**

● 주소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행한 주소검색 절차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열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음

## 10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해 수수료 면제를 해주는데, 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남은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국가유공자의 처도 적용되는 것인지?

###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에 대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유족 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망한 남편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 11 주민등록증 사진변색 등 재발급 시 수수료 부과 여부

• 주민등록증 사진이 변하여 알아 볼 수 없을 경우 무료 재발급 가능 여부

### 회신

-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분실, 훼손, 외과적 시술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은 수수료 징수대상이나, 본인의 고의·과실 없이 주민등록증이 시간경과 및 기타 사유로 사진이 흐려졌거나, 성명·생년월일 등의 변경,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 한 경우 등은 무료

  ※ 본인이 성형수술,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수수료 징수 대상(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 12 개명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

• 개명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

### 회신

- 개명으로 인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의해 수수료가 면제됨

-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지 않고(시행령 제44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영 별지 제34호서식)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영 별지 제32호서식)를 같이 작성하고, 담당자는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처리를 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성명변경으로 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성명 등의 오기)
-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2006. 12월 이전에 발급받은 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수수료는 무료이나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부과
- 1999년 일제 경신 이전 주민등록증은 해당 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료

## 13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시 수수료

- 2006.12월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시 수수료는?

**회신**

-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수수료는 면제되겠으나,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부과

## 14 관내 장애인(1~3급)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등·초본 발급 관련 장애인 면제 규정이 없으나,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에는 장애인 면제 규정이 있음

**회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가능

# 제 2 절

# 과태료

## 15 외국 유학생의 주민등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면제 여부

• 만 17세가 된 신규 주민등록 대상자가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에 외국유학으로 발급지연이 된 경우 과태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회신**

● 신규 주민등록 발급대상자가 발급기간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 사실 증명 또는 유학, 해외취업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의 면제 가능

## 16 최고 또는 공고기간 중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 무단전출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기 위한 최고 또는 공고기간 중에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요령

**회신**

●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하기 위해 최고 또는 공고기간 중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한 경우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 17 과태료 미납부 시 제(諸)신고 가능 여부

• 법에서 과태료 미납 시 제(諸)신고 또는 신청 가능 여부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지?

**회신**

● 제(諸)신고 또는 신청은 과태료 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접수 처리하여야 함

●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과태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하여야 함

## 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주민등록업무 처리 요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및 사전통지 업무처리요령

### 회신

- 과태료의 처리절차는 부과와 징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는 과태료 징수 시 감경,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과태료 부과 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3/4까지 감경부과 가능하고 징수 시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 감경징수 가능
- 과태료 부과는 행정질서 위반자에게 벌을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반드시 사전통지 필요
- 다만, 사전통지서와 감경고지서를 동일 고지서로 발부 가능

**사전통지 시 주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19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의무를 지연한 경우 최고(공고)가 가능한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 신청을 할 것을 최고(공고)할 수 있으므로 최고(공고) 후에도 발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 세대 전부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어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

• 하나의 세대 전부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어 재등록신청을 하는데 신고의무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회신**

- 하나의 세대 전부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후, 거주불명 등록된 세대 전부가 동일 거주지 내 재등록신청을 할 경우 신고의무자는 세대주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며, 과태료는 세대주에게 부과하여야 함
- 그러나 하나의 세대가 전부 거주불명 등록된 후 각각 재등록할 경우에는 재등록 신고한 본인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

## 2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해외체류, 수감, 유학 등의 경우 과태료

• 해외체류, 수감, 유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방법

**회신**

- 해외체류, 수감, 유학 등의 사유가 입증되면 사유별 기간을 제외하고 발급신청기간을 산정하며, 이 기간 내에 미신청 시 과태료를 부과
  ※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 필요

## 22 재등록 과태료 부과기준일

• 과태료 부과 기준은 거주불명 등록일부터인지 최고·공고 다음날부터인지?

**회신**

- 과태료 부과시점은 거주불명 등록 처리일이 아닌 공고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예를 들어, 4월 5일 거주불명 등록되고 4월 1일 공고가 만료되었다면 4월 2일이 과태료 부과 기산일임

## 2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보내고, 그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즉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기간 내에 재발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 회신

-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는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무단전출 등으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해야 함
- 이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발급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됨

  ※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또는 공고한 사항 및 담당자 성명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전산입력해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므로 유의

## 24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능력 및 의사능력 결여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지연된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 회신

- 당사자가 제시한 소명자료(의사진단서 등)을 근거로 읍·면·동장이 과태료 부과(경감) 여부를 판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등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 25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의 사망신고 시 과태료부과 및 처리 요령

•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를 사망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주민등록 정리절차

**회신**

- 사망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며, 직권 거주불명 등록 사항은 그대로 남겨두고 사망신고 말소 사항을 추가 기록

## 26 거주불명 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간에 과태료 이중부과 여부

-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거주불명 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에 해당되는 경우 위 과태료 외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병과 가능여부

**회신**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달한 자의 과태료는 주민등록 신고지연과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하나의 행위로 2이상의 질서위반이 있는 것이므로 2개중 높은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면 됨

## 27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시 신고지연사유서

-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지연사유서는 과태료 경감사유가 있을 때만 받는 것인지?

**회신**

- 과태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만 신고지연사유서를 받아 처리

## 28 과태료 감면 가능 여부

-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3/4까지 경감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려환자인 경우 사실조사기간 외에도 3/4까지 경감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그 결과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하여 부과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실조사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 가능
- 또한,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까지 감경 징수가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따라서, 행려병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경감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최초 과태료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 가능
  예) 최초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인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 3/4 경감된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자가 자진납부 시 1만원 기준 20% 감경된 8천원을 과태료로 최종 징수)

## 29 주소변동 사항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회신**

-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제40조 제4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 또한, 과태료는 거주지(전입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 30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경감부과 방법

- 사실조사 기간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올바른 과태료 부과 및 감경방법?

**회신**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시·군·구청장은 사실조사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함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조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4분의 3까지 경감
- 또한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까지 경감하여 징수가 가능함 (예, 10만원 부과자에 대하여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2만5천원 부과 후 20%인 5천원을 경감하여 2만원 징수)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자(교통범칙금 등)는 자진 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31 위장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법 제37조제3의2호(거짓의 주민등록 사실 신고)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범죄입건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회신

-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입신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벌칙 대상임

## 32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거주불명 등록 시 과태료 부과

- 세대원 중 동거인을 세대주의 신고에 의해 거주불명 등록 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후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 처리 및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도록 처리하고 있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개정, '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 75p')
- 이 동거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법 제40조제2항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 회신

- 세대주에 의해 거주불명 등록 신고 된 동거인에 대한 공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 거주불명 등록 절차의 최고. 공고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도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이 아닌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을 적용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

## 33 전입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 및 과태료 부과 여부

### 회신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 때 정당한 사유에는 해외출국,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출입국 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확인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됨

## 3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며, 신고지연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됨

MEMO

MEMO

#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2021년 1월 인쇄
2021년 1월 발행

판 권
소 유

발행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인쇄처 : 성원드림사업단

##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개정작업 참여 및 협조 공무원

- 행정안전부 주민과 이지성
- 행정안전부 주민과 박주언
- 행정안전부 주민과 박지웅
- 행정안전부 주민과 김지현
- 행정안전부 주민과 김성록
- 행정안전부 주민과 신혜진
- 행정안전부 주민과 정순희
- 서울특별시 주상혁
- 서울특별시(강서구) 최순아
- 서울특별시(도봉구) 채보라
- 서울특별시(마포구) 유리라
- 서울특별시(종로구) 김미희
- 서울특별시(용산구) 김연진
- 부산광역시 김소연
- 부산광역시(북구) 이서연
- 부산광역시(강서구) 장수연
- 대구광역시 임대섭
- 대구광역시(북구) 조은영
- 대구광역시(북구) 김지예
- 인천광역시 소 용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안형진
- 인천광역시(남동구) 양정원
- 인천광역시(남동구) 김혜민
- 광주광역시 정석원
- 광주광역시(서구) 이수현
- 광주광역시(서구) 방금빈
- 광주광역시(광산구) 김두리
- 대전광역시 황미숙
- 대전광역시(중구) 박준혜
- 대전광역시(유성구) 윤희수
- 울산광역시 고은지
- 울산광역시(남구) 창지연
- 세종특별자치시 강현규
-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 안지현
-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함예진
- 경기도 정희진
- 경기도(고양시) 이희정
- 경기도(고양시) 이하영
- 경기도(안양시) 박한나
- 경기도(안양시) 김선명
- 경기도(안성시) 이병운
- 경기도(양주시) 정효진
- 경기도(과천시) 정현우
- 경기도(포천시) 최진영
- 경기도(안산시) 김연지
- 충청남도 이정찬
- 충청남도(보령시) 배은혜
- 전라북도 노시중
- 전라북도(군산시) 고미정
- 전라남도 김혜영
- 전라남도(구례군) 박은주
- 경상북도 한희경
- 정부통합콜센터 행정안전부 상담센터 김수진 팀장 등 15명

〈비매품〉